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군내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M006187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성역이다. 적어도 외형상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군대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교도소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군과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미치지 않는 분야이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군구금시설은 일반사회의 눈길이 가장 미치지 않는 두 가지 사각지대가 중첩된 이중의 사각지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본업무의 하나로 구금시설의 실태 파악과 피구금자들의 인권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구금시설은 아무런 기초자료도 없으며, 현황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다만 사회에서 흔히 남한산성이라 불리는 군교도소와 군대 영창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군대 내의 구금시설 중에서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 이외에, 97개에 달하는 미결구금실은 모두 대용감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 대용감방은 시설이나 관리인력의 전문성, 수용자들의 인권현실의 열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구금시설의 경우 미결수들과 단기형 복무자들, 그리고 징계입장자들을 수용하는 사단급 이상의 영창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나, 군의 명예와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한번도 그 실태와 현황이 민간에 알려진 바 없는 군대 내 구금 시설의 인권실태를 위한 기초조사의 필요성을 논하고, 본 연구의 구성과 연구방법,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체포와 수사 중의 구금 문제를 다루었다. 체포와 수사 중의 구금은 구금의 초기 단계로 민간에서도 가혹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다.

제3장에서는 97개에 달하는 미결수용시설의 인권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로 본 연구팀의 설문조사와 3개 군부대 영창의 방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용자들의 인권실태와 처우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군 유일의 기결 수용시설인 육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실태를 설문 조사와 방문조사에 근거하여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숫자 상 군대 내 구금시설 수용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징계입창자들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행형법시행규칙을 그 짝을 이루는 민간의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그리고 수감자들의 처우에 관한 각종 규칙과 비교하여 군 행형 관계 법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 총평 및 개선권고사항에서는 단순한 요약보다는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현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 현병 차원을 넘어서서 군 당국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개선에 힘써야 할 문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3. 연구 방법

1) 선행 연구 및 문헌자료의 검토

한 마디로 말해서 군대 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가 펴낸 『한국교정사』나 대부분의 교정학 교과서에서 군 교도소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군대 내 교정제도에 관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권덕관의 「우리 나라의 군교정제도에 관한 연구」(『중앙대 사회개발론총』 4, 1983년 2월)가 유일한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발표된 지가 20년이나 되어서 현재의 실태와는 거리가 멀고, 육군교도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영창 등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 자체가 교정당국의 입장에 선 것이어서 교정제도 자체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수형자의 인권문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군 교도소의 교도행정과 기능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편의 석사논문이 나와 있다. 이 논문들은 대부분 헌병 관련자들이 행정대학원 등에 수학하면서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이다.

구자명, 「강화이론에 의한 군 수형자 교육의 효과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5

김건영, 「군 수형자에 대한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1982

김정규, 「육군교도소 기능교육 실시현황과 개선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2002,
박재수, 「군교도행정에 관한 연구 : 군교도교화 실태를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1

이정, 「육군교도소 교정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전남대 대학원, 1982

이훈구, 「군 수형자 교정행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1

정병윤, 「군 수형자 기능교육 실시현황과 개선방안 : 육군 교도소를 중심으로」, 경원대 행정대학원, 1999

최동수, 「군교정행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1984

한동성, 「수형자 집단에 관한 연구 : 육군교도소 재소자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1983

이들 석사논문은 육군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교육을 다룬 김정규와 정병윤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10년 내지 20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 구금시설의 교도행정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군 교정행정의 역사적인 변천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특히 박재수의 논문은 1991년 당시 육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34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학력, 죄명, 계급, 형기, 교도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이훈구와 박재수의 논문은 모두 군대 내 구금시설이 헌병 병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헌병들이 단기간의 병과 교육만을 이수할 뿐 전문적인 교도행정과 관련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동성의 논문은 교도행정이 아니라 수형자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수형자들의 수감생활보다는 입대 이전의 가정환경과 사회생활에 주로 쏠려 있어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와 인권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김정진의 「무사고 부대 육성, 관리에 대한 제언 : 육군교도소 실태조사 연구를 기준으로」(『육군』 244호, 2000년 4월)는 육군교도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나, 교도소 자체의 실태보다는 자대의 상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교도소 실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군대 내 구금시설과 관련된 연구는 위에 소개한 몇 편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일반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나 교도소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1998년 말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엮어 펴낸 『한국감옥의 현실』은 한국의 주요 인권단체가 참여한 최초의 감옥 인권실태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일반 교도소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군대 내 구금시설의 현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2002년도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조사보고서는 민간 구금시설에 관한 보다 최신의 자료를 담고 있지만, 역시 군대 내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99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펴낸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의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서울대법학』 110호, 1999년 5월) 등 많은 연구들도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수용자들의 처지에 대해 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나 조사보고서들은 비록 군대내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일반 행형 실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군대 내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데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그리고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I·II (군사법원 소관)」에 수록된 자료들은 군대 내 구금시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기초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본 조사팀은 우리 나라 군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실태를 외국의 군대 내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실태와 비교해 보려고 했으나, 외국의 군대 내 구금시

설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자료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민간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와 처우에 관한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 보는 작업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1993) 등 많은 연구와 조사보고에서 행해진 바 있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의 군대 내 구금시설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비교연구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2) 방문조사

본 조사팀은 육군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에 이어 육군의 전방 사단(7사단) 1개소, 후방 사단(32사단) 1개소, 해병대 사단(2사단) 1개소의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32사단의 영창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각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헌병 당국자들은 본 국가인권위원회와 본 조사팀의 방문조사에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본 조사팀의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었다. 또 본 조사팀이 보고자 하는 장소를 보여주었고, 조사팀이 지목하는 수용자들, 근무헌병과의 면담이 간부들의 입회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었다.

가. 육군교도소 방문조사

본 조사팀은 국가인권위원회 신동운 인권위원, 강명득 인권침해국장, 강철아 조사관 등과 함께 2002년 9월 25일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및 수감자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구금시설, 의료실, 종교시설, 작업장 등을 둘러보았다.

나. 7사단 헌병대 영창 방문조사

본 조사팀은 국가인권위 신동운 위원, 강철아 조사관 등과 함께 2002년 10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7사단 헌병대 영창을 방문하였다. 조사팀은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영창을 둘러 본 뒤 영창에 수감중인 미결수, 영창근무 헌병 등과 면담하였다. 7사단은 과거 허원근 일병 사건이 발생한 곳이며, 1997년에는 최

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사관 총기절도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다. 32사단 헌병대 영창 방문조사

본 조사팀은 국가인권위 강철아 조사관 등과 함께 2002년 11월 6일 충청남도 대덕군 소재 32사단 헌병대 영창을 방문하였다. 조사팀은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 받고, 영창을 둘러 본 뒤 영창에 수감중인 미결수, 영창근무 헌병 등과 면담하였다. 32사단은 후방 지역인 충청남도 일대를 관할하는 향토사단으로서, 헌병대 영창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라. 해병 2사단 헌병대 영창 방문조사

본 조사팀은 국가인권위 강철아 조사관 등과 함께 2002년 11월 20일 경기도 김포 소재 해병 2사단 헌병대 영창을 방문하였다. 조사팀은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 받고, 영창을 둘러 본 뒤 영창에 수감중인 미결수용자, 징계입창자, 영창근무 헌병 등과 면담하였다. 해병 2사단은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곳으로 2002년 4월 16일 한 사병이 분신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3) 설문조사

가.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번 연구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군대 내의 미결 및 기결 구금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다. 군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본 연구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본 연구팀 참가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운동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상당한 협조관계와 신뢰를 쌓아왔고, 이들은 본 연구팀의 실태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도소 내에서 성실한 수감태도로 인하여 재소자들이 맡는 간단한 행정업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교도소 내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했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군 교도소의

인권실태는 물론 시기별 변화양상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은 200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는데, 모두 413문항을 담은 70여 쪽의 방대한 설문지(별첨)에 대해 87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이들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산훈련소 등 신병교육대가 있는 각 군단, 사단의 영창을 거쳐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표 1-1> 설문대상자 연도별 입창자수

입창 연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무응답	계
인원	3명	7명	5명	16명	17명	26명	10명	1명	2명	87명

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본 조사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곤욕을 치렀다는 증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군부대 영창에 구금되거나 기무사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2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이들에게 별도의 설문지(별첨)를 보냈다. 이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 때문에 설문에 응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5명만이 설문에 답하였다. 이들의 답변은 비록 답변자 숫자는 적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과는 달리 수사 중의 구금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다.

다. 최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법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본 연구팀은 사법연수원 28기로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올해 전역한 변호사와 판사 62명에게 설문지를 보내 법무관 시절에 본 군대 구금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응답을 구하였다. 모두 5명만이 설문에 답해주었지만, 군 검찰관 생활을 경험한 이들의 응답은 군 구금시설의 실태를 수용자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다.

4) 심층면접

본 연구팀은 군대 내 구금시설의 실태조사를 위해

여호와의 증인 2명,
국가보안법 위반자 2명,
사병으로 영창에 근무한 헌병 출신 1명,
일반 사병으로 징계 입창된 경험자 1명,
7사단 총기절취 사건 관련자로 7사단 영창, 2군단, 육군교도소 등에 구금되었던 전직 부사관 1명,
7사단 헌병 1명
7사단 영창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1명
32사단 영창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1명
해병 2사단 영창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1명
해병 2사단 영창에 수용 중인 징계입창자 1명
군법무관으로 10년 간 장기 복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최근에 단기 군법무관으로 전역한 변호사 2명,
구금시설실태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구금시설실태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권운동가 2명,
형법학교수 2명

등 다양한 사람들을 면담하였다.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조사는 그 동안 현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군대 내 구금시설에 관한 최초의 연구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간의 인권전문가들이 군대 내의 구금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수용자들을 직접 면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동안 나쁜 소문만 무성했던 군대 내의 구금시설의 실태가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려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밝힌 것은 민과 군 모두에게 다행한

일이다. 한편 사병들 중 행정별인 징계를 받아 법관의 결정 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징계입창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것도 앞으로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조사는 군내 구금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인권실태조사가 아니라, 그 작업을 위한 기초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조사에서 밝힌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을 통한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영창에 처음 수용된 시기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비교적 현재에 가깝기는 하나 현시점의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방문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군대 내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설문조사의 응답이 미결수용시설의 경우 주로 육군의 훈련소나 신병교육대가 있는 부대의 영창에 한정되었고, 해군이나 공군의 영창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본 연구조사는 기획단계에서 민간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군대의 특성 상 가장 많은 수용자들을 배출하는 징계입창자 문제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 물론 징계입창자들도 일단 영창에 들어오면 미결수용자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이들의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보다도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조사팀도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중간에 이 문제를 깨닫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법관의 결정 없이 구금되는 징계입창자들이 1년에 1개 사단 규모에 육박하는 1만명 안팎인 현실은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요하는 문제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수사중의 구금

군 사법절차 과정에서 가장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바로 초기 체포·수사단계일 것이다. 이는 민간의 경우에도 경찰의 임의동행이나 무리한 강압수사 및 알몸수색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군 수사기관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피의자 가족들의 즉각적인 인지와 법률구조가 힘들기 때문에 수사 중 구금 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은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알려진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 때문에 2002년에 불거진 군 의문사 문제나 은행 총기 강도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일반인들은 여전히 군 수사기관에 대해 과거의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체포·수사단계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초기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나 구금형태가 이후 구금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현행 군 수사과정의 모습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과거에 비해 나아진 점 혹은 개선해야 할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체포·수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군 수사기관 방문조사와 현재 군 헌병대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와 과거 군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 받았던 경험이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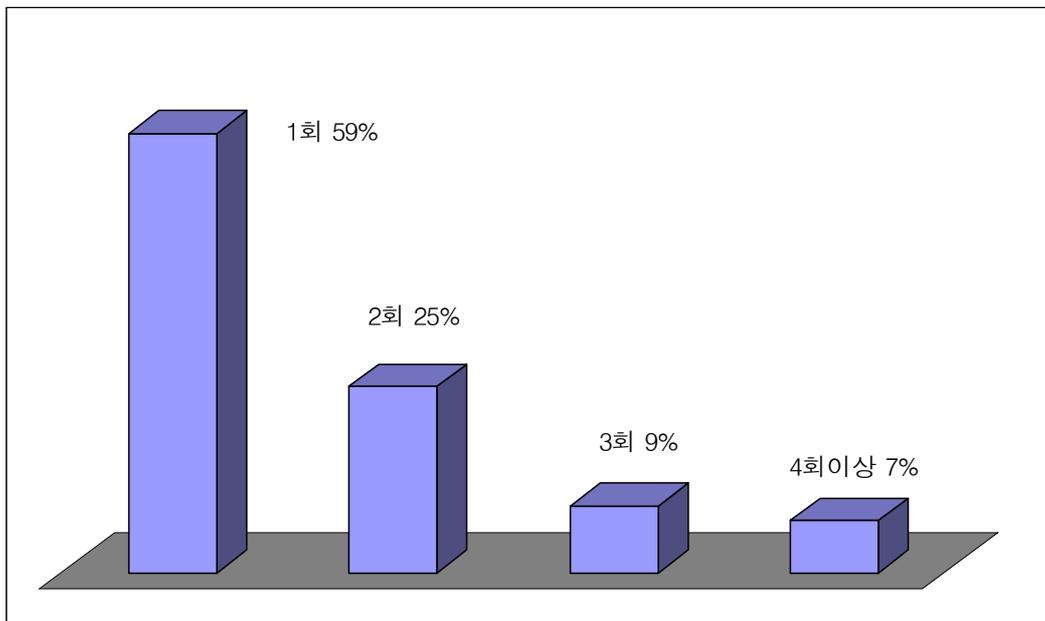
1. 설문조사 분석

응답자 대부분이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입소대나 훈련소에서 지휘관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고, 조사과정도 간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의 59%가 단 한차례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시간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68%) 30분 미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소 후 군 검찰에서의 진술번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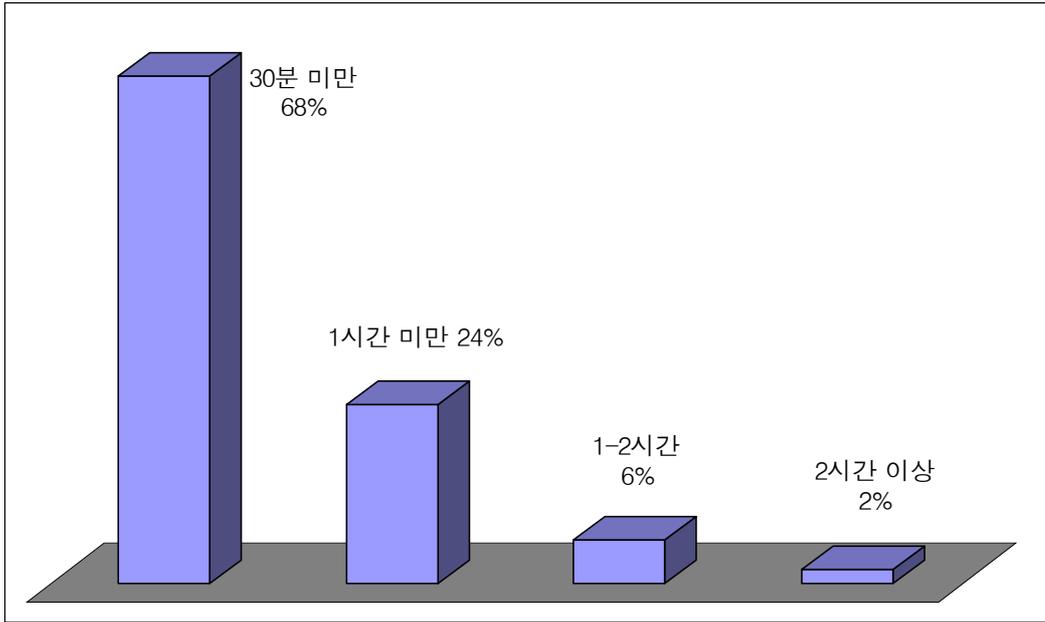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던 3명을 제외하고는 민간 변호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94.0%),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이 민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0.8%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 종교적 이유에 따른 항명죄의 경우 수사와 집행절차가 대단히 관례화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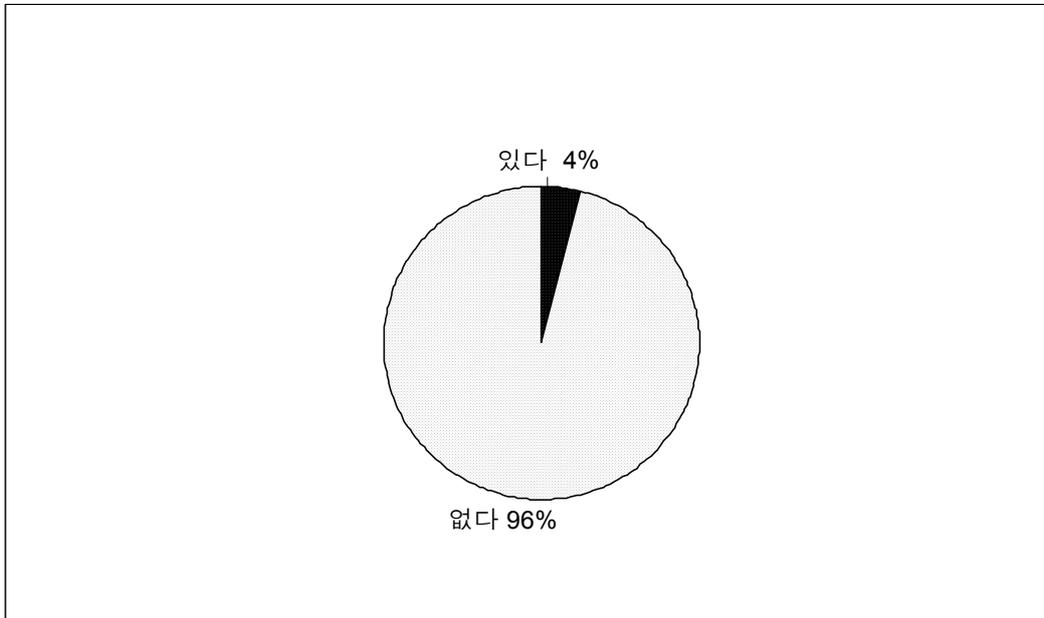
<그림 II-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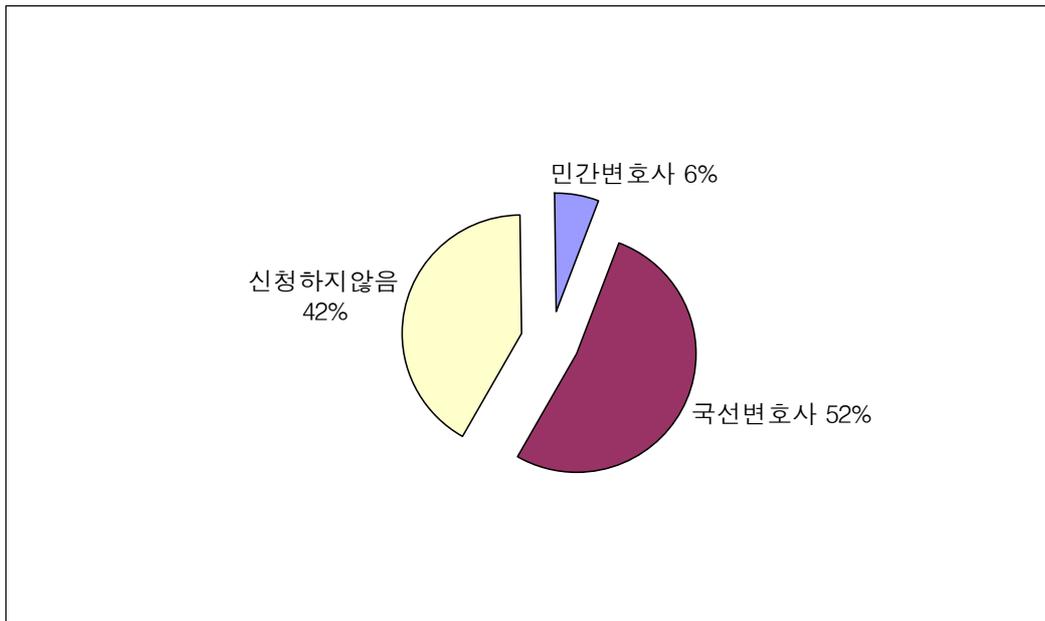
<그림 II-2> 조사시간 (전체응답자:50명)



<그림 II-3> 자백 번복 경험 (전체응답자: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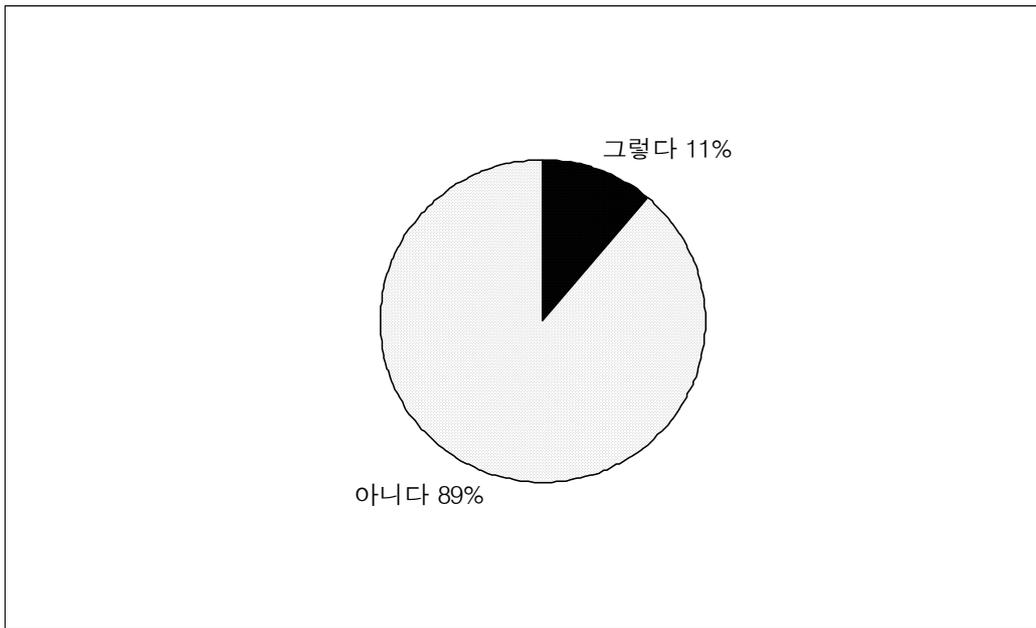


<그림 II-4> 변호사 선임여부 (전체응답자: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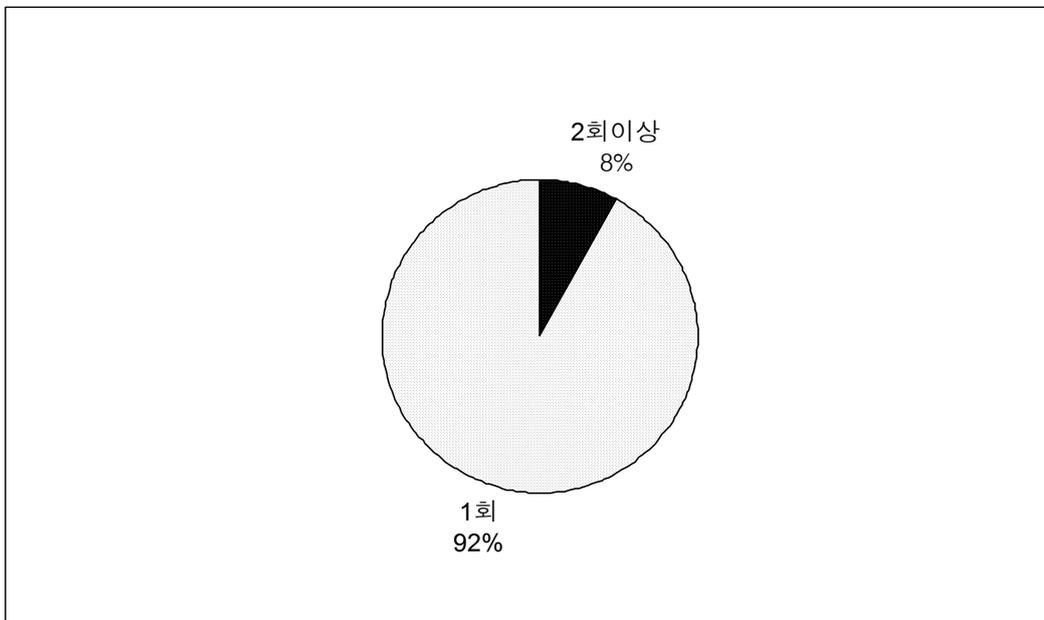


그러나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89%가 검거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생략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한 국선 변호사와의 개별접견은 89.4%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했으며, 접견회수와 시간도 부족했던 것으로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재판 진행이 형식화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역할이 지극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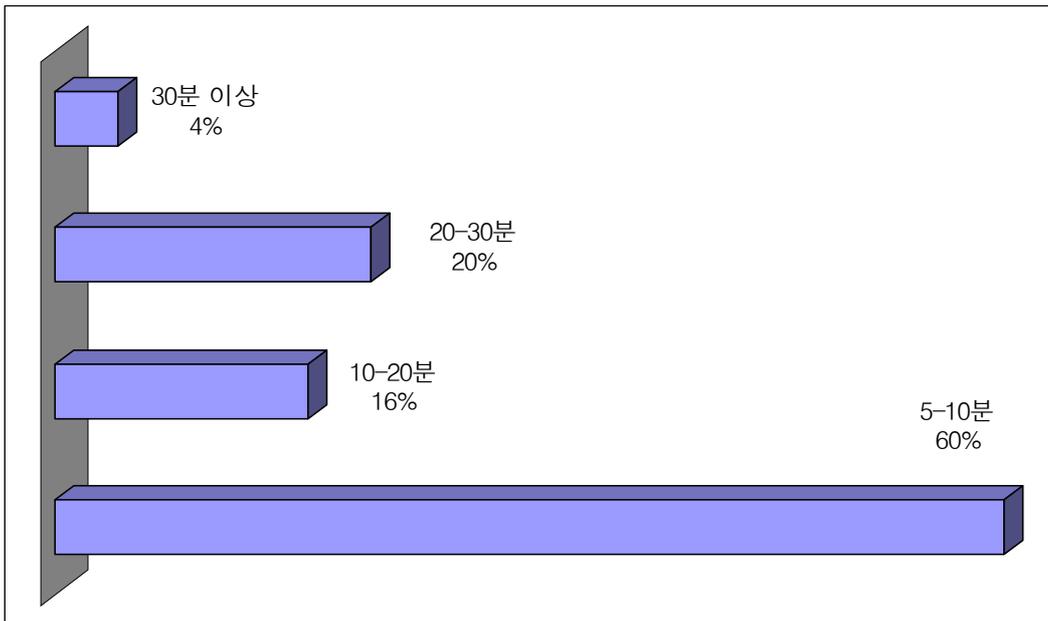
<그림 II-5>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전체응답자: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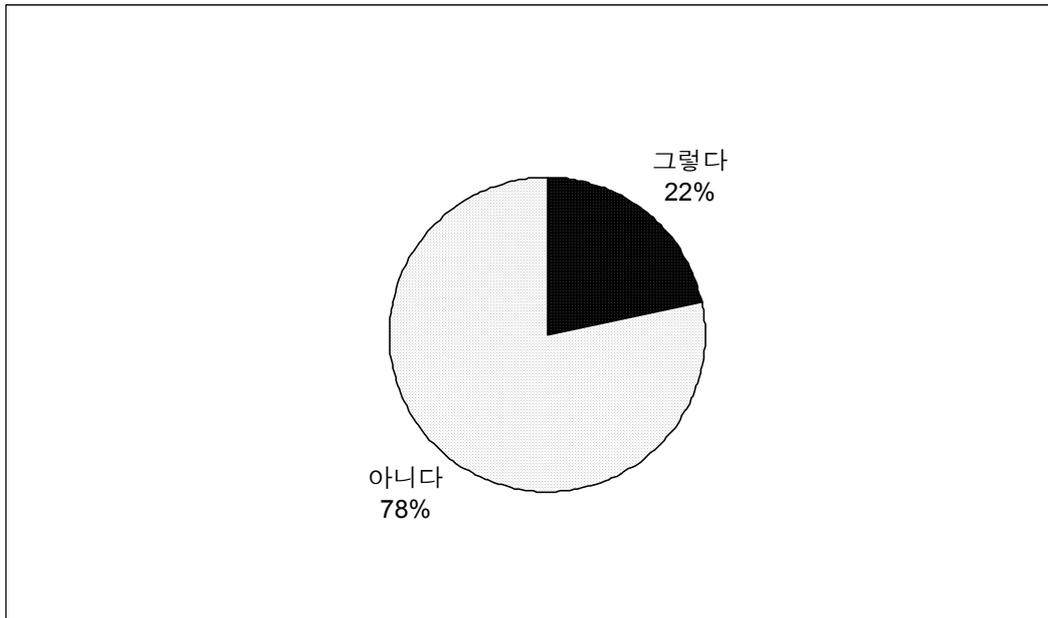
<그림 II-6> 국선번호인 접견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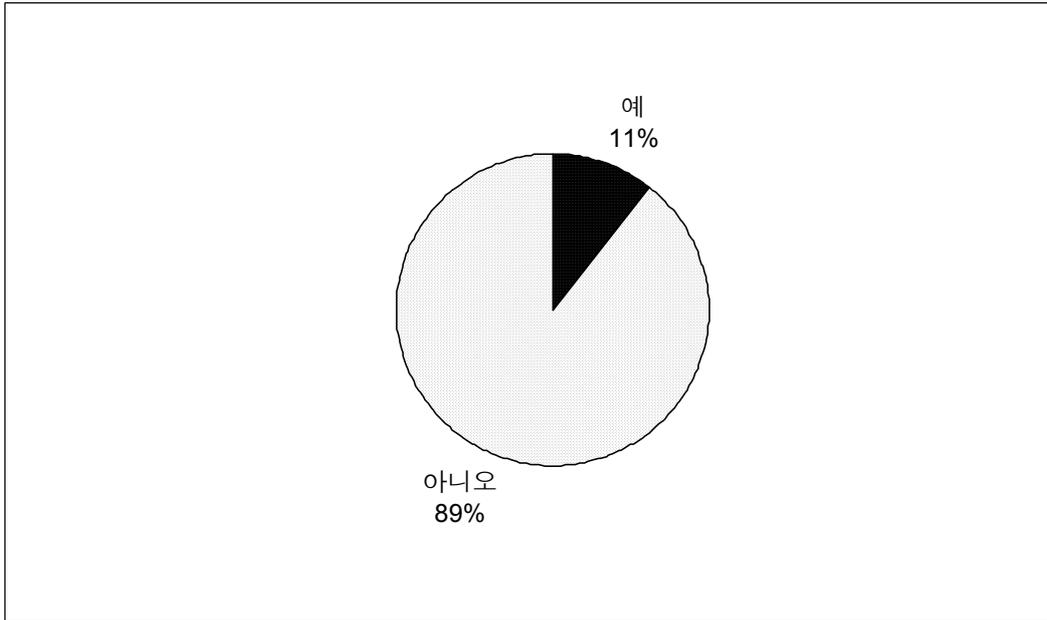
<그림 II-7> 국선번호인 접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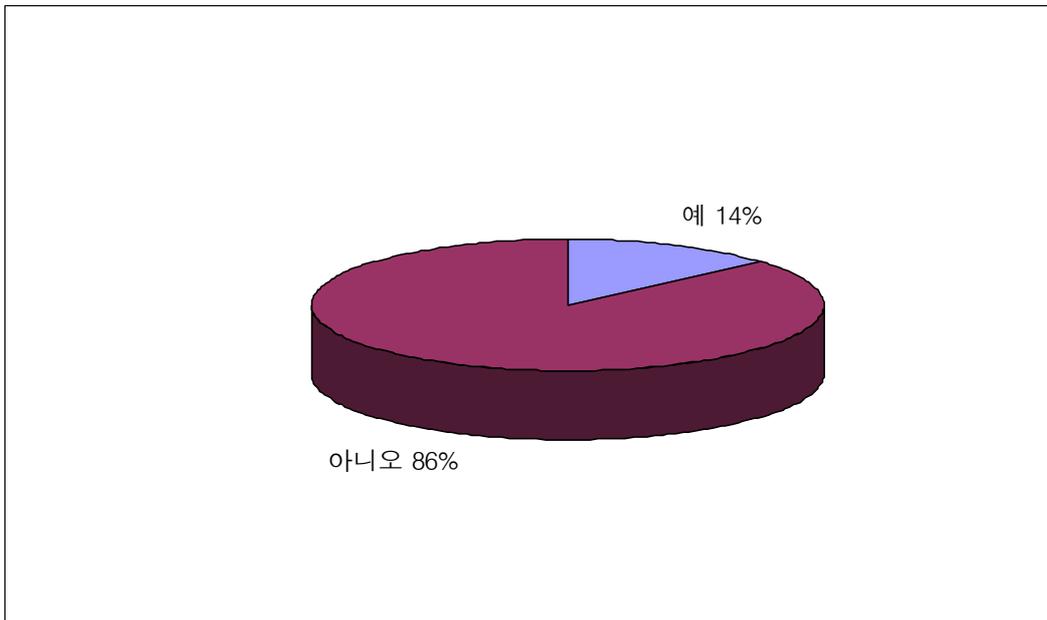
<그림 II-8> 변호사 접견의 응이 여부 (전체응답자:37명)



<그림 II-9> 국선번호인과의 개별 접견 (전체응답자:47명)



<그림 II-10> 변호인으로부터의 도움 여부 (전체응답자: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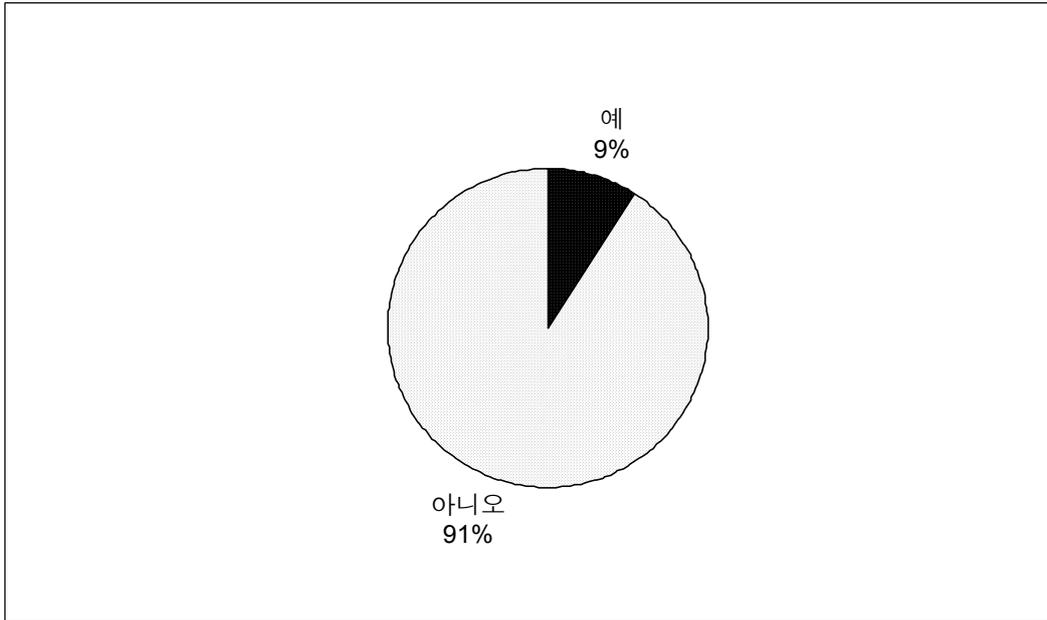
조사과정 중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7%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있었다는 답변도 9.3%가 나와 여전히 조사 중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던 총 3명의 응답자

중 2명이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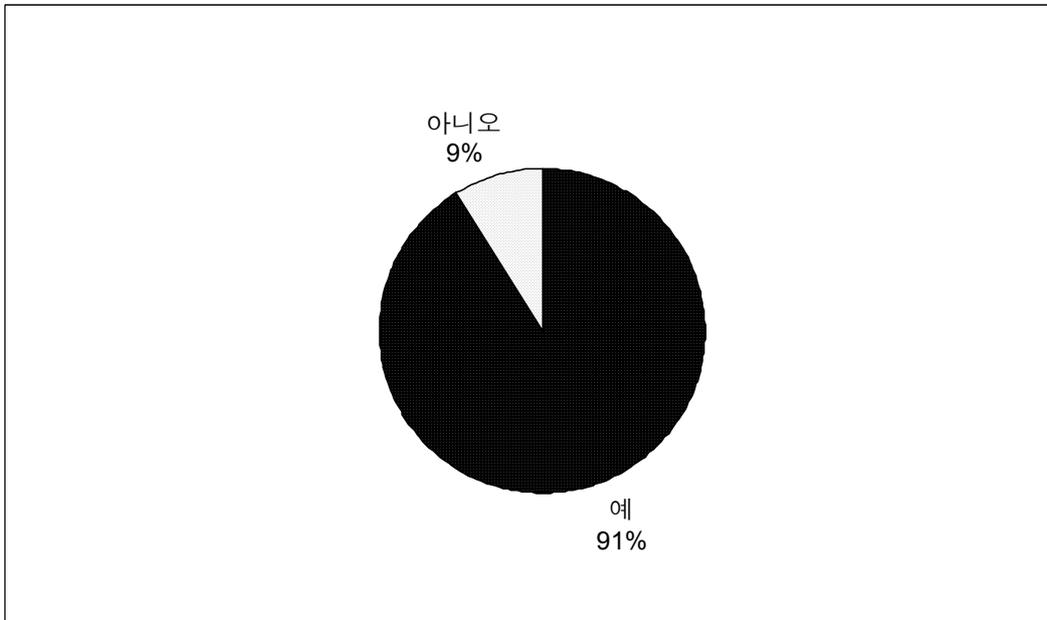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A씨의 경우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모든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진술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받았다고 한다.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B씨의 경우에도 심문에 부응하지 못한 답변을 할 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 차례 반복했다고 답했다. 항명죄로 구속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경우에도 대답을 즉시 못한다는 이유로 옥설을 들었다던가, 수사 중 일명 ‘얼차려’를 받았다는 응답이 두 명 있었다. 물론 과거의 심문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가혹행위의 빈도와 물리적 강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압적 수사방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헌병대 영창에서 지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2%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 중 2명(5.9%)은 기소 후에도 다시 헌병대 수사관에게 불러간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검거 후 가족에게 통보된 방식으로는 편지나 전보가 응답자 중 79.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전화가 2.3%, 통보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명(4.5%)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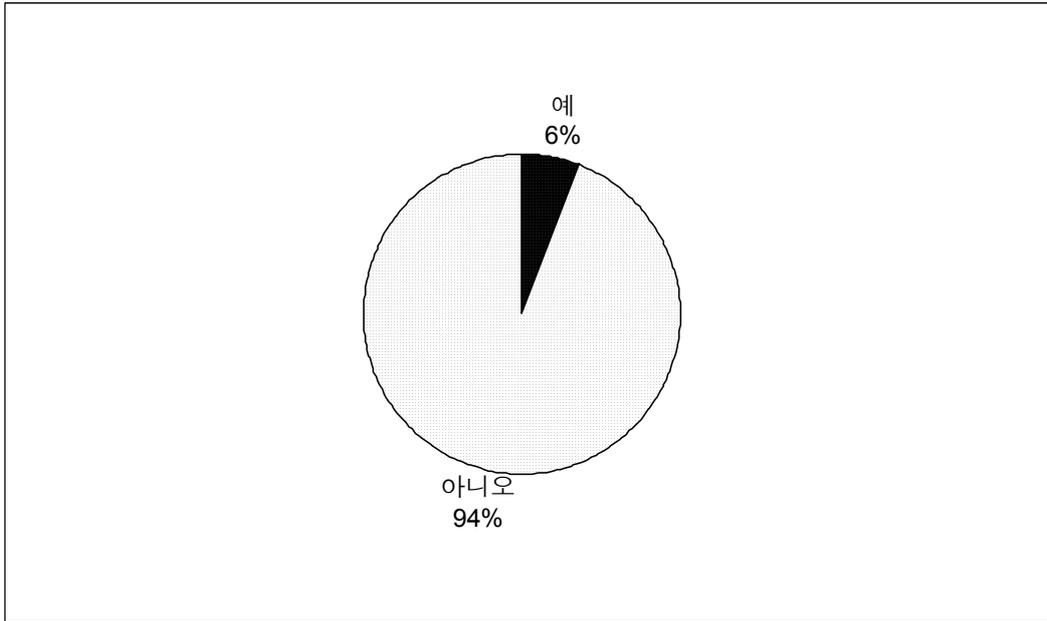
<그림 II-11> 조사과정의 가혹행위 여부 (전체응답자: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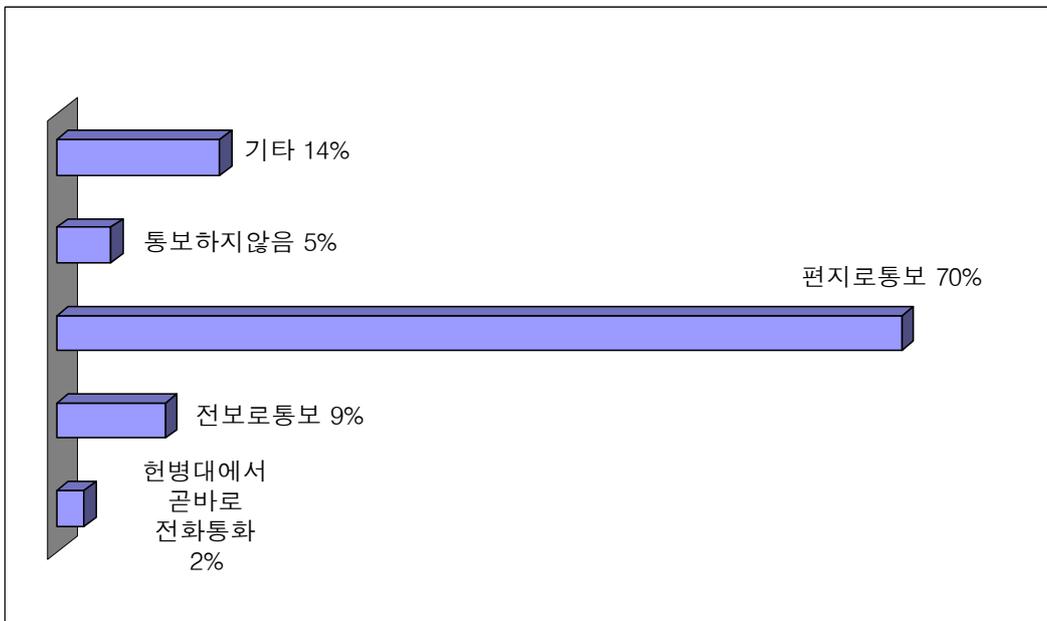
<그림 II-12> 송치 후 헌병대 영창 수용 여부 (전체응답자:34명)



<그림 II-13> 기소 후 헌병대 재소환 여부 (전체응답자:34명)



<그림 II-14> 검거 후 가족 통보 (전체응답자:44명)



2. 방문조사 및 인터뷰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에 입대하지 않고 민간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군수사기관(이하 헌병대)에서 집중거부에 의한 항명죄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헌병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폭력, 군무이탈, 교통범죄가 대부분 이다. 2002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3대 범죄가 2001년 전체 범죄의 7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죄명별 군 검찰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폭력범죄	교통범죄(음주)	군무이탈	기 타
'00.	11,478	3,954	3,220(1,210)	1,374	2,930
'01.	9,644	3,131	2,788(1,116)	1,447	2,278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20쪽

본 연구팀이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총 3차례에 걸쳐 육군 2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등 3개 헌병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도 구금되어 있던 미결수용자들은 모두 절도, 군무이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또한 수사관계자들은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입영거부에 따라 항명죄 입건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입장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조사대상 헌병대에서 1명씩 총 3명의 미결수와 실시한 개별 인터뷰에서는, 우선 강압수사나 구금 중의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 변호사와의 개별면담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식사와 보급품, 면회, 독서 등과 같은 처우 부분도 큰 불편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이들 모두 수사과정과 수감생활에 대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다. 영창 내에서 계구를 착용한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포 이후 수사, 기소, 재판 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조사 중 대략 알려주거나 혹은 영창 내에서 주위 수감자들로부터 전해 듣는다고 밝혀, 인터뷰 대상자 별로 피의자의 권리나 수사 절차에 대한 인지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 조사한 헌병대 중 수감자를 위한 관련 법규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조사 대상 헌병대 모두 수감자들에 대해 매일 수양록 작성 및 명상의 시간 등 자기 반성을 통한 교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수양록 점검을 통해 수감자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지휘관들 모두 ‘한 때의 실수’, 혹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방문한 헌병대 중 별도의 조사실이 있는 곳은 한 곳 뿐이었다. 조사실을 운영하는 헌병대의 경우 헌병대장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조사실 내에 설치하여 조사과정 중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검거 후 가족에게 통보되는 방식의 대부분은 등기우편과 같은 서신 통보였으며,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수사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소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가족에 한해 전화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문 부대 중 한 곳의 지휘관은 피의자가 민간 변호인을 요구할 시에는 바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고 밝히면서,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도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귀찮아하기 때문에 10~20% 정도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구팀이 인터뷰한 미결수들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해 보였다.

이 밖에도 미결수들은 기소 후에도 헌병대 영창에서 지내기 때문에 군 검찰 조사 시에는 계호병의 감시 하에 수갑을 찬 채로 군 검찰로 호송되어 조사 받고, 조사 후에는 다시 영창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번 방문조사와 함께 연구팀은 군 복무 중 구속·구금 당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과의 인터뷰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98년 강원도 화천 모 부대의 총기탈취사건에 연루됐던 당사자를 만날 수 있었다. 98년 총기탈취사건은 ‘군 수사기관의 불법수사와 이에 따른 허위자백’이 인정되어 군사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총기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재심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이루어졌으며, 자백 강요를 위한 가혹행위가 자행되어 군 수사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시된 바 있다.

인터뷰를 가진 당시 피해자 C씨에 따르면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열흘간 헌병대 영창 내에 있는 0.5평 남짓의 독방에

불법 구금되었다고 한다. C씨는 외부와의 연락도 일체 차단되어 수감된 지 50여 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족과 면회가 가능했으며, 그나마도 1~5분 정도로 제한되었다. 또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주리틀기, 잠안 채우기, 구타 등의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다. 이 같은 가혹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전한다.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된 후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헌병대의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줄곧 제기했지만 무시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군 검찰로 신병 인도 후에도 계속 헌병대 영창에서 지내는 구조 때문에 기소 후 재판 때까지도 헌병대 수사관들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영창 내에서도 수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군단 헌병대에서는 손을 뒤로하고 포승을 한 채로 영창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피의자들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무기징역이 판결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징역 2년6개월~5년으로 감형된 채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2000년 2월 피의자 중 한 명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인정되어 2002년 7월 무죄가 선고되었다. 반면에 이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 6명에 대해 피해자들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인정되나 모두 초범이고 정상참작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본 연구팀이 해당 헌병대를 실제로 방문하여 조사했을 때 부대 관계자들은 영창 없이 10일간 불법 구금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수사 중 내무반에서 재웠을 뿐이라고 당시 피의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영창 내에서 '격리실'이라고 불리는 방의 구조가 A씨가 설명한 독방 구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 수감 경험을 했던 사람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 구속당시 기무사에 연행되어 수사 받았으며, 잠은 헌병대 영창에서 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과정 상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먼저 D씨의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조사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구타의 기억을 생생하게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 기무사에 끌려갔을 때 수사관들은 옷을 벗게 하고 손을 깎지 낀 상태로 엎드려 누워 있게 한 뒤, 온몸을 몽둥이와 발로 사정없

이 구타했다고 한다. 영창에 있을 때는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었다. 편지도 불가능했고, 재판받을 때까지는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재판하기 전까지 한 차례도 햇볕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감시 헌병을 통해 겨우 편지를 보낸 후에야 한 달에 한번 부모님과 면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E씨의 경우 조사시간이 밤늦게 까지 길어질 때도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가혹행위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말한다. 영창에서도 근무자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정좌도 특별히 강요되지 않았고, 부모님 면회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영창과 조사실을 오갈 때는 안대를 착용하고 승용차로 이동했다. 이 같은 호송 방식은 본 연구팀의 설문지에 응했던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경험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군 검찰로의 송치 후에는 다른 헌병대 영창으로 이감되었으며, 기무사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조사결과 및 문제점

이상의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그리고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연구팀은 수사 중 구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체포 후 가족에게 통보 방식

헌법 제12조 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미란다원칙의 고지와 신속한 체포 통지는 수사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신속한 체포 통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법원법 제127조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민간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현재 헌

병대에서는 피의자의 가족에게 주로 서신을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화 통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신 통보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만일 가족이 부재 시 편지가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지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전화 통보 방식은 일선 수사관계자들의 말처럼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공범자와의 소통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은 현실에서 이 같은 우려를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신속한 통보는 피의자의 접견권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98년 총기 탈취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수감된 지 50여 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족과 면회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접견권이 극도로 차단된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바 있다. 군대는 민간에 비해 외부와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의자의 상황이나 행적 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자기 구제 범위나 신속하게 가족·친지에 의해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에 비해 훨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대 내 피의자에 대한 접견권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피의자 접견권 보장을 위해서도 신속한 통보는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의 방문조사 시 한 지휘관은 가족의 경우에는 전화 통보도 무방하리라 생각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직된 규정에서 벗어나 피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운영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인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 범죄에 대한 수사는 자칫 형식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고지해야 할 의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종종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본 연구팀의 미결수용자 인터뷰 결과 모두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응답하여, 설문조사 시 대다수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던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비해 절차상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자기 권리나 수사 및 기소 절차에 대한 실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군대 내 구금시설이 민간과는 다른 특수한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상명하복식의 규율에 익숙해져 있는 피의자들이 군대 내 영창이라는 위압감 앞에서 더욱 더 수동적인 태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적 보호 절차를 제대로 받기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구금 과정에서 수사관이나 감시헌병에게 폭언이나 비교적 가벼운 물리적 폭력을 받더라도 용인하게끔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323조에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이 방문했던 영창 내 미결수들은 매일 정좌와 수양록 작성 등을 통해 반성을 해야 했으며, 지휘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 물론 연구팀이 접촉한 피의자들 대부분이 범행 사실이 뚜렷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이 수용자에 대한 교화나 재판과정에서의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행 유무가 확실치 않을 때에도 이 같은 구조가 관행화 되어 적용될 경우에는 자칫 피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나 수사·구금 중의 불이익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와 같이 반성을 강제하는 수양록 작성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수양록 작성 시간을 편지 쓰거나 개인 저술을 할 수 있는 자율 집필 시간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방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민간 사설 변호사 선임을 원할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지휘관의 재량에 의존하거나, 낮은 영장실질심사율 등도 이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되는 미결수에 대한 권리 및 기소절차 교육, 영창 내 관련 법규집 구비, 검찰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관련 조항의 법적 명문화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수감자를 범죄자가 아닌 말 그대로 피의자(被疑者)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12월 17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확립 및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장관훈령으로 제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혹행위나 변호인 접견 제한, 진술거부권 및 미란다원칙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 공소시효 만료 임박, 긴급체포 이후 신속한 조사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군 수사기관도 이 같은 민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발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기소 후 재판까지 헌병대 영창 구금

민간의 경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무부 산하 구치소로 이감되어 경찰의 감시가 배제되는 것과 달리, 군의 경우 헌병대의 조사가 끝난 후에도 재판 때까지 헌병대 영창에서 지내게 된다. 이 같은 구조의 문제점은 피의자가 헌병대 수사에서 했던 진술을 군 검찰에서 번복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금중인 피의자에 대한 협박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금 중 가혹행위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1998년 총기탈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피해자는 헌병 수사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군 검찰에서 재 진술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검찰 조사 후 영창에서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물론 현재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이 3대 범죄, 즉 폭력, 군무이탈, 교통범죄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증거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상황만으로는 현 운영 방식의 유지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보호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군 검찰의 권한과 독립성 유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헌병대의 수사와 군대내 구금시설에 대한 민간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의 구금시설 분리 등과 같은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4) 구속기간 연장 조항

군사법원법 제239조와 제240조에는 군사법경찰관과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치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인치 혹은 공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제242조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는 구속기간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헌병대 20일, 군검찰 20일, 도합 최고 40일 까지 구속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연장 조항에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1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구속기간이 30일인 데에 반해, 군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기관인 헌병대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의 연장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보장과 이를 위한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장기 구속은 충분한 증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구속부터 하고 증거를 찾아내려는 폐단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백강요, 고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구속수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수사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에 또다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국가보안법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사법원법상의 구속기간 연장조항은 특정 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군대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활동반경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상 범죄 발생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민간에 비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포괄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수사상의 편의 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군사법원법 상의 구속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

지 가처분 신청이 된 바 있었으나, 신청 당사자의 1차 연장 구속기간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판결을 거치지 못한 바 있다(2002. 4. 25. 02헌사129 전원재판부). 그러나 재판부의 이 같은 회피(回避) 결정이 이 조항이 문제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금 요청된다.

5)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헌병대에 대한 민간인의 우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사 및 구금 중 폭력, 폭언,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일 것이다. 설문 및 방문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수사과정이나 구금중의 가혹행위는 상당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비교적 사건이 단순하고 관례화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항명죄의 경우에도 수사 중 폭언과 기합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혼한 경우는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관련자의 경우 가혹행위가 보다 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자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현재 군 수사 중의 가혹행위는 군 내 사건 대부분이 비교적 단순한 3대 사건 중심이라는 성격 상 오히려 민간 수사기관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기탈취 사건 등과 같이 군대 내 민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강압수사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002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적발된 군 수사기관 요원들의 수사 중 가혹행위 건수는 총 3건이며, 모두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폭행, 불법 감금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표 II-2> 참조). 주목되는 점은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자행한 수사관들 대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강압수사 사례로 지적되는 98년 총기 탈취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 가혹행위로 고소된 수사관 전원이 근신 또는 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그친 바 있다(<표 II-3> 참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해당 수사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수사과정 및 구금중의 가혹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이고 예외적

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한 네 가지 문제점들과 같은 군수사 기관의 구조적 문제들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도 헌병 등 구금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 11-2> 군 수사기관 요원들의 인권침해 또는 가혹행위 적발 사례 및 처리결과 (00.8.~02.7.)

□ 육군

년도	소속	계급 성명	죄명	사건개요	처리결과
'02년	35사단 헌병대	상사 조OO	독직폭행	35사단 헌병대 부안과견대장으로 근무하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2001. 7.9. 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도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황OO으로부터 총기를 절취하였다는 자백을 얻기 위하여 2001년 7월 19일, 20일, 26일, 28일, 29일, 30일에 걸쳐 십여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물고문 및 약물을 주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 피해자의 고소로 육군보통검찰부 인지/수사	2002.7.28 기소유예

기소유예 이유 :

수사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자의 범행부인에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이 건에 이르게 된 점, 실제 물고문이나 주사약을 투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그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들을 감안하여, 2002. 7. 28 자로 기소유예

□ 국방부 검찰단 (00.8.~02.7.)

순 위	피의자		죄 명	처 리		비고
	계급	성명		일자	내용	
1	육군 준위	홍OO	가. 불법감금 나. 독직폭행 다. 독직가혹행위	'02. 3. 28	혐의없음	고소사건
2	군무 5급	이OO	가. 불법감금 나. 독직폭행 다. 독직가혹행위	'02. 3. 28	혐의없음	고소사건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359쪽,1360쪽

<표 11-3> 98년 총기절도사건 관련 가혹행위 수사관에 대한 징계내용

계급 성명	당시 소속 (현 소속)	폭행관련 죄명	징계 (99. 11. 19)
준위 황○○	7사단 헌병대 (2군단 헌병대)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견책/경고
상사 김○○	7사단 헌병대 (전역)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독직폭행가혹행위	견책/유예
상사 고○○	7사단 헌병대 (7사단 헌병대)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근신/유예
중사 황○○	7사단 헌병대 (중수단)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독직폭행가혹행위	근신/유예
준위 김○○	7사단 헌병대 (제적)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견책/경고
상사 김○○	7사단 헌병대 (2군단 헌병대)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독직폭행가혹행위	근신/유예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923쪽

4. 소 결

이상의 조사 결과, 우선 군의 수사 방식이나 수사 중의 구금 형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군인력의 고학력, 고기능화 등에 따른 범죄율 감소, 군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 군 내부의 인식 변화 및 개선의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신세대 사병들의 인권의식 신장으로 인해 감시병들에 의한 가혹행위도 상당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여호와 증인 신도들의 입영 거부도 수사 업무 감소 및 과밀수용 완화 등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력과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사법원법 상의 구속기간 연장 조항이나 기소 후에도 헌병대 영창 구금 등과 같은 군사법제도 상의 문제 역시 수사 중의 구금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군수사기관이 보다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에 팽배해 있는 불신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장치 마련은 물론 기존의 수사관행이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구금시설 뿐만 아니라 군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미결수용시설(영창)

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 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546,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중에서)

미결구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사소송 중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를 인멸함에 따른 수사과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구금되기 전의 생활과 다른 생활이 강제되고, 제한된 공간과 환경 속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심리적 불안정과 육체적 불편도 따르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조건에 처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규율수단의 선택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2000년도의 구속영장발부율은 구속영장청구인원 122,359명 중 구속영장 발부인원 106,089명으로 86.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구속기소인원수는 88,338명으로 영

장 발부대 구속기소율은 83.3%에 달하고 있다¹⁾. 이처럼 형사공판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또한 생명형 및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구속공판인원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 등을 볼 때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구속)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 육군 해군 구속영장 발부/기각율

		육 군		해 군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법 원	발 부	3106(98.9%)	2320(97.9%)	521(99.2%)	331(99.3%)
	기 각	35(1.1%)	50(2.1%)	4(0.8%)	2(0.7%)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989~991쪽

이는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육군만 보더라도 2000년 구속영장 발부율이 98.9%, 2001년 97.9%에 이르고 있어²⁾ 기각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구속 수사를 관행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요인으로 군사법원법 제110조 ‘구속의 사유’에서 1)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2)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 할 염려가 있는 때로 미결구금의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 매년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80% 가까이가 군무이탈,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이며, 대부분이 체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군대 내에서 구속수사의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주요인은 실무적인 이유로, ‘수사상의 편의’ 때문으로 보인다.

‘영창’이라고 불리는 미결수용시설이 전국에 97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이 전체를 관리 통제할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한 상태에서, 미결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결구금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일정시설에 수용된 후 석방되기 전까지 미결피구금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또한 그 처우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1」, 2001년, 524, 552, 870쪽.

2) 국방부, 「2002 국장감사 국회요구자료」, 989쪽.

하는 점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관심사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전형벌의 효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결구금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미결구금제도가 실무 상 인식구속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오면서 범죄 응징 및 일반 예방적 교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으며, 이를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운용하거나 재범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미 제한된 공간과 일정한 통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으며, 공허한 원칙의 되풀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입장을 요구하거나 관철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군내 미결피구금자들의 인권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논리에 묻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또한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연구팀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 전반을 관철하는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로부터 직접 미결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군대에 대한 현실 인식과 함께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군내 미결수용시설인 영창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군내 미결피구금자의 현실과 처우에 접근하고자 한다.

1. 미결수용시설(영창) 설치 현황

미결수용실의 설치는 군행형법 제 1장 제2조(교도소의 설치)에 의거한 것으로 7항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와 8항 “교도소장·지소장 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용자를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미결수용시설(영창)은 2002년 9월(국정감사자료 기준) 현재 모두 9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방부 1개소, 육군 66개소, 해군 12개소, 공군 1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육군 미결수용시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47개소), 총 거실수 202개, 수용정원은 적정수용인원 1575명(최대수용인원 2574명)이며, 현재 수감인원은 총 318명이다.

여호와 증인의 민간교도소 이송(2001년), 즉결심판제 강화(군사법원법 제4장, 1999년 12월 28일 신설)로 최근 미결수용시설 수용인원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 육군 교도소 및 미결수용시설(영창) 모두 수용인원은 적정수용인원 밑을 돌고 있으며, 과밀수용으로 생기는 문제는 많은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군 구금시설 수용 상황이 비교적 나은 편이며, 민간 구금시설 과밀수용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표Ⅲ-2> 참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영창은 대개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며, 50-70년대의 낙후된 건물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신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9군단 군단사령부, 32사단, 11사단, 22사단, 11군단 군단 사령부 등 5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표Ⅲ-3> 참조).

<표Ⅲ-2> 민간 구금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연도	구분	수용정원 (a)	1일 평균 수용 인원 (b)	수용율 (b/a)
1990		54,300	53,169	97.9%
1991		54,300	55,123	101.5%
1992		55,300	55,159	99.7%
1993		55,800	59,145	106.0%
1994		55,800	58,188	104.3%
1995		55,800	60,166	107.8%
1996		57,360	59,762	104.2%
1997		57,660	59,327	102.9%
1998		56,500	67,883	120.1%
1999		58,000	68,087	117.4%
2000		58,000	62,959	108.6%
2001		59,130	62,235	105.3%

자료: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현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75쪽

<표Ⅲ-3> 육군 미결수용시설 설치현황

구 분		설치일자 (신축일자)	감방수 및 면적	수용정원 (최대/적정)	인원 현황	방1평당 수용인원	위치	
1군	군 직	11사단	97. 3. 10	6개/45평	40/ 25	2	1.5명	지하
		36사단	82. 7. 1 (95. 12. 22)	5개/40평	35/20	3	1.5명	지상
	2 군 단	군단	64. 2. 27 (94. 11.3)	5개/103평	100/70	7	1.5명	지상
		7사단	63. 4. 25 (96. 12. 17)	4개/40평	50/40	4	1.5명	지상
		15사단	61. 12. 1 (94. 9. 30)	4개/24평	40/25	6	1.5명	지상
		27사단	63. 8. 24 (95. 11. 1)	5개/30평	45/25	2	1.5명	지상
		76사단	85. 6. 1	2개/3평	8/6	징계자만 수용	1.5명	지상
	3 군 단	군단	72. 12. 31 (94. 5. 31)	4개/64평	60/40	5	1.5명	지상
		2사단	69. 9. 15 (96. 12. 30)	4개/33평	28/12	5	1.5명	지상
		12사단	52. 11. 8 (96. 12. 30)	5개/95평	80/50	2	1.5명	지상
		21사단	53. 1. 23 (96. 12. 27)	6개/32평	74/52	25	1.5명	지상
	8 군 단	군단	88. 12. 16 (99. 7. 21)	3개/16평	31/15	10	1.5명	지상
		22사단	81. 9. 29 (99. 6. 30)	2개/12평	13/6	수해 복구	1.5명	지하
		23사단	99. 12. 8	2개/6.9평	20/10	4	1.5명	지상
계	14	·	57개	624/396	75(명)	·	·	

구 분		설치일자 (신축일자)	감방수 및 면적	수용정원 (최대/적정)	인원현황	방1평당 수용인원	위치	
2군	군	'02 11 예정	4개 / 98평	30/25	·	1.4명	지상	
	9 군 단	군단	88년도	4개 / 25평	26 / 13	·	1.6명	지하
		31사	93년도	5개 / 35평	100 / 50	9명	1.4명	지상
		32사	66년도	8개 / 58평	72 / 54	14명	1.4	지하
		35사	95년도	5개 / 94평	104 / 52	4명	1.6명	지상
		37사	92년도	5개 / 42.6평	125 / 62	4명	1.4명	지상
	11 군 단	군단	88년도	4개 / 26평	24 / 16	2명	0.5명	지하
		39사	97년도	5개 / 93평	84 / 42	18명	0.9명	지상
		50사	94년도	5개 / 58평	100 / 50	10명	1명	지상
		53사	92년도	5개 / 47.5평	100 / 50	13명	1	지상
		70사	97년도	1개 / 58평	45 / 10	·	0.88명	지상
	계	11		46개	424/810	74명		

구 분		설치일자 (신축일자)	감방수 및 면적	수용정원 (최대/적정)	인원현황	방1평당 수용인원	위 치	
3군	군	92.10.31 (01.10.5)	4개 / 33평	28/16	1	1.5명	지 상	
	수도 군 단	군단	77.9.28 (02.5.29)	6개 / 80평	72/48	16	1.5명	지 상
		17사단	79.2.3 (97.2.3)	5개 / 28.5평	60/40	8	1.5명	지 상
		51사단	82.8.16 (94.1.14)	4개 / 23.5평	40/28	4	1.5명	지 상
		55사단	78.11.8 (97.5.7)	4개 / 25평	60/36	1	1.5명	지 상
	1 군 단	군단	90.12.29	6개 / 98평	120/90	15	1명	지 하
		1사단	92.5.8	5개 / 174평	70/45	2	1.5명	지 상
		9사단	61.12.1 (95.10.1)	4개 / 98평	32/20	10	1.66명	지 상
		25사단	95.5.15	3개 / 98평	21/15	11	1.6명	지 상
		30사단	92.6.7	5개 / 98평	83/55	·	1.8명	지 하
	5 군 단	군단	92.12.5	6개 / 98평	70/50	18	2명	지 상
		3사단	75.4.5 (91.12.30)	5개 / 119평	112/60	10	1.5명	지 상
		6사단	60.8.25 (69.2.15)	6개 / 22.7평	22/12	7	1.5명	지 상
		8사단	62.4.10 (96.11.30)	5개 / 95평	40/32	1	1.5명	지 상
	6 군 단	군단	56.5.1 (92.2.19)	5개 / 94평	40/30	18	0.8명	지 상
		5사단	95.5.31 (01년 신축)	4개 / 57평	40/30	11	0.2명	지 상
		26사단	53년 건축 (01.10.5)	5개 / 112평	104/52	21	0.2명	지 상
		28사단	77.8.10 (02.8.16)	4개 / 37평	30/20	·	0.6명	지 상
	7 군 단	군단	94.4.1	4개 / 41평	36/16	4	0.77명	지 상
		20사단	01.11.30	5개 / 60평	50/35	4	1명	지 상
		수기사	73.9.24	4개 / 70평	30/25	7	1.2명	지 상
계	21		99개	755/1160	169명			

구 분		설치일자 (신축일자)	감방수 및 면적	수용인원 (최대/적정)	인원현황	방1평당 수용인원	위치
교육사	본부	98.1.9	5개/ 17평	25/	2	1.5명	지상
	6지구대	89.12.20	4개/ 25평	40/	2	1.6명	지하
특전사 헌병대		86.12.6	4개/6.4평	28/	1	1	지하
군수사		92.8.17	2개/16.7평	20/	5		지상
총 계	50		217개	1688/	328명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01쪽, 1721쪽, 1734쪽

<표Ⅲ-4> 육군 현 수용인원 계급별 현황

구분	계	사병	부사관	위관	영관
계	282	245	34	3	.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13쪽, 1730쪽, 1738쪽, 1743쪽, 1750쪽

<표Ⅲ-5> 현 수용인원(미결수) 죄목 및 형기별 현황

구분	군무이탈	폭행	기타	계
인원	65	49	50	174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13쪽, 1730쪽, 1737쪽, 1743쪽, 1747쪽, 1750쪽

<표Ⅲ-6> 해군 미결수용시설 설치현황

구 분	설치일자	거실수/면적	수용정원	인원현황 (‘02.9.17.)	방1평당 수용인원	위치
계근단	1993.2.27.	5개/55.15평	50명	7명	0.9명	지상
진기사	1994.7.12.	8개/48.48평	56명	5명	1.15명	반지하
1함대	1988.12.20.	4개/48.5평	20명	1명	0.4명	반지하
2함대	2001.9.30.	4개/14.7평	14명	2명	0.97명	지상
3함대	1972.12.31.	2개/ 4.5평	12명	2명	2.6명	지상
목방사	1990.1.10.	3개/21.3평	15명	1명	0.7명	지상
제방사	1982.10.31.	5개/35.14평	35명	.	0.99명	지상
인방사	1999.12.10.	3개/7.5평	8명	1명	1.06명	지상 2층
해병대사	1994.3.19.	4개/6.1평	24명	1명	3.9명	지상
1사단	1991.11.5.	6개/21평	적정 42명 최대 54명	7명	2명 (적정시)	지상
2사단	1974.11.30.	6개/58평	30명	25명	0.5명	지상
6여단	1988.12.10.	4개/17.9평	23명	4명	1.2명	지상
계		54/	173명	56명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 자료」, 국방부, 2002, 1753쪽.

<표Ⅲ-7> 공군 미결수용시설 설치현황

부대명	면 적		수용능력			설치일자
	대지	건평	감방(계)	최적	최대	
계룡대근지단	1350	11.9	5	40	6	89.7.10
공사		75	2	6	8	86.10
교육사	102	58	5	15	25	88.12.31
1비	140.8	23.8	4	8	16	85.12.6
3비	166	23	3	9	15	75.12.31
5비	198	30	10	30	50	72.5.27
7전대	12	8.5	3	6	10	80.11.30
8비	224	40	6	18	60	91.11.5
10비	226.7	46.35	5	5	25	88.12.20
38전대	72	21.3	3	9	18	79.12.28
11비	210	50	5	19	28	85.2.30
15비	46	23	3	3	9	76.12.10
16비	220	38	3	6	15	76.12.20
17비	130	24	3	2	18	79.3.30
18비	170	50	5	15	15	92.4.21
19비	220	52	6	12	18	92.7.11
20비	419	58	6	12	18	197.3.31
작사근지단	65	34	3	9	14	87.11.23
계			60	186	303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 자료」, 국방부, 2002, 1756쪽.

2. 수용시설 실태

군행형법상에는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군행형법 관련 조항은 없다. 일반 행형법에 서도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행형법 시행령 제77조)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일반적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군내 미결수용시설 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비교

자료조차도 없다.

수용시설은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영창 수감 경험이 있는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7사단, 32사단, 해병대 2사단), 방문조사 시 헌병과 수용자 등의 인터뷰를 기초로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시설 실태는 일단, 크게 냉/난방 시설 관련, 환기/채광, 화장실, 목욕/세탁 시설, 감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냉/난방 시설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육군 영창 47곳 중 대부분이 온돌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보일러 난방, 온풍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난방기동기간은 당해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이며, 난방 가동시기에는 겨울철 영창 온도를 최저 14도부터 최고 25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조사팀이 방문한 영창에서도 대부분 온돌식 혹은 온풍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중앙난방 형태로 헌병대에 근무하는 일반사병과 동일하게 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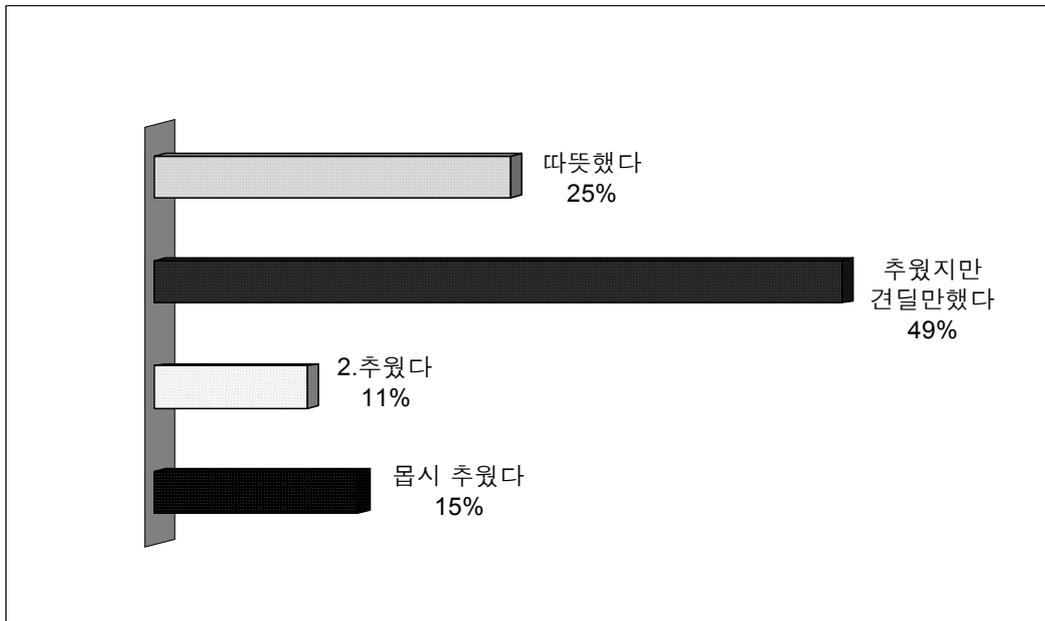
<표Ⅲ-8> 미결수용시설 난방시설 현황

항목	온돌	온풍기	중앙난방	난로
계	19	10	3	13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12쪽, 1729쪽, 1736쪽.

겨울 영창의 온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가 ‘몹시 추웠다/추웠다/추웠지만 견딜만했다’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난방 가동시기가 11월 중순으로 육군 교도소가 11월 1일 난방가동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15일 정도가 늦으며, 난방 가동 시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어느 시간대에 주로 난방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구금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감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창에 대한 겨울철, 여름철 실내 온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영창의 미결수 처우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III-1> 미결수용실의 감방 온도 (전체응답자: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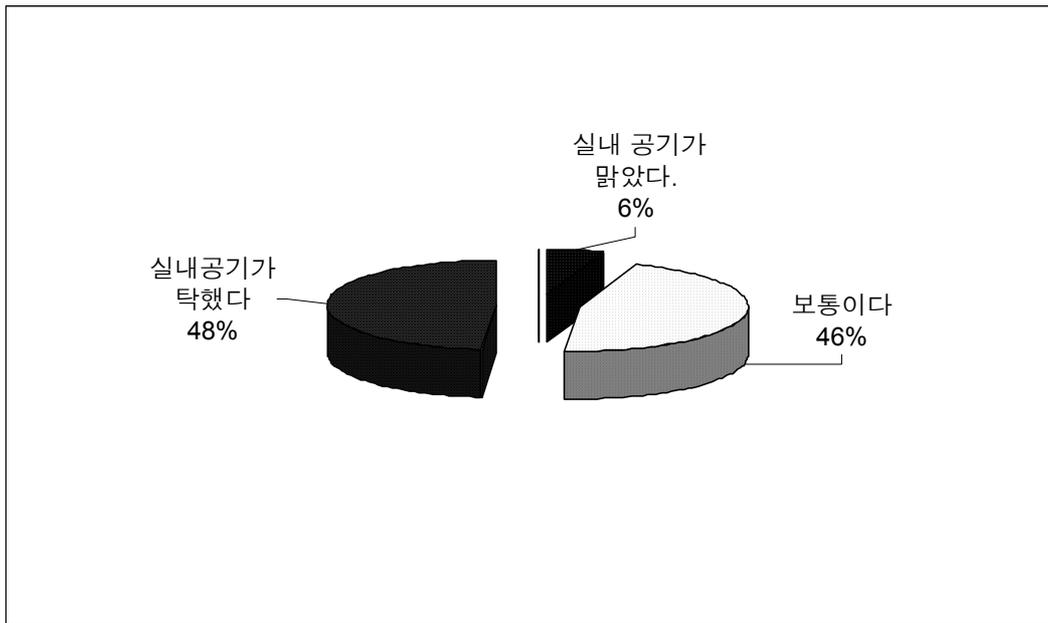
2) 환기/채광/조명상태

육군의 경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44개의 영창 중 5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상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창이 작아 자연채광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환기/채광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나 자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본 조사팀의 방문조사와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방문 조사한 영창의 창문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특히 겨울에는 창을 모두 막고 단열을 위하여 봉해놓은 상태라 채광과 환기문제는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여름철 악취가 예상되며,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방 크기에 비해 환풍기는 부족해 보였다. 설문조사 시 감방의 환기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8%가 공기가 탁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영창 시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환기와 채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햇볕이 너무 들어오지 않는다/지상에 있었으나 빛이나 환기에 문제가 있었다/여름에 냉방시설은 기대를 안하지만 환기시설은 꼭 필요하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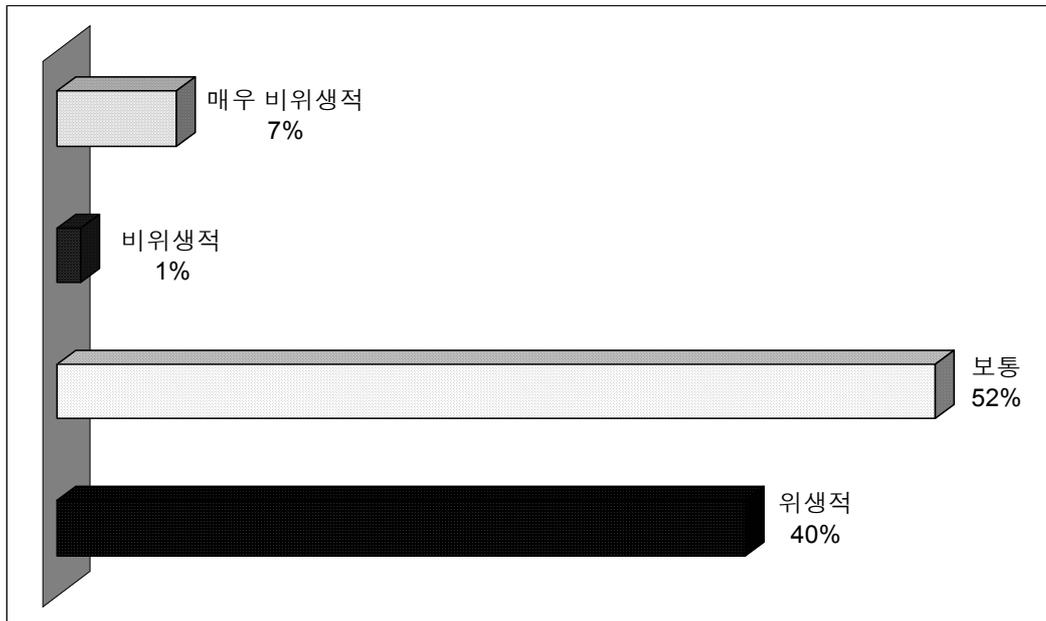
<그림 III-2> 감방의 환기 상태 (전체응답자:72명)



3) 화장실

화장실 크기/수 혹은 위생상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영창 내 화장실은 비교적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그림III-3>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위생적 혹은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III-3> 감방 화장실의 위생상태 (전체응답자:72명)



화장실은 사방 내에 있어 각 방별로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고, 사방밖에 따로 있는 경우 등 다양한데, 사방 내에 있는 경우 크기가 다소 좁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수용인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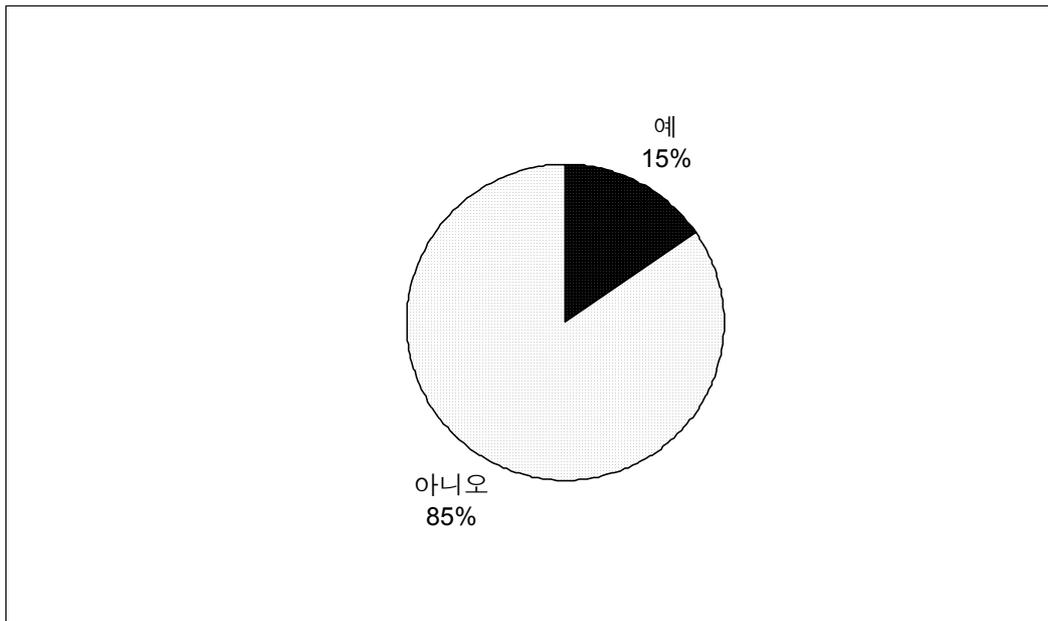
화장실을 크게 사방 내에 존재하는 경우와 사방밖에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화장실이 사방 내 있는 경우는 일단 화장실 이용에 제약이 덜하다는 것이다. 사방 내에 있으면 근무자에게 보고와 동의를 구해야 하기는 하지만, 근무자가 일일이 문을 열어주고 잠그는 불편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때문에 겪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만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 사방 한쪽에 마련된 간이 화장실이라 냄새와 수치심의 문제는 다소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높이 1미터 안팎의 칸막이정도로 몸을 가게 되어 있어 다른 수용자 및 근무자에게 보여 지고, 자해 등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큰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하는 등 수용자들에게 수치심을 조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방밖에 있는 경우는 화장실을 필요한 시기에 체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약취나 화장실이 사방 내에 있어 느끼는 불쾌감 등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자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무자가 일일이 문을 열고 감시해야 하는 입장이라 근무자의 기분에 따라 통제가 따르기 때

문에 참아야 하는 고통이 크다. 늘 앉아 있어야 하는 생활환경과 더불어 수용자들에게 변비 등의 고통을 안겨주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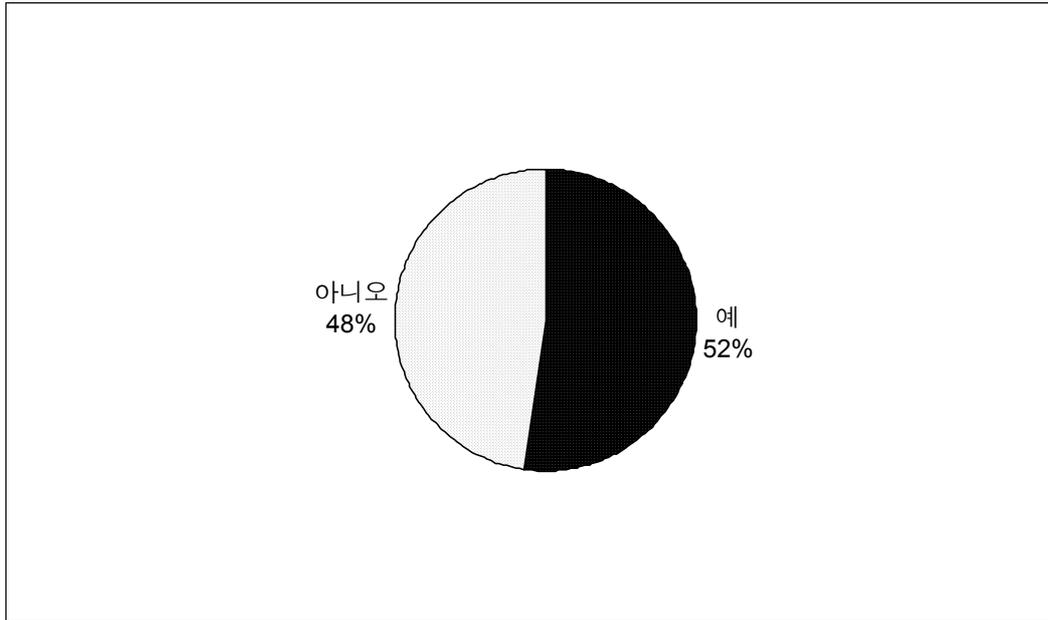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화장실 실태와 이용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화장실의 위생보다는 화장실 사용 시간, 횟수, 휴지의 부족 등 화장실 이용과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는 경향이 많았다. 사용시간이 매우 짧아서 불편하였다는 대답이 전체 주관식 응답자 57명 중에 11명이었는데, 특히, 이용시간이 1분 정도, 심지어 대변시간이 15초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1일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문제, 화장실의 문이 없거나 낮아 사용 시 수치심을 느낀 점등을 문제삼았다.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 72명 중 61명이나 되었다.

<그림 III-4> 영창내 화장실 이용여부 (전체응답자:72명)



더구나 체벌의 수단으로 화장실 금지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71명중 37명이 ‘예’라고 답해 근무자의 미결수 처우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케 했다. 또한 보급품 중 휴지는 그 양이 늘 부족해 ‘휴지 4칸 정도로’ 대변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III-5>체벌의 수단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 당한 경험에 대한 질문 (전체응답자:71명)



4) 위생 관련 시설-세면실, 목욕 및 세탁시설

국내 행정법에는 피구금자가 신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등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점은 군 행정법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육군 12사단의 경우 감방수 5개(95평, 수용인원 최대 80명/적정인원 50명)에 세면대는 겨우 4개뿐이다. 3사단은 감방수 5개(98평, 최대 70명/적정인원 50명)에 세면대 2개 등 수용최대인원 기준으로는 세면대 1개당 10-20명 가까이 사용하게 되며, 적정인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면대 1대 당 10명의 수용자가 사용하게 된다.

목욕시설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 목욕시설이 없는 곳도 9곳(육군 총 44개소)에 이르며, 목욕시설이라 해도 샤워기 설치를 포함하는 수이고, 욕탕이 있다고 조사된 곳은 11사단, 2군단 사령부, 12사단뿐이다.

<표Ⅲ-9> 육군 1군 영창 세면장/목욕시설(샤워기)/면회시설

구 분	세면장	목욕시설	면회시설	감방수 및 면적	수용인원	
계	세면대 42개	욕탕 3개 샤워기 44	13			
군 직	11사단	세면대 4개	욕탕 1개	1	6개/45평	최대40 적정25
	36사단	세면대 2개	샤워기 1개	1	5개/40평	최대35 적정20
2 군 단	군단	세면대 4개	욕탕 1개 샤워기 6개	1	5개/103평	최대100 적정70
	7사단	세면대 3개	샤워기 3개	1	4개/40평	최대50 적정40
	15사단	세면대 2개	샤워기 2개	1	4개/24평	최대40 적정25
	27사단	세면대 4개	샤워기 4개	1	5개/30평	최대45 적정25
3 군 단	군단	세면대 5개	샤워기 2개	1	4개/64평	최대60 적정40
	2사단	세면대 4개	샤워기 8개	1	4개/33평	최대28 적정12
	12사단	세면대 4개	욕탕 1개 샤워기 6개	1	5개/95평	최대80 적정50
	21사단	세면대 3개	샤워기 3개	1	6개/32평	최대74 적정52
8 군 단	군단	세면대 5개	샤워기 7개	1	3개/16평	최대31 적정15
	22사단	세면대 4개	샤워기 2개	1	2개/12평	최대13 적정6
	23사단	세면대 2개	샤워기 2개	1	2개/6.9평	최대20 적정10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02쪽

<표III-10> 육군 2군 영창 세면장/목욕시설(샤워기)/면회시설

부 대	면회실	세면장	목욕시설	감방수 및 면적	수용정원
계	8	27	6		
군	0	0	0	4개/98평	25/30
9군단	0	1	0	4개/25평	13/26
31사단	1	5	1	5개/35평	50/100
32사단	1	8	0	8개/58평	54/72
35사단	1	1	1	5개/94평	52/104
37사단	1	5	1	5개/42.6평	62/125
62사단	0	1	0		
11군단	0	1	0	4개/26평	16/24
39사단	1	1	1	5개/93평	42/84
50사단	1	2	1	5개/58평	50/100
53사단	1	1	1	5개/47.5평	50/100
70사단	1	1	0	1개/58평	10/45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22쪽

<표Ⅲ-11> 육군 3군 영창 세면장/목욕시설(샤워기)/면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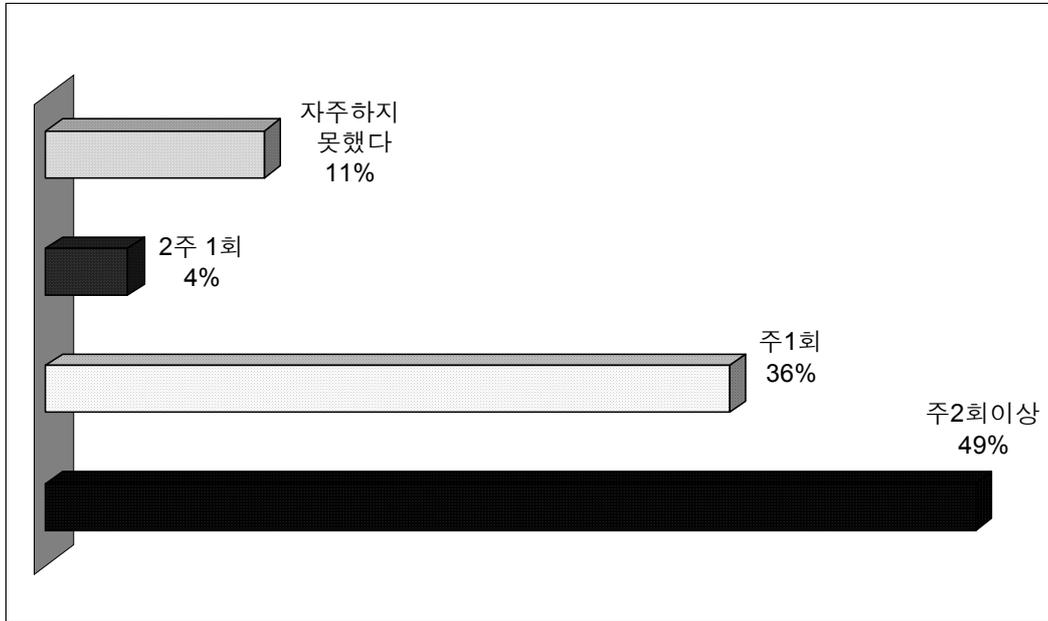
구 분		세면장	목욕시설(샤워)	면회시설	감방수 및 면적	수용정원
계		71	64	20		
군		세면대4	샤워기4	1	4개/33평	28/16
수 도 군 단	군단	세면대5	샤워기5	1	6개/80평	72/48
	17사단	세면대3	샤워기3	1	5개/28.5평	60/40
	51사단	세면대2	샤워기3	1	4개/23.5평	40/28
	55사단	세면대3	샤워기4	1	4개/25평	60/36
1 군 단	군단	세면대6	샤워기6	1개소	6개/98평	120/90
	1사단	세면대5	샤워기4	1개소	5개/174평	70/45
	9사단	세면대3	샤워기2	1개소	4개/98평	32/20
	25사단	세면대1	샤워기1	1개소	3개/98평	21/15
	30사단	세면대6	샤워기3	1개소	5개/98평	83/55
5 군 단	군단	세면대6	샤워기3	1개소	6개/98평	70/50
	3사단	세면대2	.	1개소	5개/119평	112/60
	6사단	.	샤워기2	1개소	6개/22.7평	22/12
	8사단	세면대4	.	1개소	5개/95평	40/32
6 군 단	군단	세면대2	.	1개소	5개/94평	40/30
	5사단	세면대3	샤워기5	1개소	4개/57평	40/30
	26사단	세면대5	샤워기8	영창식당 이용	5개/112평	104/52
	28사단	세면대2	샤워기2	1개소(공사중)	4개/37평	30/20
7 군 단	군단	.	샤워기3	1개소	4개/41평	36/16
	20사단	세면대4	샤워기3	1개소	5개/60평	50/35
	수기사	세면대5	샤워기3	1개소	4개/70평	30/25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35쪽

목욕(혹은 샤워)는 군 행형법 기준으로 주 1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주1회 혹은 주2회 이상 가능한 곳이 전체 응답자 중 85%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체 위생과 관련된 주관식

질문에 목욕시간이 짧은 것에 대한 불평이 많았으며, 피부병이 여러 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신체 위생을 위한 시설환경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I-6> 영창내 목욕 회수 (전체응답자: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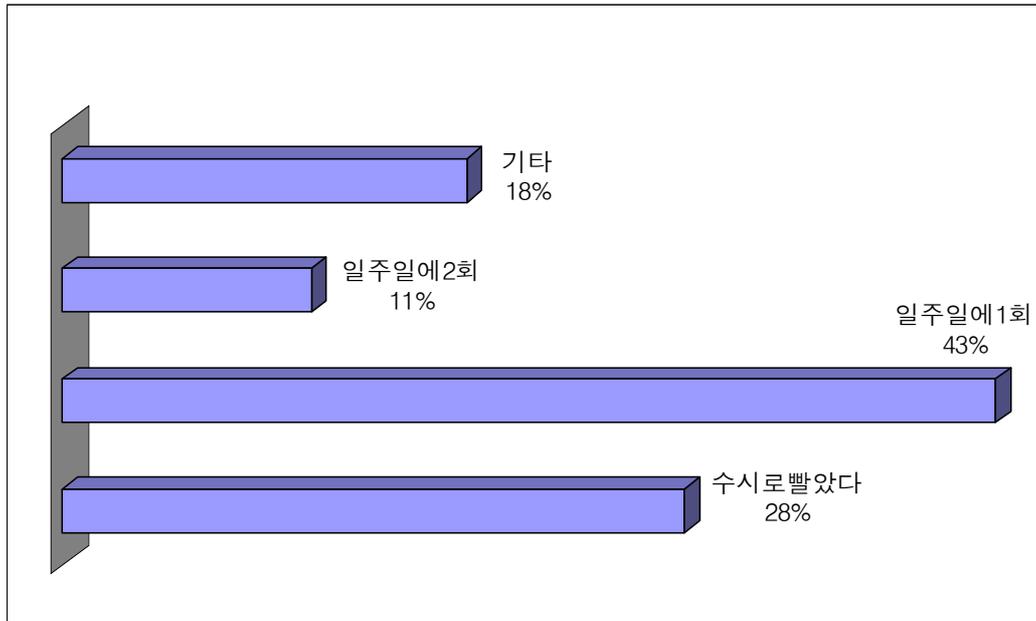


신체 위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침구, 의류 등의 세탁에 관한 것이다. 세탁 시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시설부분은 비교할 수 없지만, 세탁실과 세탁시간이 따로 주어지기보다는 주로 세면시간 혹은 목욕시간에 세탁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빨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침구류를 거의 못 말렸고 빨래 시간이 따로 없어 짧은 샤워시간을 남겨서 빨래를 해야 해 위생적으로 빨래를 할 수 없었다’, ‘침구류가 위생적이지 못해 피부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수건 등은 한 장으로 여러 명이 사용해야 했으므로,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은 비위생적이며 젖어 있는 수건을 사용해야 했다’ 등 의류, 침구류를 제때 세탁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횟수를 묻는 질문에 ‘1주일에 1회’, ‘수시로 빨았다’가 전체 응답자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 침구류의 비위생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은 세탁시간과 겉옷과 속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없다는 점, 모포 등 침구류는 거의 세탁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탁 후에도 제대로 말릴 수 없었던 점 등 여

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침구류는 ‘말릴 수 없었다’와 ‘기타’ 의견이 67%를 차지하는데, 기타 의견의 대부분이 ‘한 달에 한번’, ‘피부병이 돌 때’, ‘근무자가 허락할 때만’ 이라고 응답해 거의 말릴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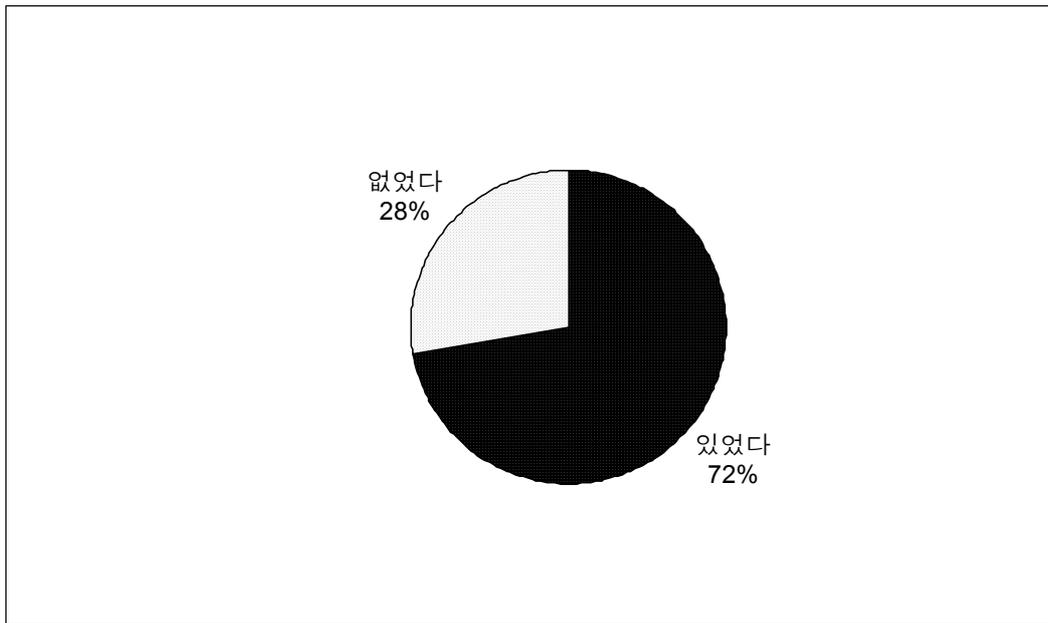
<그림 III-7> 영창내 세탁 빈도 (전체응답자:71명)



5) 감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의 72%가 영창 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90년대 후반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대부분의 군 구금시설에서 감시헌병과 함께 감시카메라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이 방문했던 헌병대에서도 모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었다.

<그림 III-8>감시카메라 설치 여부 (전체 응답자:72명)



수용시설 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민간의 경우 수감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개인의 사생활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있는 군 구금시설의 특성상 감시 카메라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측면보다는 감시병의 가혹행위나 구금자 간의 폭행과 같이 영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방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 복무 중 수감되었던 A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소 후 구금되었던 영창에서는 감시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근무헌병들이 기분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단체기합을 주거나 수용자간의 폭행을 묵인하는 등 일상화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한다. 반면에 연구팀이 방문한 해병대 2사단 헌병대의 경우, 2002년 해병대 1사단 헌병대에서 발생한 근무헌병의 수용자 폭행상해 사건 이후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헌병대장실에서 직접 감시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창 내 사고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 구금시설내의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 기록 보관 규정 등과 같은 철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된다면 현행 감시카메라 운영은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창 내 감시 인원은 사병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2시간씩 근

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병대 2사단의 경우에는 영창 감시 업무만을 전담하는 헌병 4명이 구치소장(원사)과 함께 영창 내에서 기거하며 2인 1조로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 또한 해병 1사단 헌병대의 수용자 폭행상해사건 이후 강화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창근무 헌병은 ‘성격이 온순한 모범헌병’ 중에서 차출되며 3~6개월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1974년이래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에 강제징집 된 상태에서 집총거부를 하여 항명죄로 군대 내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육군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2001년 중반부터는 군에 강제징집 되기 이전에 징집 자체를 거부하여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은 1992년 220명, 1995년 427명, 19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³⁾.

여호와의 증인 수감자는 군대 내 미결, 기결 구금시설에서 1/3 이상의 비율을 점해 왔는데, 2001년 중반 이후 이들이 더 이상 군대 내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대 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근무헌병들의 부담도 크게 완화되었다. 또 최근 신세대 사병들의 인권의식 신장으로 감시헌병들의 가혹행위도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팀이 인터뷰한 감시헌병들도 수용자들이 규율을 어기거나 통제에 불응할 경우에는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고 있다고 대부분 답했다.

설문지와 과거 군 구금 경험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일부 감시병들이 근무시간이 길어질 경우 구금자들에게 화풀이로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답변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록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의 소지는 늘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구금시설 감시 문제는 수용자들과 항상 접촉하며 생활하는 감시헌병들의 근무여건이나 병영생활과 같은 처우 개선과 병행하여 사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자료집』, 2002

3. 미결수용시설 내 미결수 처우 문제

1) 일과

군 행형법 규정에는 미결수용시설 내 일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각 군별로 업무지침 형태로 '영창 일과표'가 마련되어 있다. 대개 기상 오전 6시, 오전 8시까지 점호, 세면, 청소, 조식을 마치고, 12시 중식까지 수양정좌, 독서시간을 가진다. 중식 후 다시 체력훈련, 독서, 수양정좌가 반복되고, 오후 5시-6시에 석식, 오후 6시 개인정비,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TV/VTR 시청, 오후 8시부터 취침 10시까지 수양록작성/반성의 시간, 점호,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일과이다(<표Ⅲ-12> 참조).

본 설문조사에서 기상시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7명중 41명이 '적당하다', 25명이 '너무 이르다'에 답했다. 취침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5명 중 54명이 '적당하다'에 답하고 있어 기상과 취침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외 일과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독서'와 '정좌/명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중 가장 지루한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적으시오'라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일과 중 가장 지루한 시간은 '독서'와 '명상'이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정좌 혹은 명상', '독서', 열차려 등 기합 위주로 진행되는 운동시간을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독서시간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간단한 문항의 설문조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독서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영창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의 종류와 독서 시 요구되는 특정자세에 대한 불만일 것으로 추측된다. 도서의 양과 종류의 문제는 다시 언급하겠으나, 그 양이 너무 적고 종류도 종교 서적이거나, 『마음의 양식』 정도라 독서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독서할 때 요구되는 자세는 흔히 영창에서 이른바 '정좌' 자세에서 한 손으로 책을 뺀어 들고 보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에서 1시간 이상씩 책을 읽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과 시간 중 TV/VTR 시청 시간은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이 부분 역시 다른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으나, 거의 모든 수용자가 영창에서 TV/VTR 시청의 가능여부를 되물을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영창 3곳 중 한 곳만이 영창 내에 텔레비전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교화/교육이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끔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다른 영창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실제로 방문한 영창에 붙어 있는 일과표의 경우도 위 일과표와 조금씩 다르며, TV/VTR 시청은 일과표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과 시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적 일과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근무자에 따라 일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많은 응답자가 ‘근무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음’, ‘근무자도 사람이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과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근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근무 헌병에 따라 일과 준수의 여부가 많이 바뀐다’ 등 근무자의 기분에 따라 운동시간이 곧 기합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하루 종일 정좌를 강요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표III-12> 육군 1군 영창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아침	06:00~ 06:30	기상 및 일조 점호						근무자	
	06:30~ 07:00	세면 및 청소						근무자	
	07:00~ 08:00	조식						근무자	
오전	08:00~ 09:00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내무검사 준비 및 실시 특별 훈련	종교 행사	형무담당관
	09:00~ 10:00	독	제식 훈련	독	독	독서			형무담당관 형무병
	10:00~ 11:00		독	서		교회 위원 초청 대화 설교			담당교관
	11:00~ 12:00	서	서	군법	서	담당교관			
	12:00~ 13:00	중식						근무자	
오후	13:00~ 14:00	체력 단련	체규정 교육	체력 단련	제식 훈련	체규정 교육	내무검사 결과시정	자 기 반 성	소대장 형무담당관 형무병
	14:00~ 15:00	독	독	독	독	독			창의 제안
	15:00~ 16:00	서	서	서	서	서	"		
	16:00~ 17:00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형무담당관	
야간	17:00~ 18:00	석식						근무자	
	18:00~ 19:00	개인정비						근무자	
	19:00~ 20:00	TV / VTR 시청						근무자	
	20:00~ 21:00	수양록작성 / 반성시간						근무자	
	21:00~ 22:00	점호 / 명상의시간						일직사관 근무자	
	22:00~ 06:00	취침						근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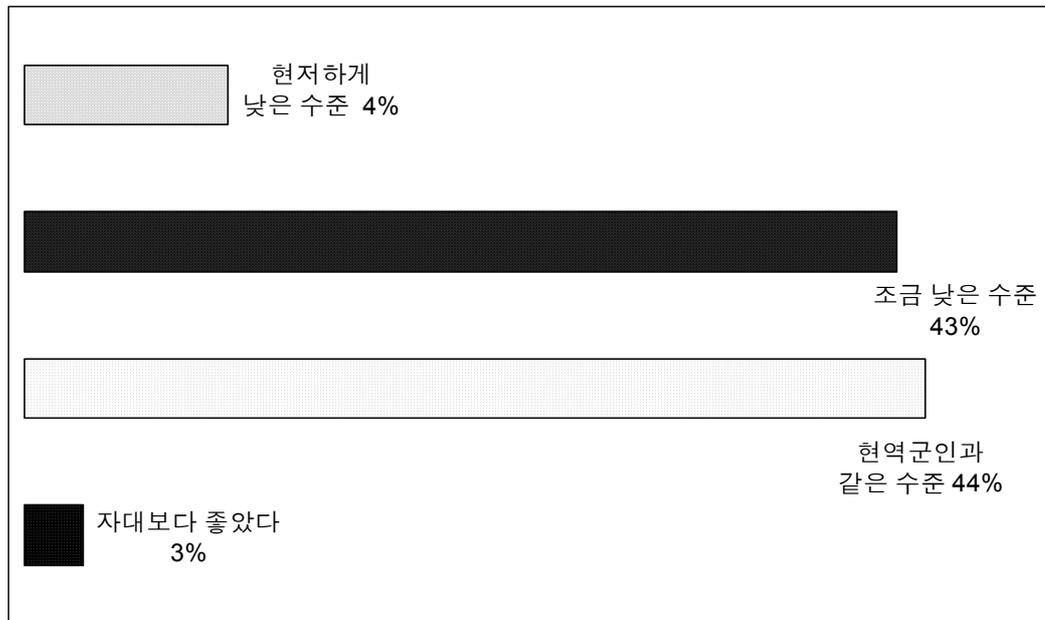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14쪽

2) 식사

미결수용시설의 수용자의 식사는 군 시행령 제4장 제9조 “(식량급여의 기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급여의 기준은 현역군인의 급식기준에 준하고, 기타 식량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외에는 다른 준거 조항이 없다.

현역 군인의 급식과 비교할 때 미결수용시설의 급식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자대 보다 좋았다(2명)’, ‘현역군인과 같은 수준(31명)’,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30명)’,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9명)’으로 비교적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림 III-9>미결수용시설의 급식 상태 (전체응답자: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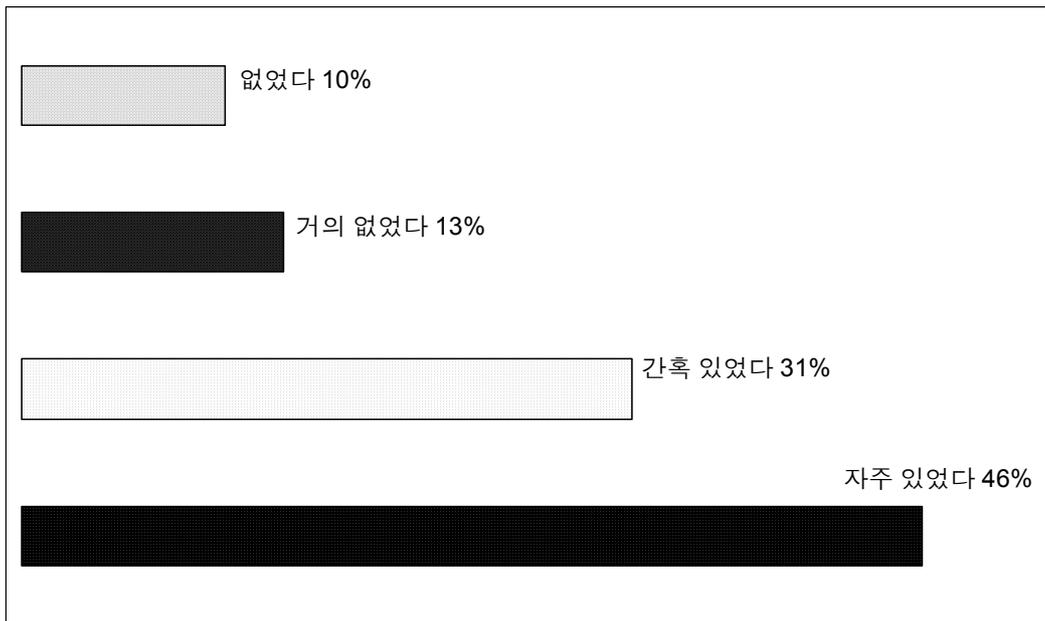


배식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70명 중 54명이 ‘감방 내 배식’, 9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응답했다. 감방 내 배식은 식탁을 대신할 작은 탁자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식사마저 불안정한 자세로 하게 함으로써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간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방 내 배식이 이루어진다면, 식탁을 대신할 작은 탁자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헌병이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강압적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68명 중 ‘자주 있었다(31명)’, ‘간혹 있었다(21명)’, ‘거의 없었다(9명)’, ‘없었다(7명)’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영창에서 잔반을 처리하는 처리통을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식사를 남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영창 내 인원이 때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늘 일정량을 배식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영창 인원이 많으면 배고픔에, 영창 인원이 줄어들면 많은 양을 남기지 못하게 해 영창 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배식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이도 있었다.

또한 마실 물이 충분히 제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70명 중 36명이 ‘부족했다’라고 응답했으며, 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는 특히 여름철 식수부족이 심각했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그림 III-10>식사를 남기지 못하게 한 경우 (전체응답자:68명)



3) 면회

수용자의 면회는 군 행형법 제4장 (면회와 서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해

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한다. ②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군행형법 시행령에서도 면회시간, 면회 장소, 횟수, 면회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42조 (면회시간) ① 면회는 교도소등의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의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면회의 횟수) .① 수형자의 면회횟수는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 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3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실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면회횟수를 증가시켜 허가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주 2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면회의 장소) ① 수용자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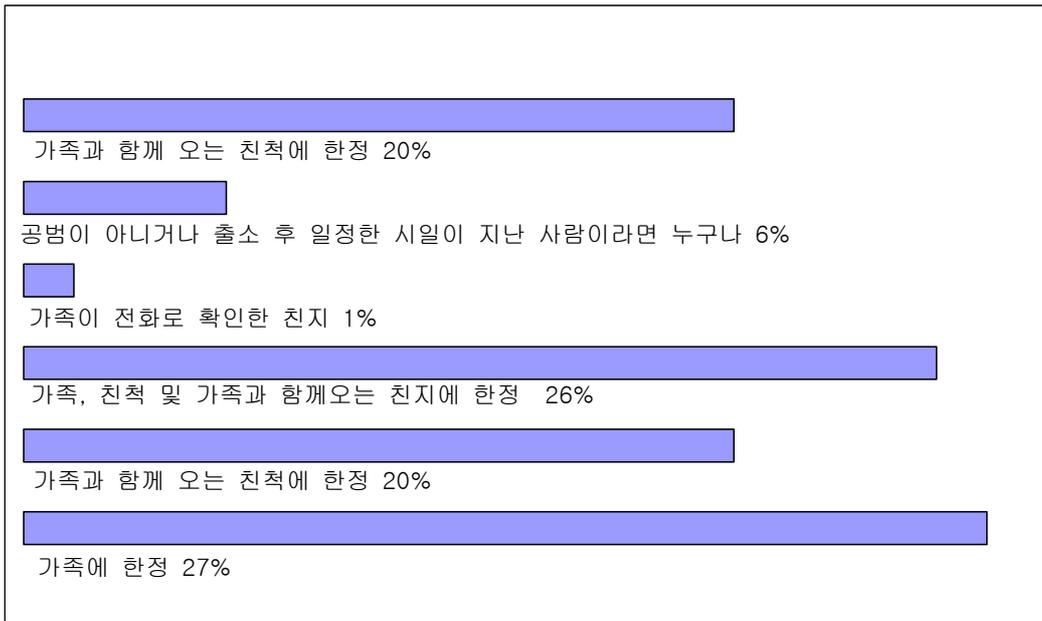
면회 부분은 미결수용시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들이 없거나 형식적인 언급으로 끝나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미결수는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외부와의 접견 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그 때문에 면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인권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행형법 시행령은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결수에 대한 면회제한은 2002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난 상태이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부분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들의 면회의 권리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매일 1회 면회할 수 있는 피구속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군행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고 위헌판결을 해 미결수의 외부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군에 매일 1회 면회를 허용토록 하는 지침이 하달되어 시행되고 있다.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무자에 따라 짧게는 1분부터 길게는 30분까지 다양하게 주어졌으며, 면회시간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70명중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런 대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37명,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이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도 7명이나 응답했다. 미결수용시설에서 면회객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0명 중 가족만 가능한 경우와 가족과 함께 온 친지에 제한한 경우가 51명, 찾아온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경우는 28명이었다.

<그림 III-11> 미결수용시설 내 면회객 제한여부 (전체응답자:70명)



면회 장소를 묻는 질문에 면회실은 27명(전체 응답자 70명), 면회실이 따로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3명이었다. 면회실이 없는 경우는 식당으로 응답한 이가 가장 많았으며, 헌병휴게실, 간부식당, 회의실 등이었다.

면회에 대해서는 '먼 곳에서 온 분들에게 시간이 짧고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없었다', '헌병들의 감시가 너무 심해 대화를 잘 할 수가 없다', '부모님이 가져온 음식

을 먹게 해주었다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한 부분은 면회횟수와 면회시간, 그리고 면회 시 제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면회횟수는 한 달에 1번 혹은 2번이었으며, 어떤 경우는 면회시간을 특정요일(예; 화요일과 금요일)에 한정하고 있는 영창도 있으며, 심지어 일과시간 내로 규정한 면회시간을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서 14시로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4) 편지

군행형법 제15조 3항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 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4항에서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 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으며, 군행형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등에서 서신수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체 응답자 58명 중 49명(84%)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만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방 내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달에 한번 일과시간 내, 혹은 근무자 마음대로 시간을 지정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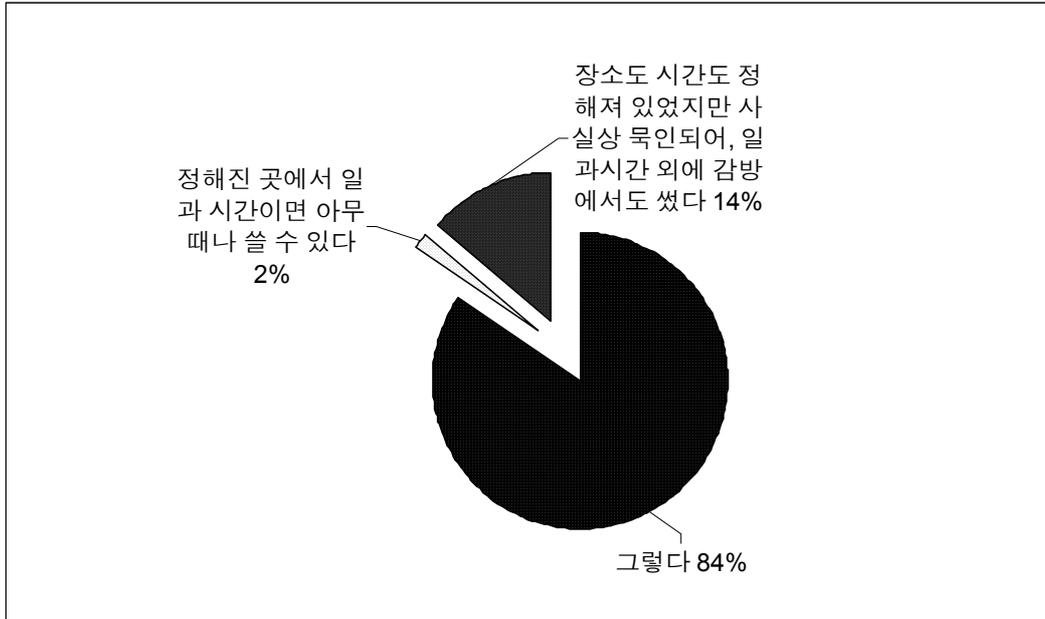
편지를 쓴 횟수도 한 달에 한번, 일주일 혹은 2주에 겨우 한 통 정도를 쓸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편지 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도 꽤 있었다. 서신 대상자를 제한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0명 중 47%가 가족 및 신분이 확인된 친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였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편지를 쓰는 시간이 부족하다’, ‘수양록을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며, ‘편지 장수도 거의 1장으로 제한’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편지에 대한 의견들로 받은 편지의 경우 읽게 한 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는데, 규정상 받은 편지는 영치하였다가 출소 혹은 이감 시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치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폐기하고 있었다.

‘필기구가 너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20명이라면, 볼펜은 6-7자루만 준다. 그럼 한 사람이 쓰고 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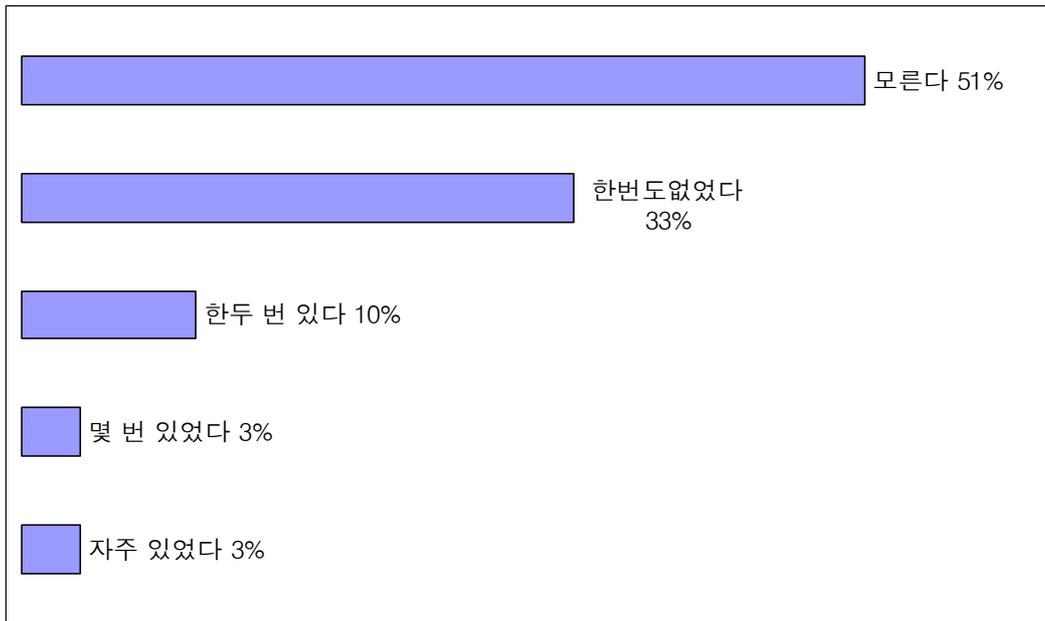
다가 시간에 쫓겨서 몇 자 적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소를 알아야 편지를 부칠 것인데, 구급 당시 보관했던 물품함에 있는 수첩을 볼 수 있게 허가해주지 않아’ 편지를 쓸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III-12> 편지 작성 장소 및 시간 (전체응답자:58명)



미결수용시설 당국에 의해 서신 발송이 제한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몇 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한두 번 있었다’ 10명(16%), ‘한번도 없었다’ 19명(33%),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9명(51%)이었다.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창 내의 일을 쓴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림 III-13> 미결수용시설 당국에 의한 편지 불허여부 (전체 응답자: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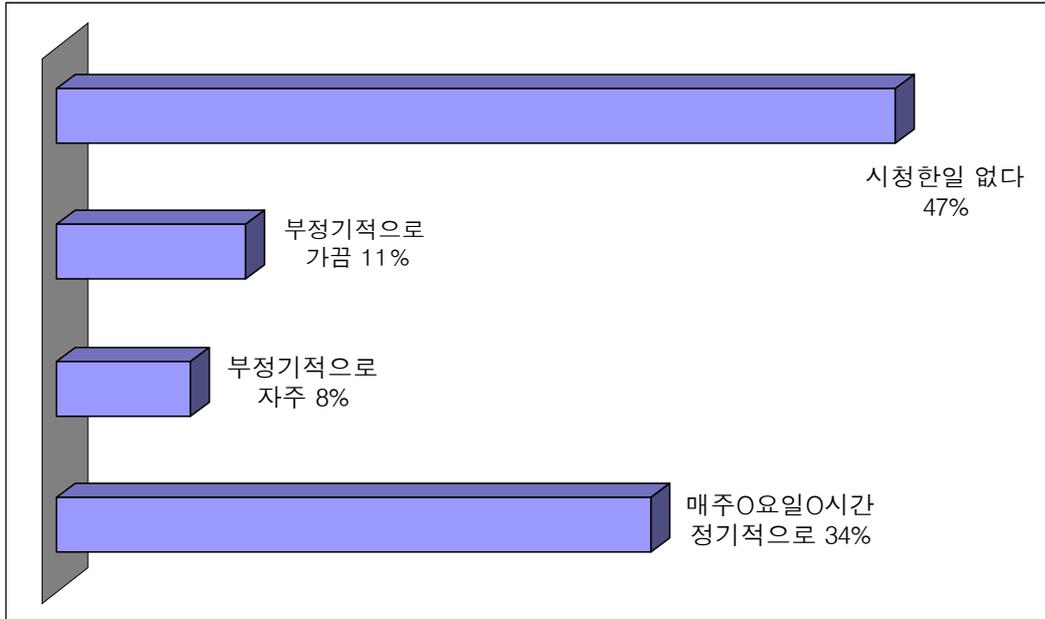
5) TV, 라디오 시청취와 독서, 신문 열독

군행형법 시행령 제75조 (라디오 청취 등) 1항에 “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고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보장하고 있지만, 바로 2항에서 “소장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교화 상 필요’ 외에 구체적인 제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역으로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제한 근거가 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방문조사를 한 영창 3곳 모두 텔레비전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수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 곳은 단 1곳이었고, 다른 2곳은 개인용품 영치실 등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시청이 그다지 용이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드컵 때 한국전을 함께 보는 등 수용자의 시청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도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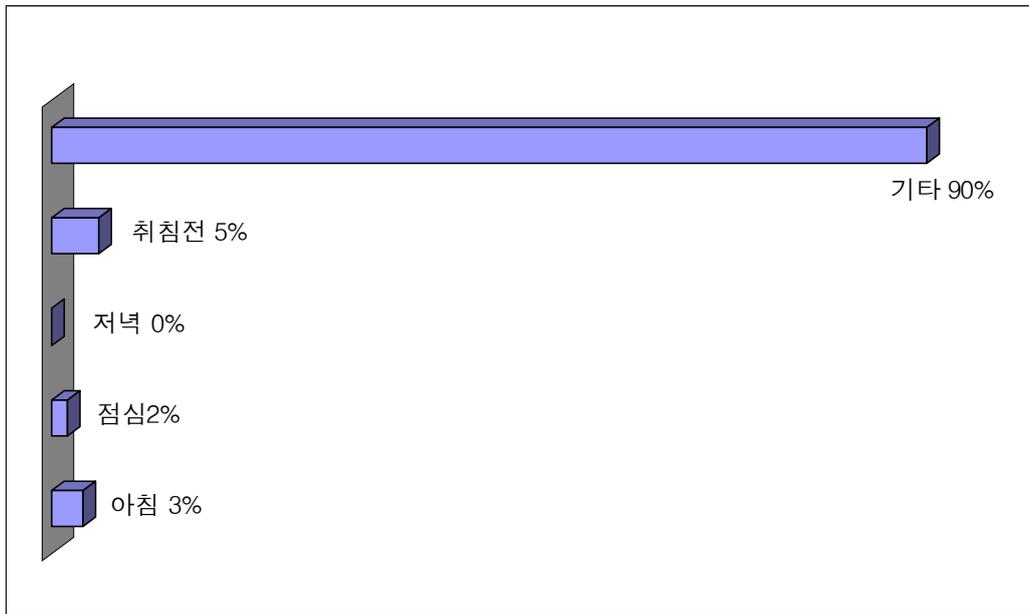
TV 시청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65명 중 31명이 ‘시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특정한 요일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시청했다고 응답한 이가 22명이었다.

<그림 III-14> 미결수용시설 내 텔레비전 시청 여부 (전체응답자:65명)



라디오 청취의 경우는 좀 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라디오 청취가 가능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61명 중 6명에 불과했으면, 나머지는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라디오를 청취할 수 없었다’고 답하고 있었다.

<그림 III-15> 미결수용시설 내 라디오 청취 시간 (전체 응답자:61명)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별달리 할 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경 지급이 되지 않아’ 시청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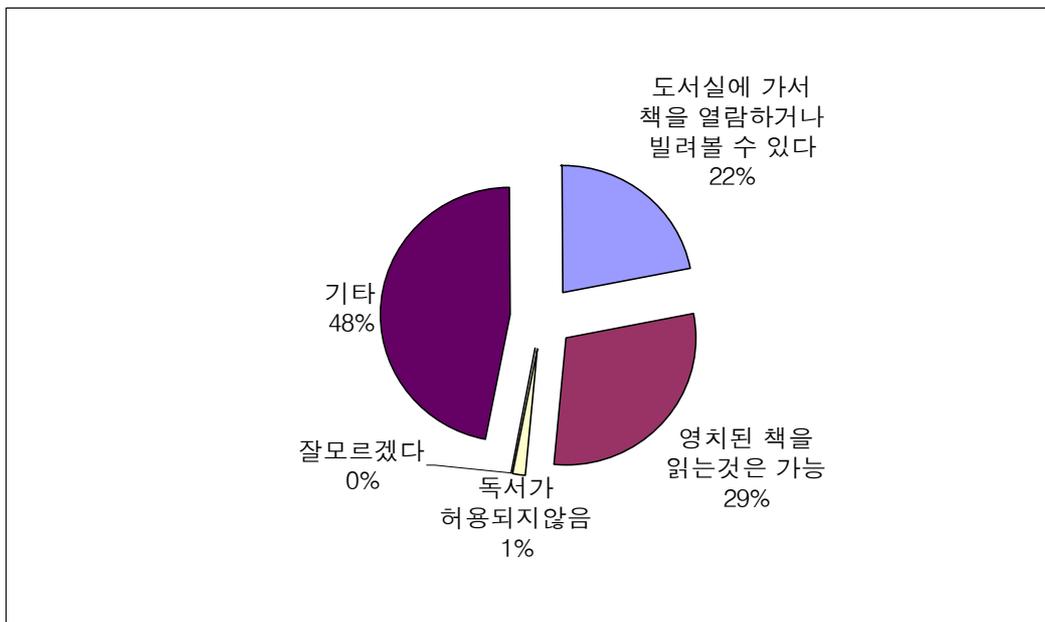
독서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30조 “(도서의 열람)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시설 내에서 책을 읽는 것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독서시간은 보장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 시 기타의견에 32명(48%)이나 응답한 것은 예시가 다소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타의견의 대다수가 ‘영창 내 비치된 책만 읽을 수 있었다’와 ‘근무자가 일괄적으로 가져다주었다’가 가장 많았다.

단 독서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서 독서 가능 여부보다는 그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독서와 관련되어 수용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내용은 독서 시간, 도서의 부족 및 제한, 독서자세이다. 우선 독서시간은 일과표 상에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하루에 1-2시간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독서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서 시 특정한 자세를 요구해 오히려 독서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실제로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좌 자세에서 바닥에

책을 두고 오랜 시간 책을 읽기란 보통 힘든 자세가 아닌 것이다. 본 조사연구팀이 방문한 영창의 경우 사방 내 큰 탁자를 두어 책을 읽도록 배려하고 있었는데, 작은 독서용 탁자를 제공하는 것이 수용자들이 호소하는 무릎 통증 및 악화, 허리통증, 시력저하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한 부분이 도서의 부족과 제한하는 도서 종류가 많았다는 것이다. ‘책의 양이 부족하여 똑같은 책은 여러 번 읽게 된다’, ‘하루일과 중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시간으로 정해놓았지만 언제나 같은 책을 읽어야 하였다. 그리고 영치된 책이나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 ‘많은 잡지들이 금지되어 독서가 무색했다’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안경지급이 되지 않아 열독에 매우 불편했음 플라스틱 안경테조차 불허’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III-16> 미결수용시설 내 독서 가능 여부



신문 구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행정법에서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독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신문이나 도서의 내용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구매와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문 구독 여부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신문 구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3명 중 62명이 ‘구독이 허가되

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신문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고려해 볼때, 영창 내에서 신문구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신문 구독 요청을 시도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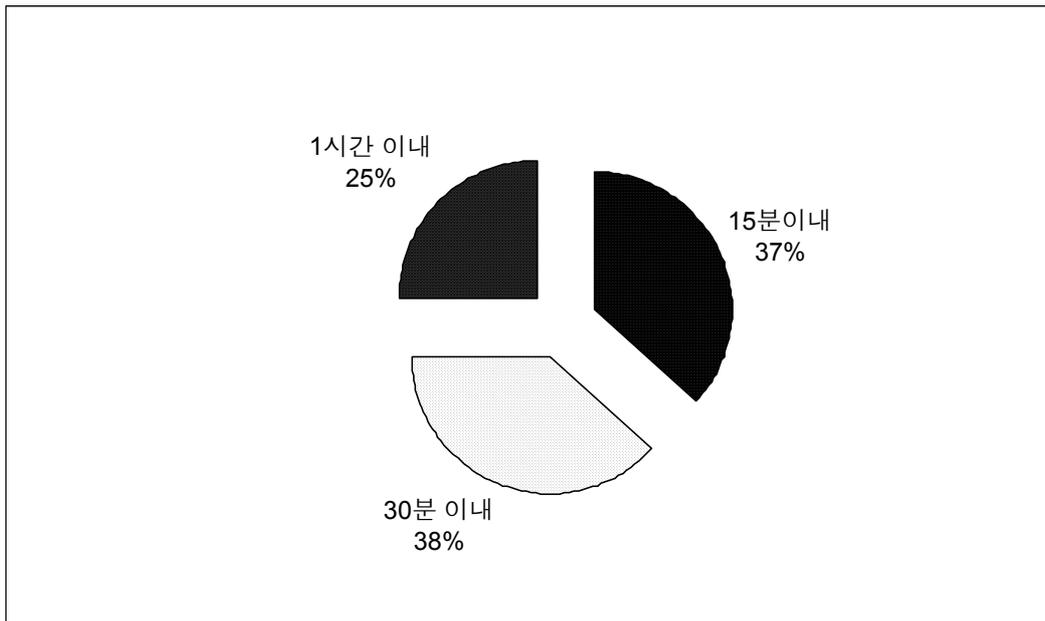
영창 내 수감자를 위해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67명 중 65명이 '비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가끔 보게 되는 신문도 국방일보로 제한되어 있어 외부의 소식을 듣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6) 운동

군 행형법 제22조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65조 1항 “소장은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용자의 운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용자들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운동시간이 보장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한 몇 가지 문항의 결과를 보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루 운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0명 중 45명이 30분 이내(15분 이내 응답자 포함)라고 답했으며,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6명 전원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림 III-17> 하루 운동시간 (전체 응답자: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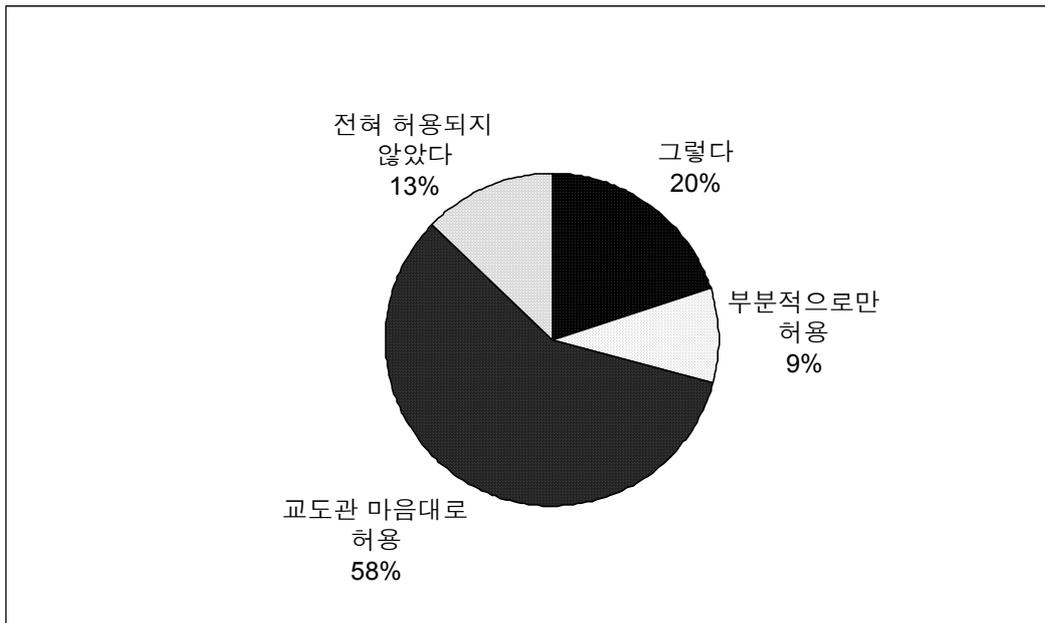


규정대로 운동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55명 중 단 11명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교도관 마음대로 허용되었다’라고 응답한 이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동을 하는 장소는 전체 응답자 62명 중 58명이 ‘감방 내’ 라고 응답했다. 이는 본 조사팀이 조사 방문한 영창에서도 유사한 답을 구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운동시 운동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한 감시의 어려움으로 미결수의 옥외 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팀이 방문한 영창 중 7사단 1곳만 일광욕 및 실외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그곳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7사단 방문 당시 수용인원은 미결수용자 2명, 징계입창자 2명이었는데, 적은 인원이라 그나마 운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다시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감시인원 등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특히, 운동에 대해 주로 지적된 문제점은, 1)실외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2)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대신한 점, 3)운동시간을 주로 기합이나 체벌로 이용된 점이 지적되었다. 거의 앉아 있는 것이 일과이기 때문에 많은 수용자가 무릎 관절의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창 시설과 운영(감시 인원부족)상의 문제로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18> 미결수용시설 내에서 운동 (전체응답자:55명)



7) 의료

군 행형법 제 6조 2항에서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의관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6개월에 한번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제66조에 명시하고 있다.

아팠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의무과에 가서 의무관(혹은 위생병)의 진료(약 조제 포함)를 받았다’(3명), ‘위생병의 진료를 받았다’(1명), ‘헌병의 진료(약 조제 포함)를 받았다’(9명), ‘사단 의무대 외진’(3명),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8명)라고 답했으며, 기타의견(15명)으로는 ‘가족의 영치 약품으로 해결’, ‘군단 의무장교의 방문 진료 시 상담 및 약조제 처방과 외부 약 반입 시 군의관 확인 후 허락해줌’ 등이 있었다. ‘아픈 적이 없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표 III-13> 육군 1군 의료인력 현황

(단위:명)

명칭	군직		2군단				3군단				8군단			계
	11사단	36사단	군단사단	7사단	15사단	27사단	군단사단	2사단	12사단	21사단	군단사단	22사단	23사단	
군의관	1	3	2	7	4	1	1	1	1	1	1	1	1	25
위생병	1	2	4	11	4	1	2	1	1	1	2	1	2	33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720쪽

위의 <표III-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단이 군의관 1인, 위생병 1~2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각 사단의 헌병대에 군의관 또는 위생병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환자 발생율이 낮고, 본 조사팀이 방문한 영창 중,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형무담당관의 차로 병원이송을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조치에 주의를 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정좌

앞서 일과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독서’와 ‘정좌’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정좌는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를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는 자세’를 일컫는다.

군행형법 상에는 미결수용시설 수용자들의 정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구금기간 동안 특정한 자세에 대한 언급도 없다. 행동의 제약을 받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벌방식이 자유형 이상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정좌가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과 시간 중 수용실 내에서 특정한 자세(정좌)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9명 중 67명(97%)이 ‘예’라고 응답하고 있다. 정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에 영창에서 주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정좌’이기 때문이다. 정좌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자세로, 미결수 일과표 상에도 오전 8시-9시, 오후 4시-5시에 수양정좌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이 하루 3시간이상부터 6시간 이상까지, ‘근무자의 기분에 따라’ 등 꽤 오랜 시간 정좌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일과 시간 중에 특정한 자세(정좌)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 다른 주관식 응답율에 꽤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정좌에 대해 그만큼 불만사항이 높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병대식 정좌 자세와 비슷했다. 시야는 전방 상향 15도로 유지하며, 눈감

박임을 제외한 부동자세로 오전 오후 저녁 1시간씩, 약 3시간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난다. 근무자에 따라 유동성이 있어서 적게 받은 적도 종종 있었다

하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기합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 양반다리에 손을 곧게 펴서 무릎위로 주먹을 쥔 손을 올려놓는 자세이다.

일반적으로 앉는 자세에서 허리를 쭉 펴고, 팔은 다리에 올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원칙으로는 50분 정좌에 10분 휴식이지만, 대체로 지켜지지 않으며, 근무자의 기분에 따라 휴식 없이 2시간 하거나 말뚝을 서게 되면 연이어 4시간 할 때도 있다.

흔히들 양반다리라고 하는 정좌의 자세를 취하였으며 스트레칭 체조를 시켜주는 몇 분간 외에는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정좌를 하고 있었다. 근무자의 특성상 잠시 다리를 펴고 쉬게 해주는 좋은 근무자도 있기는 하였으나 드물었다.

양반다리에 양팔을 펴고 무릎에 두 손을 주먹 쥐고 올리며 머리는 15도 가슴 펴고 20에 10분 휴식.

일반적인 정좌자세였다. 소위 말하는 ‘각’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다리를 펴거나 기대앉거나 누워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오로지 정좌자세만 할 수 있었다. 근무자에 따라 ‘각’을 잡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음.

특정한 자세를 강요하면서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미결구금 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 미결수용시설의 특징인 ‘징계자’들과 함께 수감되어, 비록 분리 수용된다 할지라도 미결수용자들에게 대한 관리와 처우는 매우 모호한 입장에 있을 밖에 없는 것이다. 배식 담당에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외에는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사전형벌 및 단기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미결구금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정좌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고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주며 심지어 정신분열증을 유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른바 ‘애국군인 권대현 사건’이다.⁴⁾ 동아대 영문과 88학번인 권대현 씨는 1991년 53사단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 중 ‘애국군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국군기무사에서 20일 간 조사를 받고 국방부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었다. 국방부 헌병대 영창에 수용되어 있던 9개월 간 권대현 씨는 하루 14시간 씩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정좌 상태를 강요받았다. 당시 권대현 씨와 같은 사건으로 국방부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내내 카메라와 헌병이 수용자들을 감시하는데, 정좌자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마이크에서 “누구누구 자세 바로 잡게 하라” 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러면 곧장 헌병이 달려와 구타하거나 모욕을 가했다.

권대현 씨가 수감되어 있던 91년 7월경에는 그와 같은 혐의로 수용된 한 수용자가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반입된 화장품병을 깨어서 손목에 자해를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창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권대현 씨는 정신분열증 치료에서 결정적인 시기인 초기 단계의 치료기회를 놓쳐 버렸고, 그 결과 12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영창에 있는 줄로 여긴다고 한다. 그는 매일 밤마다 9시5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며, 방의 모든 물건은 ‘각’을 잡아 나열해놓고, 학교와 집과 거리 등 날마다 똑같은 장소를 왔다갔다한다. 길을 걸을 때는 늘상 자기 얼굴을 때린다. 권대현 씨 이외에도 같은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다른 한 명은 현재까지 심한 건망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이 좁은 사방 안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몇 시간 씩 정좌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문이다. 정좌자세를 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무릎통증, 허리통증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연구조사 결과, 군 영창에서는 이른바 ‘각을 잡는’ 정좌를 오래 시키거나 정좌 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폭언과 폭행을 하는 엄격한 정좌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창 내에서 정좌는 ‘수양’ 정좌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강제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육군 교도소의 경우 눕거나 벽에 기대는 것만 아니면 각자 어느 정도 편하게 앉아 있는 자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창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좌를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영창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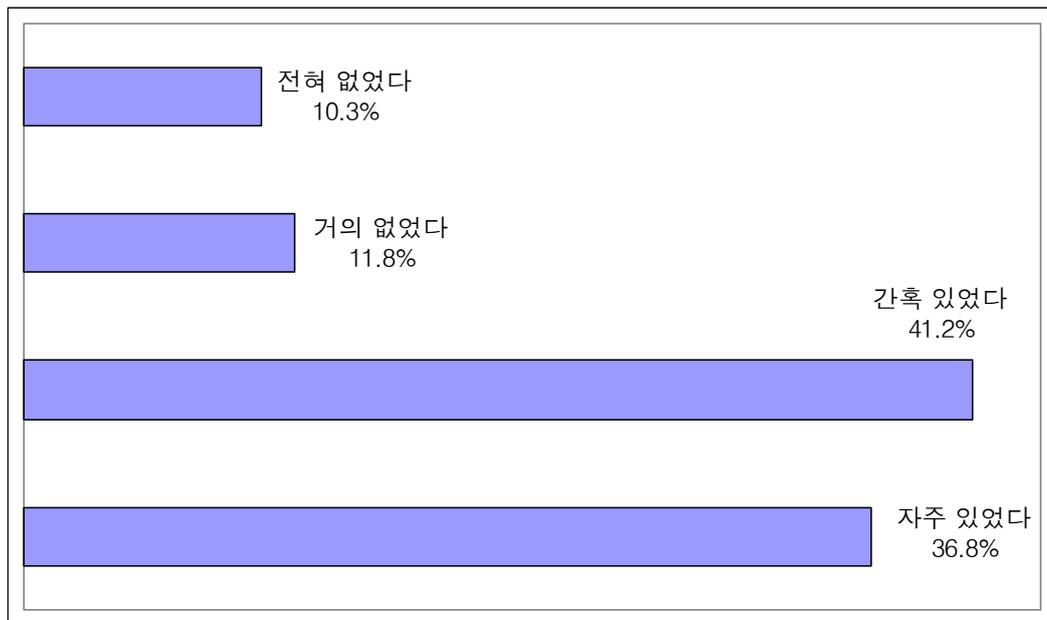
4) 권대현 씨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my.dreamwiz.com/dhsaran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의 가장 가혹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면, 현재 ‘각’을 잡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굳이 정좌라고 부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좌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하고, 근무 헌병들이 수용자들에게 ‘각’을 잡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다만 수용자들이 부동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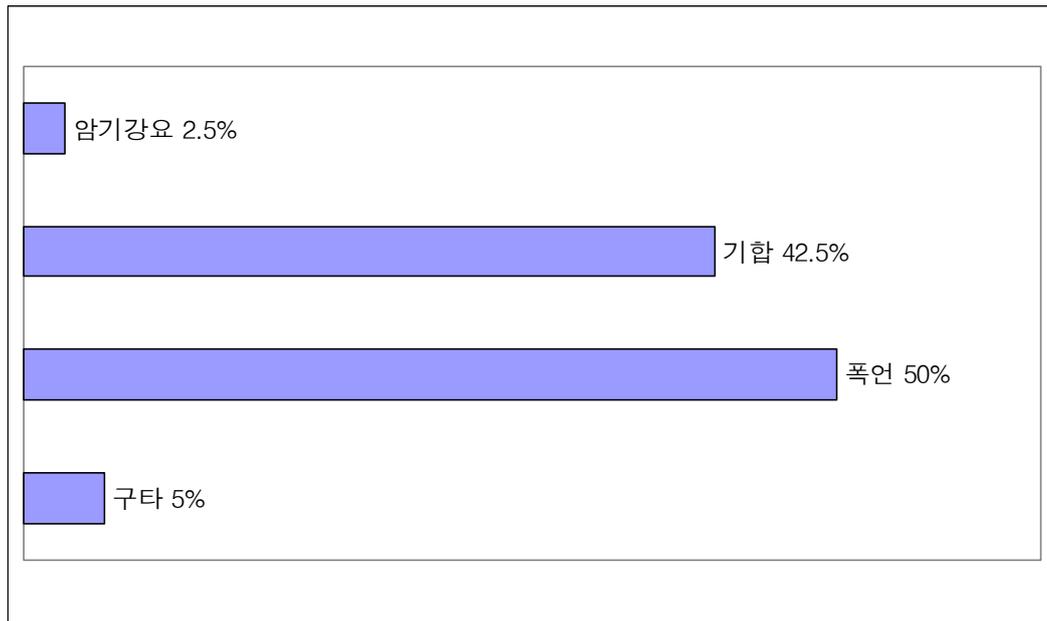
9) 구타 및 가혹행위

미결 구금시설 내에서의 헌병이나 수용자 상호간의 가혹행위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결 수용시설 내에서 구타나 욕설, 기합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68명 중 ‘자주 있었다’ 25명(36.8%), ‘간혹 있었다’ 28명(41.2%), ‘거의 없었다’ 8명(11.8%), ‘전혀 없었다’ 7명(10.3%)으로 나타나 가혹행위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혹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응답자 40명 중에서 구타는 2명(5%) 뿐이었고, 기합이 17명(42.5%), 폭언 20명(50%), 암기강요 1명(2.5%)로 나타나 폭언과 기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III-19>미결수용시설 내 가혹행위 경험여부 (전체응답자:68명)



<그림 III-20> 가혹행위의 종류 (전체응답자:40명)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와 방식에 대해 말해달라'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 설문자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아무 이유 없이, 별일 아닌 것 / 근무자의 기분이 안좋을 때 / 수용자가 근무자에게 따지고 들었을 때 / 정좌 시간 중에 움직였을 때 또는 눈알을 굴렸다고 / 수용자간에 대화했다고 / 목소리가 작다고 / 태도불량, 군기빠짐 / 웃었다는 이유로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 불침번이 풀었다고 / 군대식 언어사용미숙 / 밥을 남겨서 등등으로 답변한 응답자의 말처럼 이유는 만들면 얼마든지 나오는 것이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근무헌병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 정좌를 시키고, 조금만 움직이거나 하면 일차려를 주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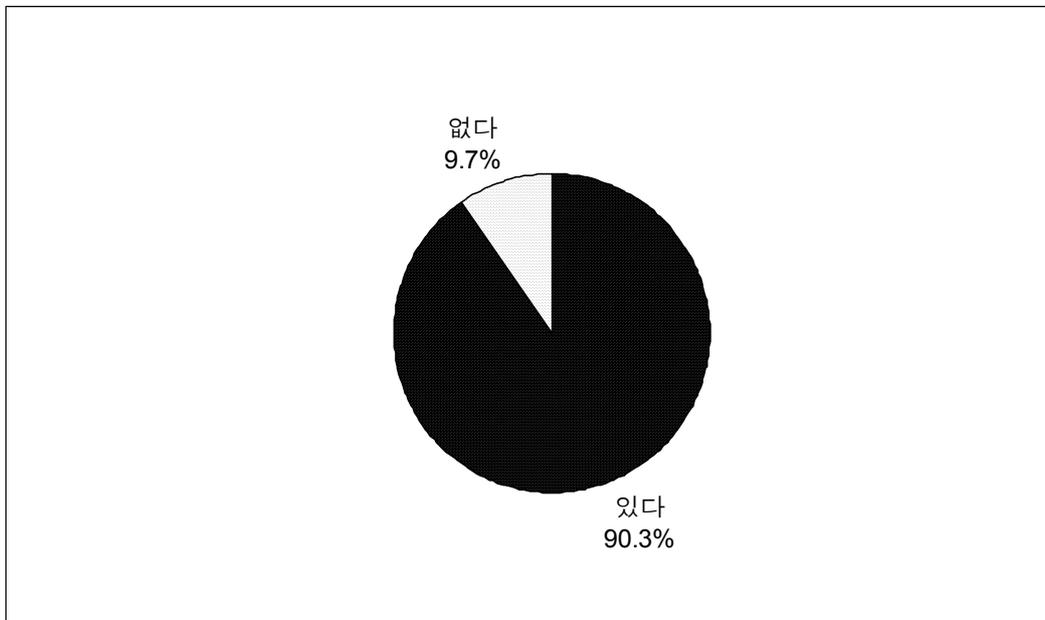
가혹행위의 종류는 욕설, 협박, 폭언 등 언어폭력에서부터 각종 일차려 (과도한 스트레칭 체조나 PT체조, 팔굽혀펴기, 머리박기, 쪼그려 뛰기,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기마자세로 서 있기, 철창타기, 벽에 물구나무 서 있기 등등 다양함)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철창 너머로 떡살을 잡히거나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창된 연도가 늦을수록 가혹행위나 구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들은 폭언은 많이 들었지만 “한참 가혹 행위로 영창에 들어오는 수련생들이 있어서 직접 맞는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규율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가 간부에 의해 정식으로 경고,

도서열람 제한 등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헌병에 의해 그 자리에서 얼차레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1999년에 논산훈련소 영창을 거쳐간 한 응답자는 “화장실서 폭행을 당해, 포승줄로 엮드린 상태에서 두 손, 두발을 위로 올린 다음 뽕뽕 묶고 몇 시간 켜 놔둬”이라고 답했다. 처벌을 내린 사람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응답자 20명 중 근무헌병 12명, 근무헌병과 간부 3명, 간부 5명이라고 각각 답해 정식으로 간부들을 거치는 것보다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직접 얼차려 등을 가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기분에 의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62명 중에서 33명이 자주 있었다, 20명이 간혹 있었다고 답한 반면 거의 없었다는 6명, 전혀 없었다는 3명으로 나타나 근무헌병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기분에 의한 불합리한 처벌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개인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62명 중 56명이 ‘있다’고 답해 90.3%가 단체기합을 받았으며, 단체기합의 범위는 응답자 54명 중 해당 감방이 26명(48.1%), 수용시설 전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명(51.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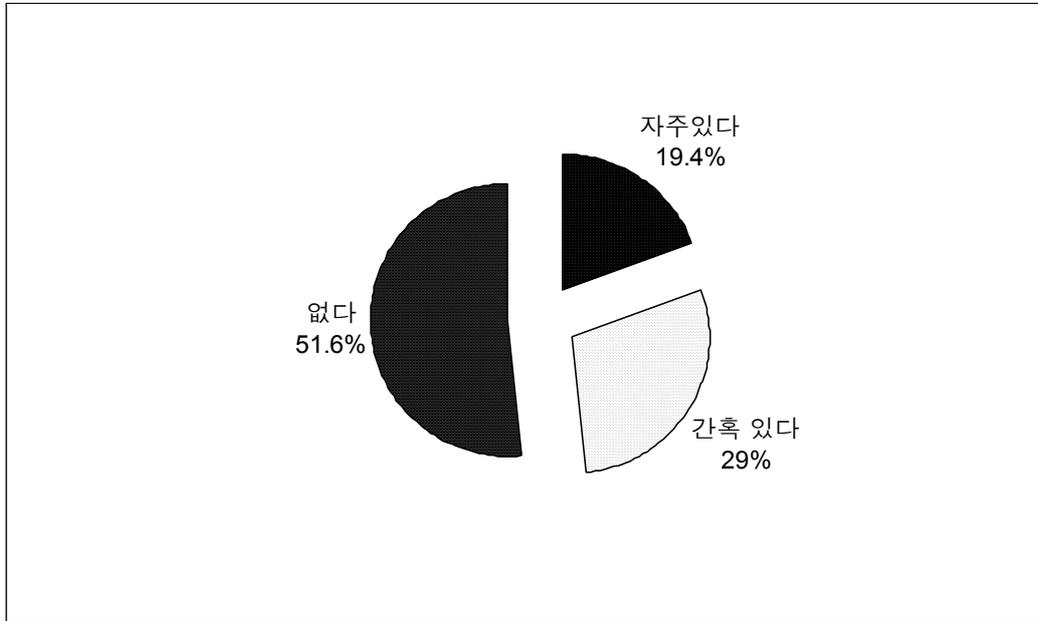
<그림 III-21> 개인의 규율 위반에 의한 집단적 처벌 경험 (전체응답자:6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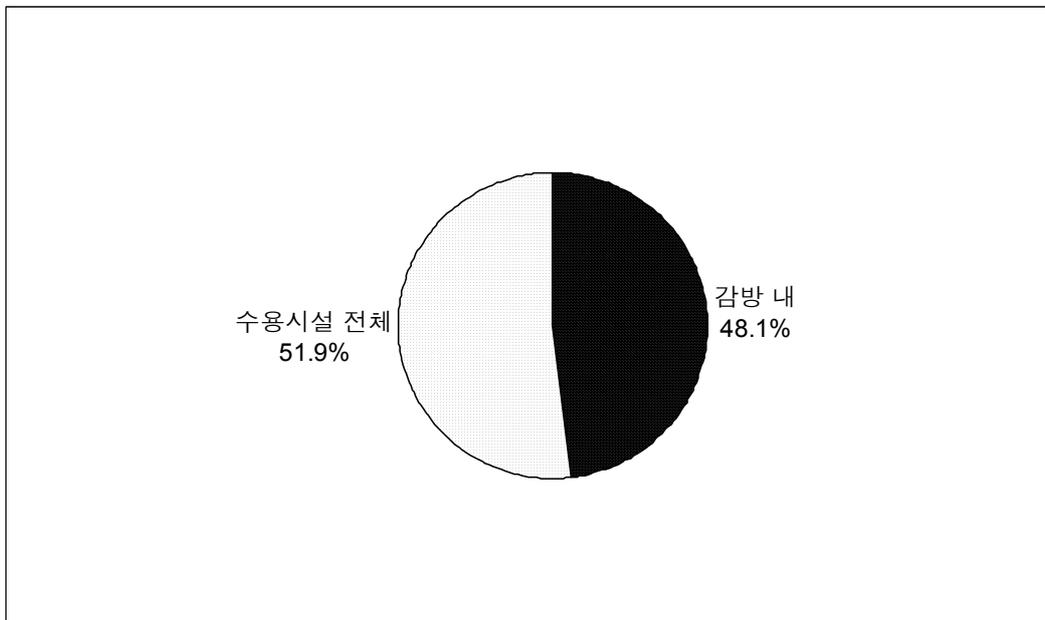
‘수용자 간에 군기잡기를 포함한 가혹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2명

중 ‘자주 있다’ (19.4%), ‘간혹 있다’ 18명 (29%), ‘없다’ 32명(51.6%)으로 답해 절반 가량이 감방 내에서 수용자 간의 공기잡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림 III-22>수용자간의 가혹행위 여부 (전체응답자:62명)



<그림 III-23>단체 기합의 처벌대상 범위 (전체응답자:54명)



한편 2002년에는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헌병대 영창에서 근무헌병이 징계처분

으로 입찰 중인 사병이 반성문에 근무헌병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간 열상으로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해당 근무 헌병 2명중 1명은 상해죄로 구속기소 되어 벌금 300만원, 다른 1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어 벌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본 조사팀은 해병 1사단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해병 2사단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영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헌병대장실, 상황실, 작전과장실 등에서 근무헌병들의 근무상황을 자세히 감시할 수 있었고, 헌병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도 비교적 잘 시행되어 근무헌병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표Ⅲ-14> 2002년 10월 현재 근무 헌병 징계처분

년도	소속	계급 성명	죄명	사건개요	처리결과
'02년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	상병 정O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 행	구치소 교도헌병으로, 징계처분으로 입찰중 인 피해자 일병 박OO이 헌병에게 반성문을 제출시 비판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 로 주먹으로 머리 5~6회 폭행, 경봉으로 어깨부위를 5~6회 찌르고 우측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 5회 폭행	구속기소/벌 금 120만원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	병장 노OO	상해	구치소 교도헌병으로, 징계처분으로 입찰중 인 피해자 일병 박OO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않아 기합을 주는데 기합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6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군홧발로 피해자 전신을 6회 폭행, 간열상 등 치료기간 2개월	구속기소/ 벌금 300만 원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국방부, 2002, 1360쪽

10) 기타

가.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은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1조와 그 시행령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제7조 ‘진정함의 설치, 운용’, 제9조 ‘진

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로 보장하고 있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모든 영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에 따라 진정방법의 고지와 더불어 진정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설치의 장소가 각 영창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사방 내에 진정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혹은 식당 등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방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결수 수용현황 실태 파악

군행형법 시행법 제14장 제117조 '미결수용실 등의 특례' 1항에서 "참모총장은 교도소등의 수용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미결수용실 또는 헌병대영창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결수의 미결수용실 수용시 분리 수용하도록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미결수용시설인 영창에 수감된 기결수는 없으며,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응답자가 대부분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수감기간동안 기결수를 본 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연구조사 결과 육군교도소에 비해 미결수용시설인 영창의 시설이나 처우가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에 기결수를 영창에 수감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수감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감은 수용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다지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상 편의'라는 효과 뿐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수감 환경과 근무 헌병 등은 수감자를 배려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여호와의 증인 관련

설문조사의 주 대상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종교 모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2002년 10월 17일 양지운씨가 법무부장관을 생대로 낸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 법무부에서 "집중거부, 명령불복종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는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적

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었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종교집회의 허용을 권고했다. 이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이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군대내 문제에서는 한발 벗어나기는 했지만, 구금시설의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외의 종교집회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소결

본 연구팀이 방문 조사한 영창 3곳의 상황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건 아니건 영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할 만큼 기대 이상이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주된 비교 분석 자료인 설문조사가 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영창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2년 12월 현재영창의 실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구금시설 기준과 미결수의 처우 등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군대내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이었다. 결론적으로 영창은 시설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는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수용자 1인당 주어진 사방 면적, 화장실의 수와 위생상태, 난방시설 등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금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채광과 환기 시설은 다소 보완이 요구되며, 세면과 목욕시설(샤워기 포함)은 수용자의 신체 위생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특히, 부족한 세면/목욕시설은 세탁 공간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세면과 목욕, 세탁 등 각각의 시간이 부족해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는 의류, 모포 등을 제대로 세탁할 수 없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하며, 피부병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류와 모포 등의 위생문제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사항인데, 세탁 후에도 제대로 말리지 못하여 더욱 위생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모포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르지 않은 모포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포와 의류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충분히 말릴 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거나, 건조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

구금시설에 비해 시설의 운용이나 미결수용자들의 처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운동, 면회, 서신수발 등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결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사용시간, 사용횟수, 낮은 칸막이 등으로 인한 수치감 등 수용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리적 욕구의 해결은 인간 존엄과 관련된 문제로, 수용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체벌의 수단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정좌 강요, 반성문 형식의 수양록 작성 등은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영창 내 미결수용자 처우의 열악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면회, 참관금지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행형법상 수형자 혹은 수용자라는 용어로만 구별되어 처리되며, 실제로는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군행형법에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마련하거나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고, 집행의 원칙과 개별적인 처우를 구체적으로 포함한 독립된 군미결구금행형법의 마련하는 것 등은 현재 군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IV. 육군교도소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1985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으로 이전한 육군교도소에는 육군을 비롯하여 공군, 해군, 해병대 소속의 수용자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육군교도소는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남한산성’이라 불리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군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은 1990년대에 군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 밖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3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1990년 12월 14일 농성사건, 1991년 1월 14일 수련생 300여명의 폭동 등에 이어, 1993년 10월 30일 기결수 84명이 교도소 당국의 구타와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특히 1991년의 사건은 특수동에 수감되어 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 10여명을 제외하고는 일반사동 수감자 중 여호와의 증인 30여명 이외에 전원이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알려져 있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 직계가족이 수용자 시설 볼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 가족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돕는다는지, 복역 중인 군인이 부모들과 함께 작은 운동회를 하고, 부모 초청 강연, 독후감, 텔레비전 시청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육군교도소 측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육군교도소의 수용대상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형 확정자 및 미결수들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병,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및 민간인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1. 육군교도소 현황

2001년 8월 이후에는 집총을 거부하여 항명죄로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여호와의 증인이 민간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매년 일일 평균 수용인원이 약 300~500명이던 것이 현저히 줄어(<표 IV-1>, <표IV-2> 참고), 2002년 9월 25일 방문 시에는

11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군무이탈 73명 , 폭행 6명, 강도 4명, 절도 5명, 살인 4명, 성범죄 9명, 대상관 1명, 기타 15명).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되었던 당시에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목욕탕 사용, 화장실 사용 등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2002년 9월 25일 방문 당시에는 과밀수용으로 겪는 불편은 없어 보였다.

<표Ⅳ-1> 육군교도소의 연도별 수용 현황

구분	연 구		
	2000년	2001년	2002년(8.31 현재)
년 입소인원	1291명	835명	237명
일일 평균수용	315명	271명	130명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70쪽

<표Ⅳ-2> 육군교도소의 죄과별 수용 현황

죄명 년도	계	항명	군탈	폭처위	성폭위	강도	대상관	국보위	살인	기타
계	2363명	1129	611	180	78	36	18	2	7	302
(%)		(48)	(26)	(8)	(3)	(1.5)	(0.7)	(0.08)	(0.2)	(18)
'02. 8월	237명	5	129	16	13	1		1	1	71
(%)		(2)	(54)	(7)	(5)	(0.4)		(0.4)	(0.4)	(30)
'01	835명	409	216	62	23	6	6	1	1	111
(%)		(49)	(26)	(7)	(3)	(0.7)	(0.7)	(0.1)	(0.1)	(13)
'00	1291명	715	266	102	42	29	12		5	120
(%)		(55)	(21)	(8)	(3)	(2)	(0.9)		(0.4)	(9)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70쪽

<표Ⅳ-3> 현 수용 인원의 죄명 및 형기별 현황(2002. 9. 10 현재)

구분	총인원	5년 미만	5년 ~10년	13년이상	무기
계	67	63	2	1	1
군 탈	42	42	·	·	·
폭 행	4	4	·	·	·
항 명	1	1	·	·	·
성 범 죄	4	3	1	·	·
살 인	2	·	·	1	1
강 도	4	4	·	·	·
절 도	3	3	·	·	·
기 타	7	6	1	·	·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2002, 1688쪽

<표Ⅳ-4> 현 수용인원 계급별 현황(2002. 9. 10 현재)

계	사병	부사관	위 관	영 관
67	59	2	4	2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8쪽

2. 수용시설

2002년 9월 25일 육군교도소 방문당시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육군교도소는 일반동, 미결수용동으로 나누어 총 977평 구조로 63개의 거실로 이루어져 최대 540명이 수용가능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2002. 9)에 따르면 전체 804평에 53개의 거실로 되어 있으며 수용정원이 338명(1동 297명, 2동 41명)인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육군교도소에서는 수련생 상호간의 병리적 악성감염의 예방과 수련생 처우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생을 분류처우하고 있다. 그 실시현황을 알아보면 교도 1중대에서는 1동과 2동에서 3년 이상의 장기수 및 독방수용을 요하는 수련생을(특히 간부, 재입소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징벌자, 전염성 치료자)수용하며 교도 2중대는 3년 미만의 미결수련생과 신입소 수련생을 교도 3중대에서는 1년 6월 미만의 기결수련생 및 만기출소자를 수용하고 있다⁵⁾.

<표Ⅳ-5> 육군 교도소의 거실별 현황

구분	계	1인실	4인실	7인실	16인실	비고
계	53(296.75평)	24(52.08평)	6(19.08평)	7(35.83평)	16(189.76평)	건평 : 804평
1동	35(240.48평)	14(27.58평)	1(3.18평)	4(19.96평)	16(189.76평)	건평 : 659평
2동	18(56.27평)	10(24.5평)	5(15.9평)	3(15.87평)	.	건평 : 145평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2쪽

5) 김정규, 「육군교도소 기능교육 실시현황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23쪽

1) 화장실

육군교도소의 화장실은 수용실의 거실 내부에 각각 한 개씩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 내부에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어있다. 설문조사결과 공용화장실은 비교적 쾌적한 것에 비해 거실 내부의 화장실은 실내에 있어 환기가 잘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이 많았다는 의견이다. 이로 인해 배수관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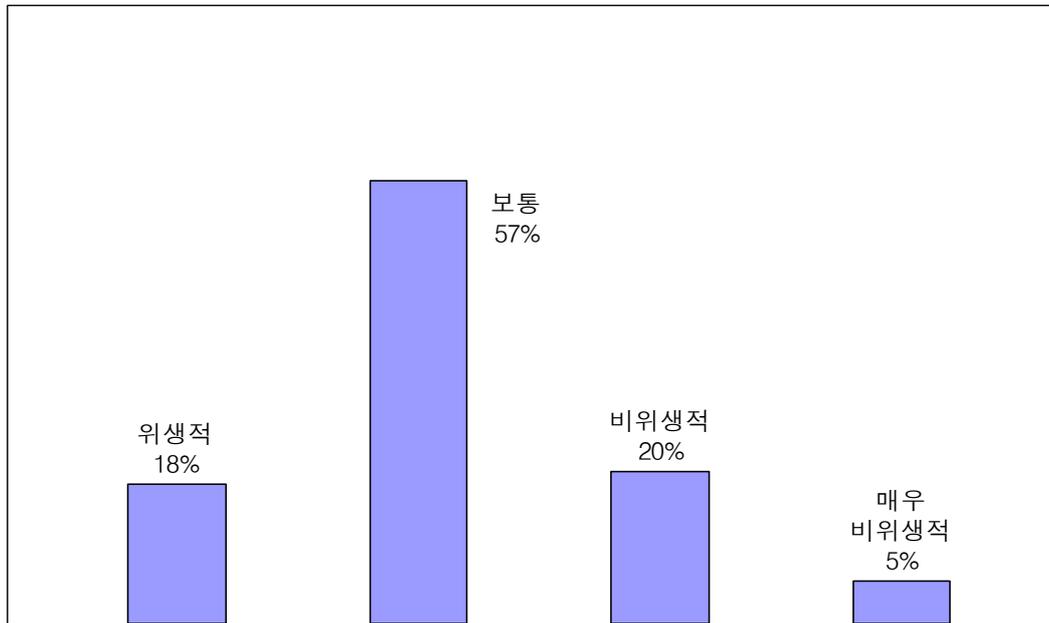
<표Ⅳ-6> 육군 교도소의 화장실 현황

구분		개소	면적	비고
화장실	공용	3		좌변기 12개(1동 2개소: 10개, 2동 1개소: 2개)
	거실	53		각 거실별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2쪽

화장실에 대한 위생 평가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그림 IV-1>), 화장실 사용이 개방되어 있다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림 IV-1> 화장실의 위생상태 (전체응답자:56명)



화장실 사용에 대한 수감자들의 설문조사에 따라 1)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 사용할 때 느끼는 수치감, 2) 근무자에게 보고한 후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겪는 불편함의 문제, 3) 위생 문제, 4) 배관의 잦은 고장 문제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장실 사용의 문제점은 수용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여 변비로 고생하는 일을 낳기도 하였다.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 사용할 때 느끼는 수치감 : 변기가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개방된 상태에서 일을 봐야하기 때문에 신경성 변비를 유발한다 / 원래 독방인데 2명을 수감하고 그 사람이 보는 가운데 볼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낀다

근무자에게 보고한 후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겪는 불편함 : 근무자에게 보고한 후 이용할 수 있었다 / 방 내부의 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려웠고 외부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지만 현병이 열어주어야 가능했다 / 문을 항상 잠궈 놓기 때문에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화장실의 위생 : 독방 실내에 있으니 환기가 잘 안 된다 / 매일 감방 내 화장실을 치약으로 청소하였기에, 그 곳에서 사과를 닦아먹을 정도였다 / 공용 화장실의 경우 매우 쾌적했다 / 환기통이 필요하다

배관의 잦은 고장 : 배관문제가 많았다 /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용변 때문에 간혹 물이 넘쳐서 불편한 적이 있었다 / 방안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배수 기능이 좋지 않아 소변만 급할 때 사용한다 / 화장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부분 고장났고, 물을 직접 떠서 좌변기의 용변을 처리했다 / 수압이 너무 약해서 물이 잘 안 내려갔으며 꼭 물을 한 대야 떠 와서 부어야만 했다

2) 냉난방 시설 현황

가. 육군교도소의 냉, 난방 시설

ㄱ. 난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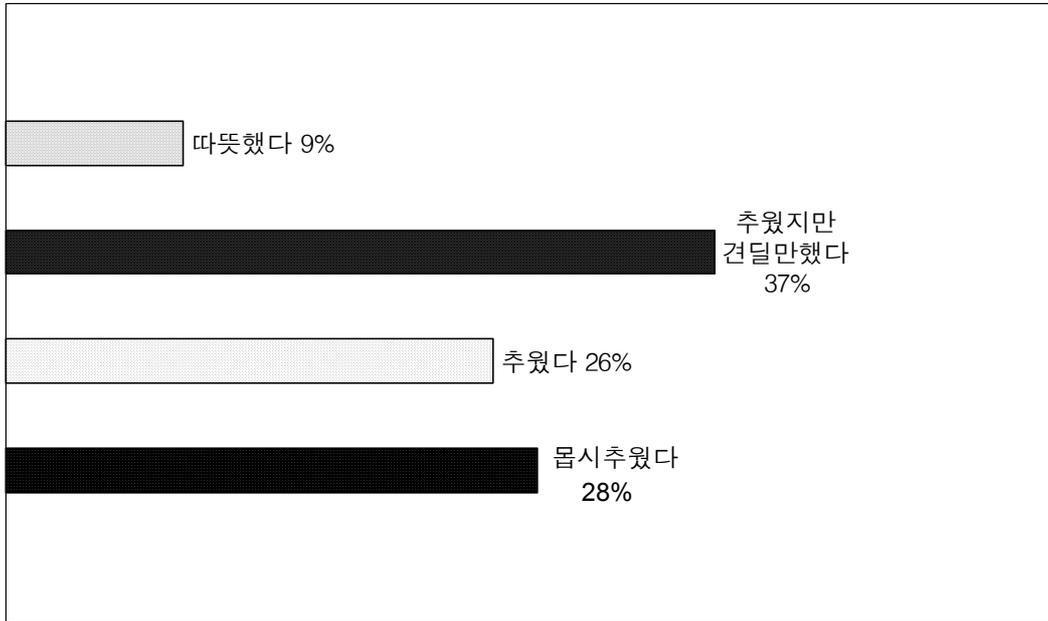
난방은 중앙난방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었고(<표IV-7>), 이는 민간수용시설과 비교하여도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일일 평균 가동시간이 6, 8시간 정도여서 수용자들의 대부분은 설문조사에서 몹시 추웠다 28%, 추웠다 26%, 추웠지만 견딜만했다 37%로 대답하는 등 전체 인원 중 91%가 겨울철 온도를 춥게 느끼고 있었다. 내무반에 준하여 난방 가동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표IV-7> 육군교도소의 난방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난방 방식	중앙 난방	2500kg/h (2.5톤 스팀보일러)
난방 가동 시간	○준한기 : 6시간(11.1~12.31, 3.1 ~ 3.31) ○혹한기 8시간(1.1 ~ 2.28)	기상여건 고려 가동시간 조정
난방시 평균실내온도	18℃ 이상	※ 방열기 : 79개 설치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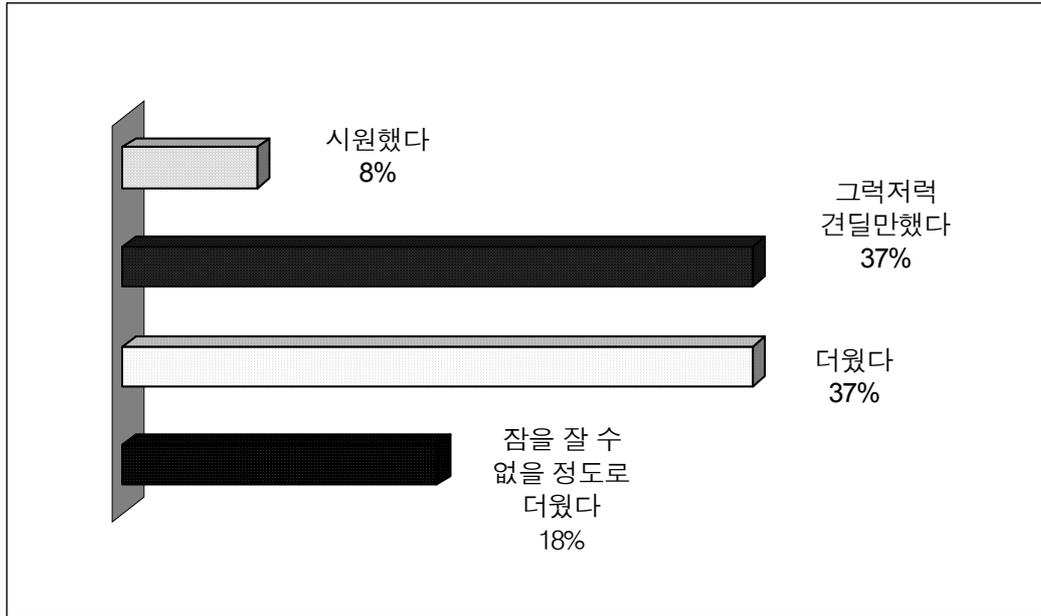
<그림 IV-2> 겨울철 감방 온도



ㄴ. 냉방시설

냉방 시설은 대체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없다 92%, 있다 8%). 수감자들의 대부분이 여름철을 덥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림 IV-3> 육군교도소의 여름철 감방 온도 (전체응답자:48명)



나. 민간교도소의 상황과 비교

ㄱ. 난방시설

민간교도소는 각 교도소에 따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 통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성동구치소의 경우 각 사방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온돌을 가동하고 있는데 반해,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사동 1개층에 연탄 난로 1개만을 사용하고 있었다.⁶⁾ 이것과 비교하여 스팀보일러를 틀고 있는 육군교도소의 난방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ㄴ. 냉방시설

민간교도소의 경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름철에는 각 사방에 선풍기 1대씩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이에 비해 육군교도소의 냉방 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다.

6)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급시설실태조사보고서」, 2002, 17쪽

7)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급시설실태조사보고서」, 2002, 17쪽

3. 신체위생

1) 목욕/샤워

목욕탕은 1(25평), 2(10평) 동에 각각 한 개씩 샤워장은 1동에만 2개(13.6평)가 마련되어있다(<표 IV-8>).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항명죄로 수감되어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을 넘었을 당시에는 목욕탕과 샤워장의 수가 적고 좁아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일 수용인원이 100여명으로 감소한 이후에는 목욕탕, 샤워시설 사용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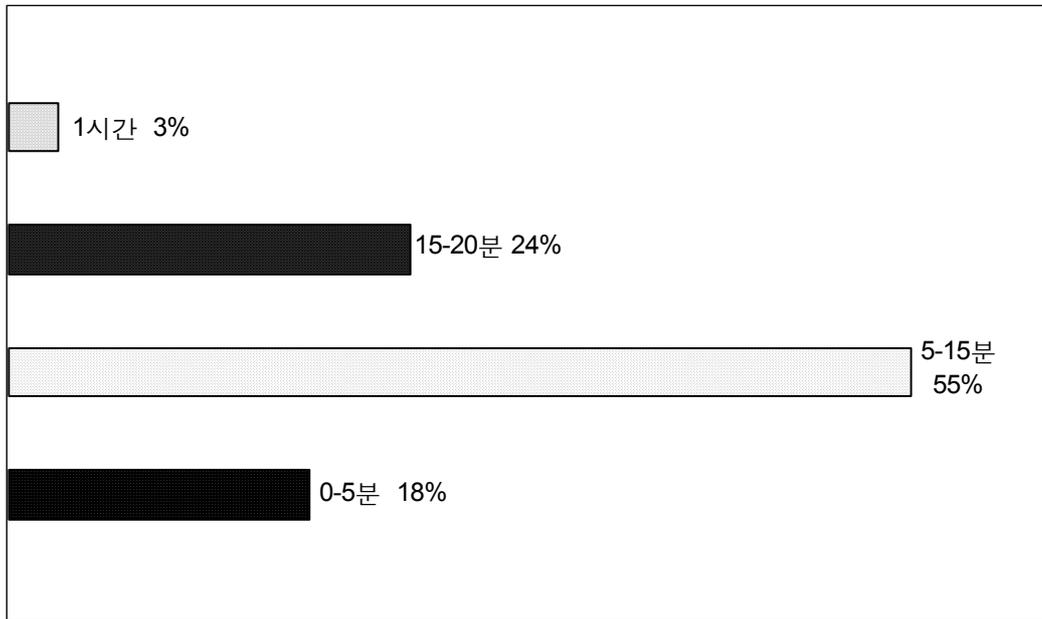
<표IV-8> 육군 교도소의 목욕/샤워 시설 현황

구분	개소	면적	비고
세면기	37		각 거실별(16인실 제외)
시설	샤워장	2	13.6평
	목욕탕	2	35평
			1동 1개소(25평), 2동 1개소(1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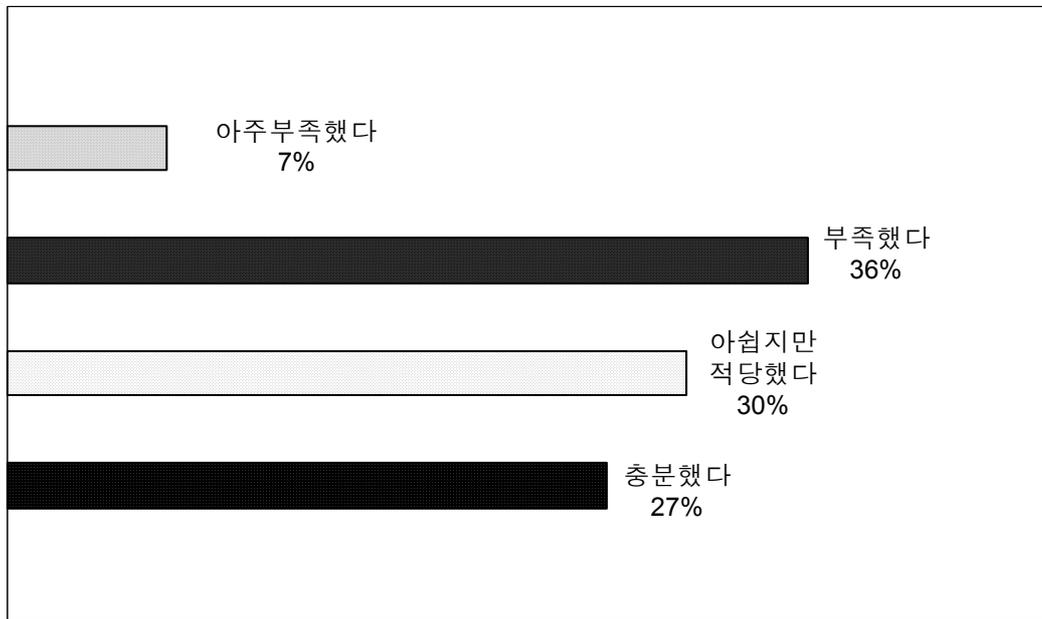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2쪽

군행형법시행령 6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름철에는 5일 1회 이상, 겨울철에는 7일 1회 이상의 목욕 횟수의 기준을 준수하여 수감자들에게 목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번 샤워를 할 수 있었다는 대답이 85%, 일주일에 한번 할 수 있었다는 대답이 15%였고, 겨울철에는 하루에 한번 10%, 7일에 한번 84%였으며 15일에 한 번, 30일에 한 번 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물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IV-4, IV-5>). 이 또한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겪는 문제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림 IV-4> 육군교도소의 샤워 가능 시간



<그림 IV-5> 육군교도소 목욕시 물이용에 대한 의견 (전체 응답자:56명)



목욕, 샤워 이외의 세면은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IV-8 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인 실의 경우에는 거실 내부에 세면대가 없어서, 일상적으로 청결하게 지내기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안에 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방

안의 변기를 깨끗이 씻은 후 거기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 내용이 있었으며, 위생구 지급기준상 면도날을 월간 1인에 2개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면도를 할 때에는 모든 수용자가 한 개의 면도기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 비위생적이었다는 조사도 있었다

<표Ⅳ-9> 육군교도소의 위생구 지급시기 및 기준

품 목	지급월 및 기준
세면비누 세탁비누	- 매월 1일 일보기준, 1인 1개 지급
휴 지	- 매월 1일 일보기준 지급 (1인 1개) - 6, 12월 1개 추가 지급
치 약	- 1, 3, 5, 7, 8, 9, 11월에 1인 1개 지급
칫 솔	- 3, 6, 9, 12월에 1인 1개 지급
면도날	- 월간 1인 2개

기타의견 : 특별한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샤워가 허가되었다 / 목욕탕이 좁아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2) 세탁

가. 육군교도소의 세탁 현황

세탁은 따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된 샤워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욕 시간도 짧게 주어지는 가운데 그 시간 안에 세탁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답변하고 있다.

나. 민간교도소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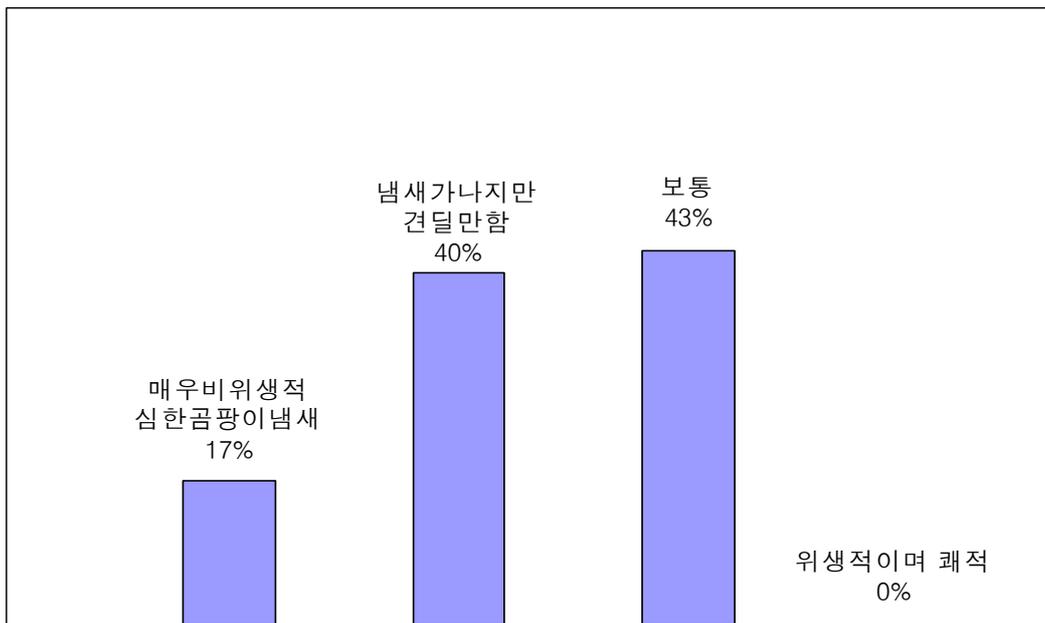
민간교도소의 경우 세탁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성동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개인별 소지 침구류 등은 세탁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 세탁의 경우도 각 사방 내 세면실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세탁

이 가능하고, 세탁물 건조의 경우도 각 사방 내 설치된 시설 혹은 외부 빨래 건조대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 조사자들에게도 세탁 등의 경우는 자유롭게 하였으며, 청결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졌다⁸⁾.

4. 의류 및 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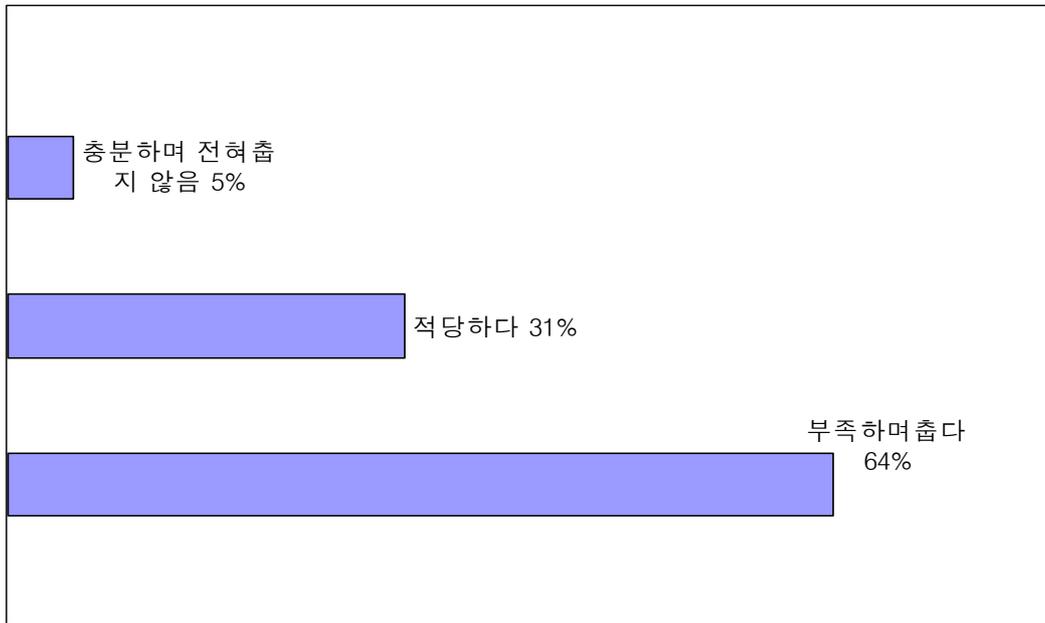
수용자들은 관급 의류와 침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생상태의 불량을 꼽았다(<그림 IV-6>).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냄새가 나고 낡은 의류와 침구를 사용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침구의 경우 모포는 1인당 2,3개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매트리스는 양호할 경우 1인 1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3인에 2개의 매트리스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겨울철의 경우 지급되는 침구가 추위를 견디기에는 얇았으며(<그림 IV-7>) 솜이불이 거의 지급이 되지 않았다. 또한 보급된 의류가 얇아서(<그림 IV-8>)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는 조사 결과이다.

<그림 IV-6> 지급되는 겨울용 침구의 위생상태 (전체 응답자: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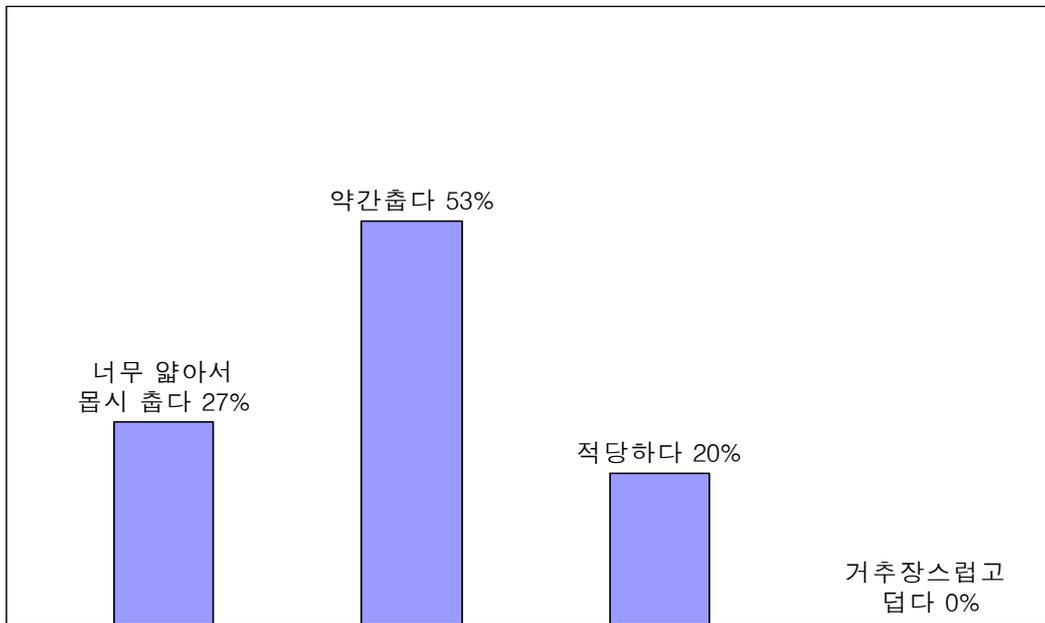


8)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급시설실태조사보고서」, 2002, 24쪽

<그림 IV-7> 겨울철 침구의 방한 여부 (전체 응답자:39명)



<그림 IV-8> 관지급 의류의 방한 여부 (전체 응답자: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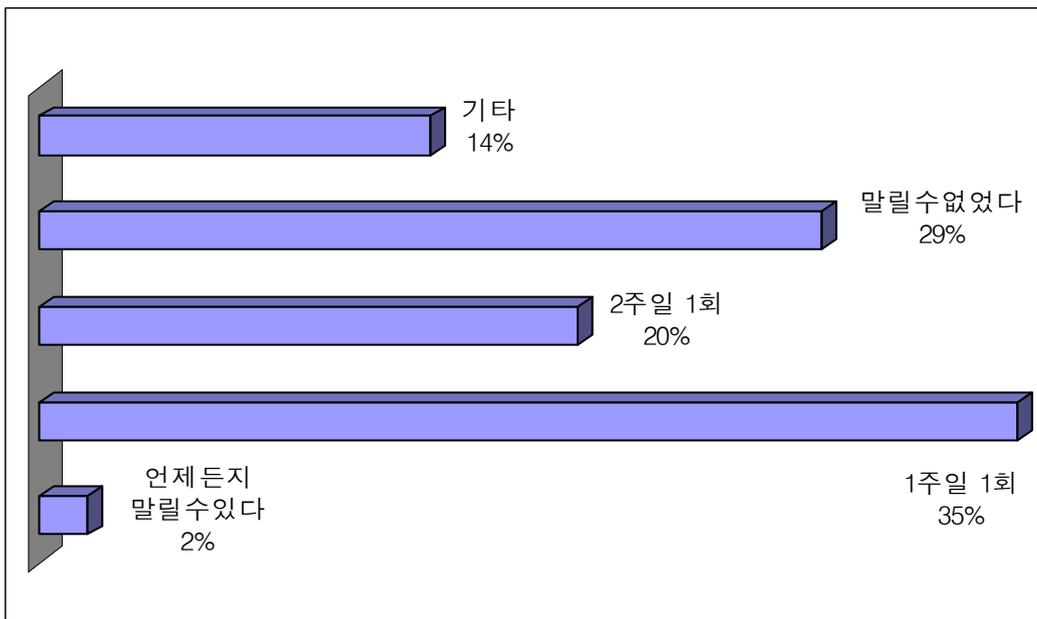
위생상의 문제 : 정말 더러움, 비위생적임, 세탁은 하나 모르겠음 /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부족하여 자면서 추위를 많이 느낀다 / 히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매트리스 등이 젖어 있었음/ 침구류의 세탁, 건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처음으로 입소하여 지급 받을 경우에는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경우가 많다.

보급량 및 보급 품질의 문제 : 양말을 신고 자지 못하게 했지만 추워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 인원이 많았을 때 겨울인데도 여름 관복으로 생활했다 / 폐기 처분해야 할 침구류를 지급 받은 경우가 많다 (냄새 많이 남) / 짧은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대충 입혔다 / 옷이 많이 낡았다 / 숨이 불이 필요하고 모포 수량이 부족하다.

침구를 적당한 자주 말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7% 이상이 주기적으로 침구를 말릴 수 있었다고 대답한 반면에 33%는 전혀 말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말릴 수는 없었으나 먼지를 털어 낼 수만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림 IV-9> 침구 건조 여부 (전체 응답자:56명)



가. 군행형법의 시행령 적용 여부

군행형법 시행령 제53조의 의류와 이부자리의 급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이부자리는 계절과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행형법 제55조 4항에 의하면 “타인이 사용한 의류·이부자리·식기 및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을 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보급 당시의 의류와 침구가 비위생적이었다고 대답하였으며, 타인이 사용한 보급품은 소독을 한 후에 급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입소 역시도 비위생적인 물품을 보급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 민간교도소와의 비교

민간교도소의 경우 침구류는 비교적 위생적인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관용 지급 담요 등의 세탁은 3개월에 1회씩 세탁과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용자들도 쾌적하게 느끼고 있었다⁹⁾.

5. 일과

육군교도소의 일과는 영창 생활에 비해 육군교도소가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일과표(표 IV-10)에 따르면 수용자의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하여 17시에 일과 종료 후 22시에 취침한다. 일과는 신입소, 미결수, 기결수, 만기 출소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신입소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주일 간 받게 되고, 미결수는 재복무 교육을, 기결수는 기술, 기능 교육을 받게 되며, 만기 출소자의 경우에는 7일간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표 IV-13). 하루 일과 종료 후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동안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고 목욕, 이발, 도서실 이용, 독서, 편지쓰기,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과시간에 대해 수용자들은 작업량이 많아 힘이 들었다는 의

9)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 2002, 24쪽.

견이 있었으며 여호와의 증인인 경우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업무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쉬는 날에도 규정상에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잔업을 시켰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서 시간과 운동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10> 육군교도소의 일과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6:00-07:00	기 상 / 점 호						07:00 기상
07:00-08:00	세 면 / 조 식						
08:00-09:00	신 입 소 / 재 복 무 교 육 ※ 잔류 수련생(신청작업, 독서, 이발 등)					내무검사 지휘관 정신교육	불 교
09:00-10:00							종교행사
10:00-11:00						TV 시청	
11:00-12:00						행 형 규정교육	장기·바둑
12:00-13:00	중 식 / 휴 식						
13:00-14:00	신 입 소 / 재 복 무 교 육 ※ 잔류 수련생(신청작업, 독서, 이발 등)					천 주 교 종교행사	기 독 교
14:00-15:00							종교행사
15:00-16:00						TV 시청	
16:00-17:00						장기·바둑	장기·바둑
17:00-18:00	석 식 / 휴 식						
18:00-20:00	개 인 정 비 / 청 소 / 서 신 작 성						
20:00-21:00	T V 시 청 (토 : 영 화 시 청)						
21:00-22:00	일 석 점 호						
22:00-06:00	취 침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9쪽

1) 운동 및 오락 시간

가.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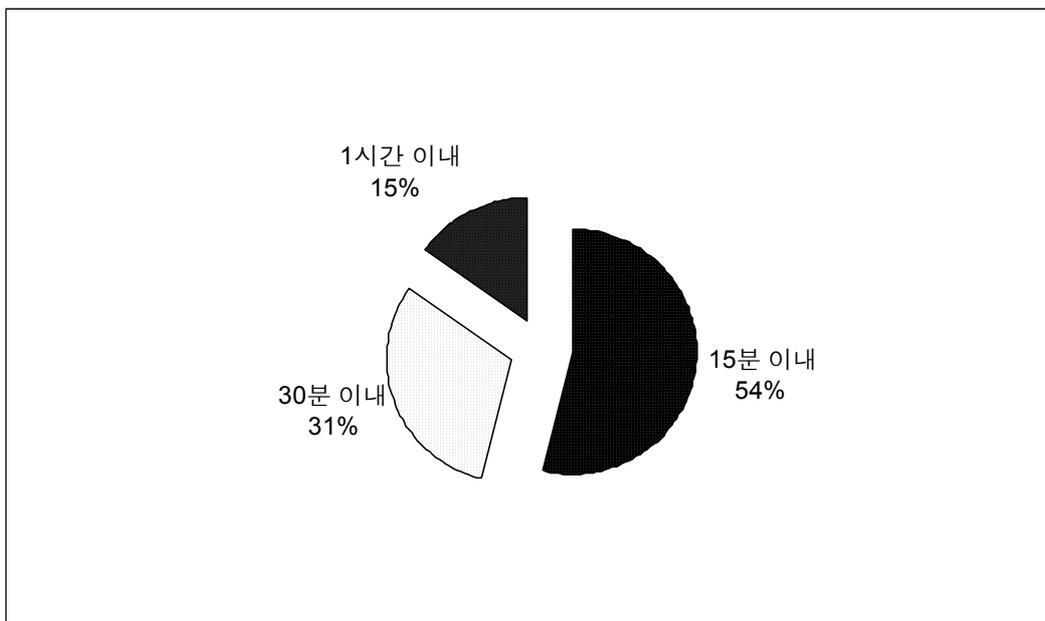
군행형법 시행령 6장 제65조 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하루 1시간의 실외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기준으로도 수감자의 건강 유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충족하기 위해 적어도 1시간의 실외 운동시간이 보장받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최저기준규칙 제21조).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인 운동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동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에 기합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 수감자의 경우에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운동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15분(54%), 30분(31%)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만 운동을 해야했다. 조항 중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항목을 무분별하게 수감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은 독방수용자에 한하여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독방수용자의 경우에도 매일 2시간의 운동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2002년 9월 25일 본 연구팀이 방문하였을 당시 수용자들이 전투 체육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 전투 체육시간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림 IV-10> 육군교도소의 하루 운동 시간



운동시간의 부족/없었다 : 운동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날이 있다고 해도 거의 잘못 하였다 / 형식상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이다 / 영창과 같이 육군교도소도 운동을 제한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 만일 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 운동시간이 없었다 / 운동장은 있었지만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을 할 기회가 없었다 / 정해진 운동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 매일 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은 있어야 한다. 특히 독방은 오전 오후 1시간씩은 있어야 한다. 운동에는 일광욕도 포함하여야한다

작업을 이유로 운동 제한 받음 : 평일에 작업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운동시간이 있었음 / 작업 때문에 별로 운동을 한 기억이 없다.

운동시간에 기합을 받음 : 운동시간을 핑계로 대부분 기합을 받았다 / 단체 구보나 기합이 운동시간에 주로 있었다

나. 오락

주어진 시간에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지는 못하였다. 명절 때 수용자합동체육대회를 열거나 군인의 날 위문공연을 하는 등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오락거리를 즐길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장기와 바둑을 둘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고 있었다.

2) 도서, 신문 열독

가. 도서

육군교도소에는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 구비되어있다. 도서실은 정훈실장 책임통제하에 정훈병, 사서(모범수련생)가 운영하며 대출, 도서정리, 주월간 대출현황 분석 및 구독 희망 도서 파악 업무를 한다. 육군교도소 내 도서전산화 프로그램운용으로 정리, 현황분석 업무를 전산화하여 파악하고 있다. 연간 예산 140만원으로 신간도서, 희망도서(대출실적) 고려 우선 구입을 원칙으로 분기별 연 4회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종대별로 지정된 시간을 활용하여 1회 1권을 7일간 빌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표IV-11> 보유도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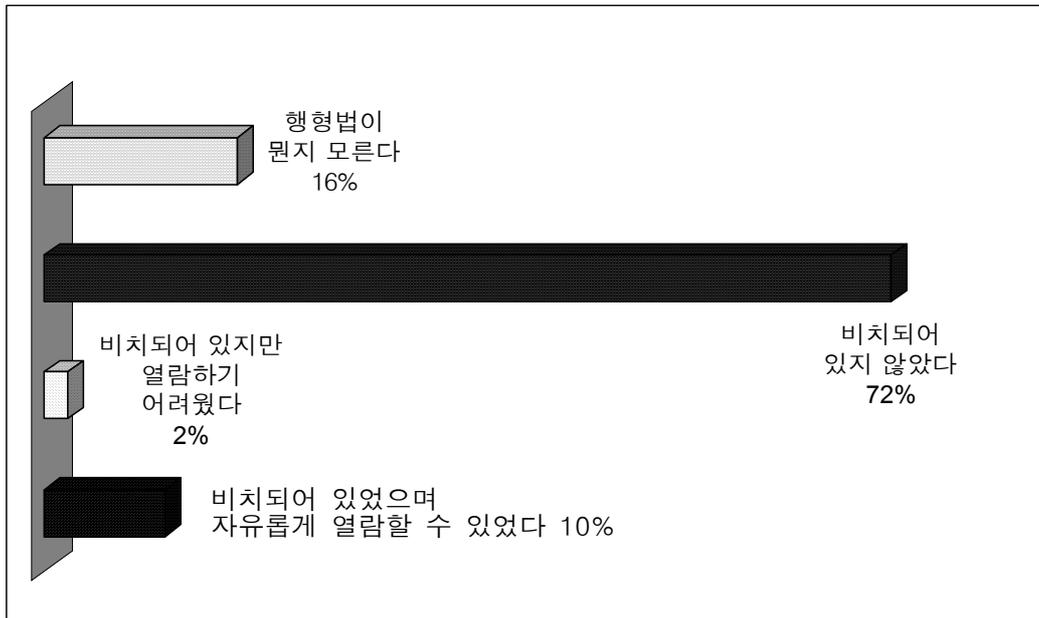
구분 계	대하 소설	한국 소설	외국 소설	인생론	문학	정치,경제 법률	여행 사전	교육 역사	종교	군사 정훈
4730	288	394	445	816	522	326	93	702	736	408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565쪽

그러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만이 도서실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는 도서실이 없다(37%), 모른다(25%), 이야기는 들었다(18%)로 대답하여, 80%가 도서실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서 이용에 있어서도 55%가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조사되어,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정기적으로 직접 열람하거나 빌려 볼 수 있다 14%, 도서목록을 보고 정기적으로 책을 신청하면 가져다준다 11%, 교무과에서 정기적으로 갖다 주면 그 중에서 골라본다 3%, 기타 17%).

2002년 9월 25일 육군교도소 방문 당시 도서실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 목록 중, 수용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군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수감자들이 원할 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군행형법 관련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IV-11> 군행형법, 시행령 관련 도서 비치 상태 (전체응답자:49명)



군행형법 30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당한 책’에 대한 규정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근무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는 ‘과수대’, ‘깨어라’등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간행하는 종교서적 반입이 금지되어 개인의 종교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군행형법 시행령 제7장 제72조에 의하면 “소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열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당해 수형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지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문

2002년 9월 25일 방문당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국방일보와 일반신문을 구독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문지 응답 분석 결과 신문 구독은 국방일보 이외에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았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통해 바깥소식을 접하고 싶어하는 수감자들이 많은 불만을 느

끼고 있었다. 민간교도소의 경우 주간지, 월간지까지 모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에 비교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신문 구독, 뉴스 청취 불가 : 신문과 뉴스를 전혀 볼 수 없었다 / 신문구독이나 라디오 방송이 들리면 더 좋을 것 같다 / 신문구독은 할 수 없었고 라디오 방송 또한 들을 수 없었다 / 국방일보만 일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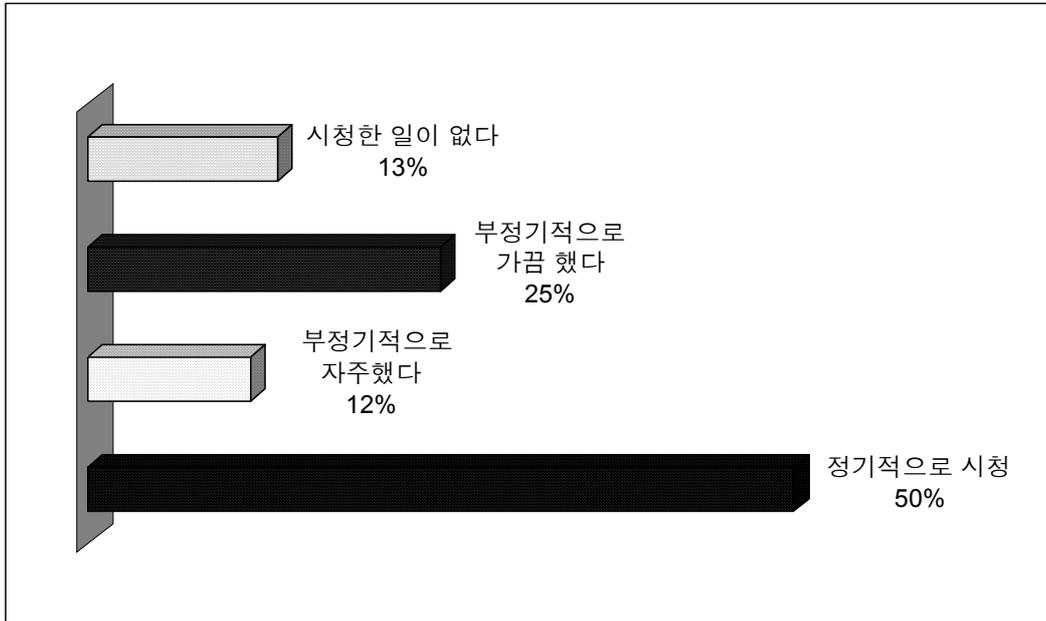
3)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 녹화된 프로그램을 틀어주었으며 수용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전혀 없었다. 일과표 상으로는 매일 1시간씩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TV시청이 가능했다고 대답한 수 50% 였고(그림 IV-13 참고), 이 중에서 약 3분의 1만이 매일 1-2시간씩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가능하였다는 대답과 주 1회 정해진 요일에만 시청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가. 군행형법 조항

군행형법시행령 7장 제7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② 소장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처럼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텔레비전 시청을 기본으로 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장의 임의적 재량에 의해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12> TV시청 경험 (전체 응답자:52명)



6. 기술교육

1991년 8월 13일자 한겨레신문의 육군교도소에 대한 특집기사에서는 육군교도소에서 가장 인권이 외면 당하는 곳으로 ‘기술교육장’을 꼽고 있다. 이곳에서는 ‘노동을 통한 교화’,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 등을 목적으로 목공·도장·프레스·용접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위의 기사에서 90년대 초반 한 출소자의 증언에 의하면 “기술교육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군대에서 사용되는 책상·의자·캐비닛·서류함·헬멧 등을 이곳에서 생산하게 돼 있어 육군본부가 할당하는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수감자들은 구타와 가혹행위의 위협 속에 강제노역에 시달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설문 및 방문조사에 의하면 육군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군내 물품 예산 절감을 위해 기술교육장에서 책상·의자·캐비닛·서류함·헬멧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가혹행위, 구타를 일삼고 있지 않았으며, 작업중에 즐거나 작업량이 미달되면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얼차려를 주는 관행 역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

간을 하였으며, 일부는 정해진 시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작업을 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술교육장에서의 작업이 교화와 사회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 42명중 22명(79%)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정과 교화의 목적보다는 군대 내 필요한 비품을 만드는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은 이를 ‘강제노역’이라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되었을 당시에는 이들에게만 잔업을 부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12> 육군교도소의 기결수 교육과정/편성 (단위 : 명)

구 분	계	제1교육장 프레스 (부품절단/ 절곡)	제1교육장 용 접 (전기,가스, 스포츠)	제5교육장 용 접 (전기,가스, 스포츠)	제2교육장 도 장 (부품/완제품 도색)	제3교육장 조 립 (상판조립/ 서랍교정)
교육내용		1. 기계작동 요 령 2. 안전발판 사 용 3. 절단, 절곡	1. 가스/전기 용 접 법 2. 용접면착 용 법	1. 가스/전기 용 접 법 2. 용접면착 용 법	1. 페인트분사 2. 건조로 비품적재 요 령	1. 서 랫 교정방법 2. 상 판 조립방법
계	63	19	17	7	11	9
수련생 (실습인원)	40	15	10	3	7	5
조 교	18	3	6	3	3	3
교 관	5	1 (6급 000)	1 (6급 000)	1 (6급 000)	1 (7급 000)	1 (8급 000)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0쪽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벼운 상처 일 경우에는 의무관이 치료를 하였으며, 큰 사고인 경우에는 외진을 받도록 해주고 있었다.

7. 식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군교도소의 식사가 영창에 비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반 기간병들에 비해 빈약한 식단과 다소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불만으로 꼽았다. 또한 배식 때, 배식장 및 일부 채소자의 횡포로 배식에 편파성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영창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식사를 남기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없었고 자유배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육군교도소 식사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식이 부족하다 28%
- 양이 모자라다 23%
- 주, 부식의 재료가 좋지 못하다 16%
- 부식이 청결하지 못해 비위생적이다 14%
- 양은 충분하나 메뉴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12%
- 대체로 만족한다 3%

8. 의료

군의료관은 현재 내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의무행정관 1명, 근무병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일 평균 10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육군교도소의 규모에 비교해 2명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어 일반군부대나 민간교도소에 비해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의무실의 장비는 병원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X선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 흉부 사진 촬영 및 골절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치과 유닛이 있어서 치과진료가 가능하지만 치과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치료는 어렵다고 보고되었다. 그 외 소독 및 약품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표IV-13> 의료 인력 현황(7명) (단위 : 명)

계 급	전 문 특 기	보 직 인 원	비 고
대 위	내 과	1	의무실장
대 위	정형외과	1	
중 사	일반 의무	1	
병 장	일반의무병	1	
상 병	치무병	1	
상 병	약제병	1	
상 병	방사선병	1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3쪽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는 수련동 내에서 주 4회 정기적으로 한다. 의무실 규모로 할 수 없는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진료한다. 평균 주 4회의 정기진료에서는 한번에 1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으며, 수도병원 외진은 주 1회,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2명(수감자 100여명이었을 때)이 진료를 받는다. 또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교도소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소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하지만 장비기구가 없어서 자세한 검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영창에서 이감을 오기 전에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오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체검사에 대해 일부 수용자들은 형식적 검진이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6개월 이상자의 장기수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20세미만 소년수와 독방 수감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징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금치 되기 바로 직전과 금치 이후에 한번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징벌자 신검은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데, 정신 감정 없이 외형적인 것만 검사하는 것으로 징벌이 집행되고 있었다. 군의관 편제가 되어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2001년 외부 입원자 9명 중 4명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였다. 징벌자들이 금치를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신검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적 검진의 문제 : 지극히 형식적이다 / 대충 진료한다 /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대충하는 것 같다 / 성의 없이 진료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성심 성의껏 했으면 한다.

효과가 없는 처방 :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함께 생활했으며 약은 몸을 해칠 만큼 강한 것 같았다 / 아파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약 조제가 원활하지 않았고 약의 효과가 좋지 못했다.

기타 : 생각보다 의무관이 매우 친절하고 자상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으로 기억한다 /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창보다는 훨씬 나왔다 / 예방 조치가 없다 / 근무자가 교도관이 아니라 모두 헌병이었으므로, 병에 대해 말하기도 쉽지 않다.

9. 면회 / 서신

1) 면회

면회는 예방면회, 개방면회, 변호인면회로 나눌 수 있다. 예방면회의 경우 기결수는 주1회, 미결수는 매일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30분 이내 면회를 할 수 있다. 개방면회는 모범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 접촉 면회실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인면회는 근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방면회실의 경우 칸막이가 있지만 면회객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고, 개방면회의 경우 접촉면회실을 운영하여 칸막이를 제거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IV-14> 면회실

계	일반면회실	접촉면회실	변호사 면회실
9	5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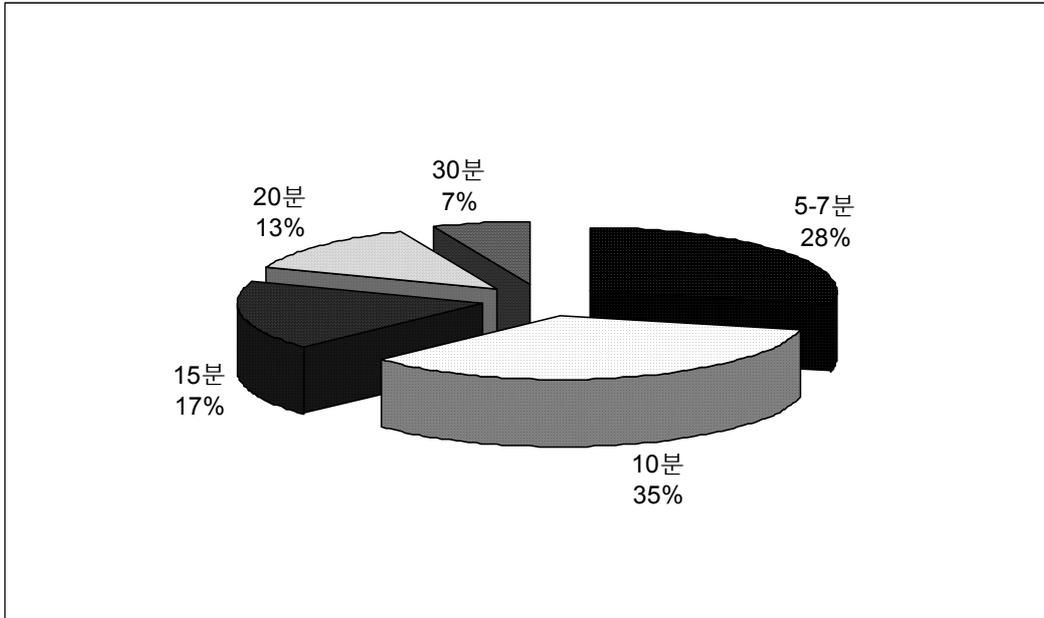
※ 접촉 면회실 ; 중간 칸막이 제거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5쪽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면회 시 겪었던 불편으로는 터무니없이 짧은 면회시간과 접견인을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꼽았다. 군행형법시행령 4장 42조에 따르면 면회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허가된 시간은 30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그림 IV-13> 육군교도소의 면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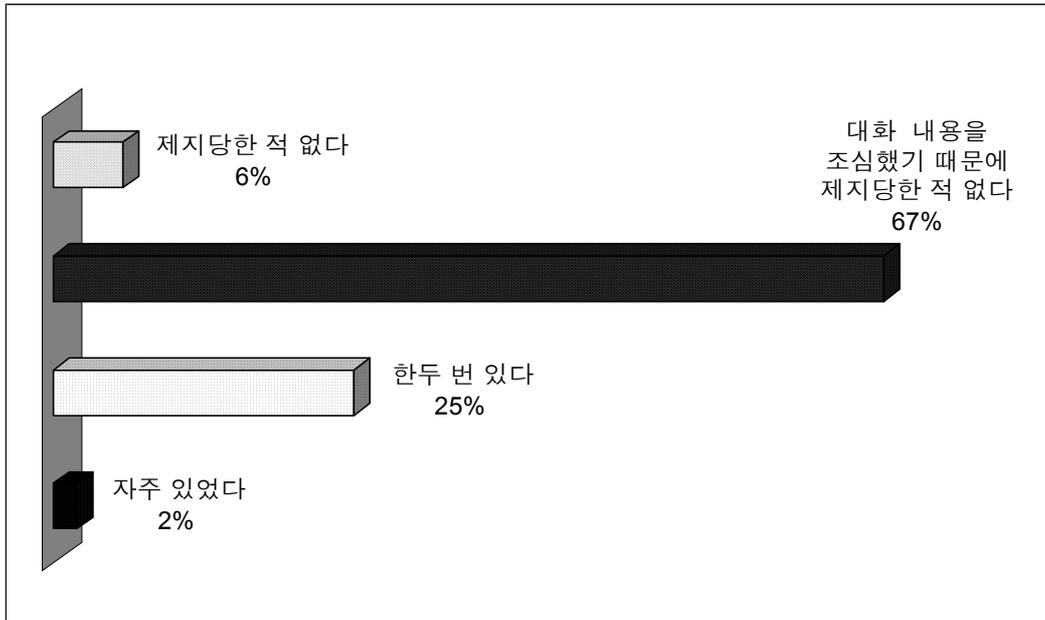
면회객 또한 대부분이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아래의 통계수치처럼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답한 것은 13%이고, 가족 혹은 가족을 동반한 친척에게만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 무려 69%에 이른다.

- 가족, 친척 및 가족과 함께 오는 친지 25%
- 가족과 함께 오는 친척 23%
- 가족에게 한정 21%
- 모든 사람과 면회 가능 13%
-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아도 가족이 신분만 확인해주면 친지도 면회가능 9%
- 공범이 아니거나 출소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사람이면 누구나 면회 가능 9%

면회객과 대화할 때 대부분은 제지당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면회 내용이 제지당한 비율은 27%이다. 이들 중

면회내용이 제지당한 이유로는 88%가 교도소 내부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12%는 경찰관, 검사, 교도관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 IV-14> 면회 시 입회교도관으로부터 제지당한 경험 (전체 응답자:53명)



면회시간부족 : 면회시간이 너무 짧다 / 먼 곳에서 오신 분들에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 시간이 부족하고 교도관들의 태도가 불친절했다 / 면회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점심시간에 면회를 오게 되면 점심을 먹지 못한다 / 시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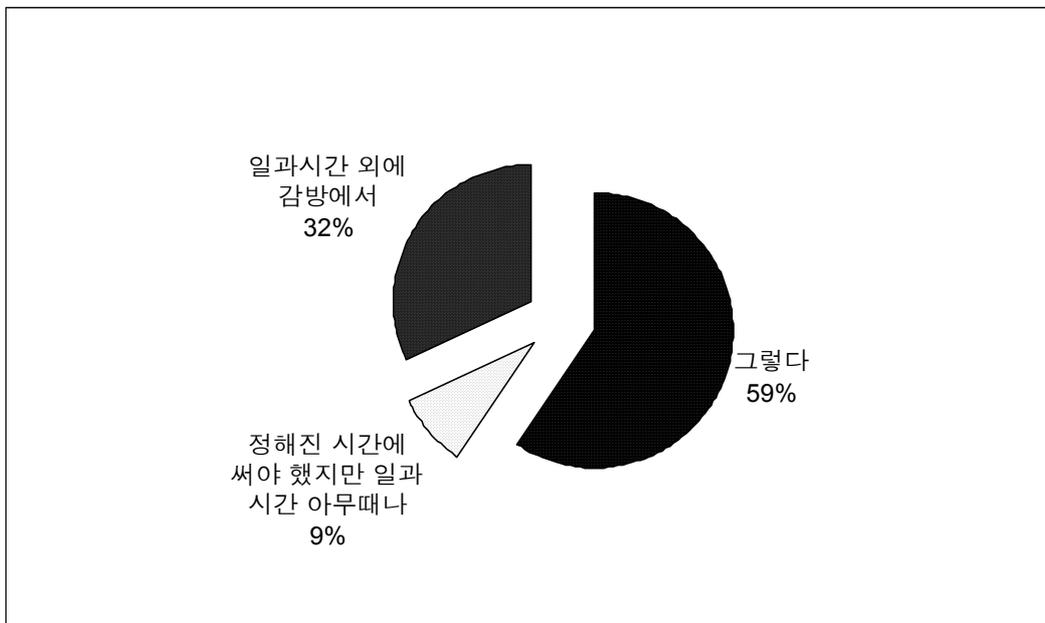
접견 음식물 영치 금지 : 접견 후 음식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 먹어야 했기에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늘 남았다. / 면회 때 들어온 음식을 자유롭게 같이 먹고 싶은데 허락되지 않았다 / 접견 시 허가되는 음식물이 거의 대부분이 접견실 뒷편에 있는 매점에서 파는 것들뿐이다, 불공평하다.

면회객 제한 : 면회객을 가족으로 제한하는 건 너무 하지 않나 싶다.

2) 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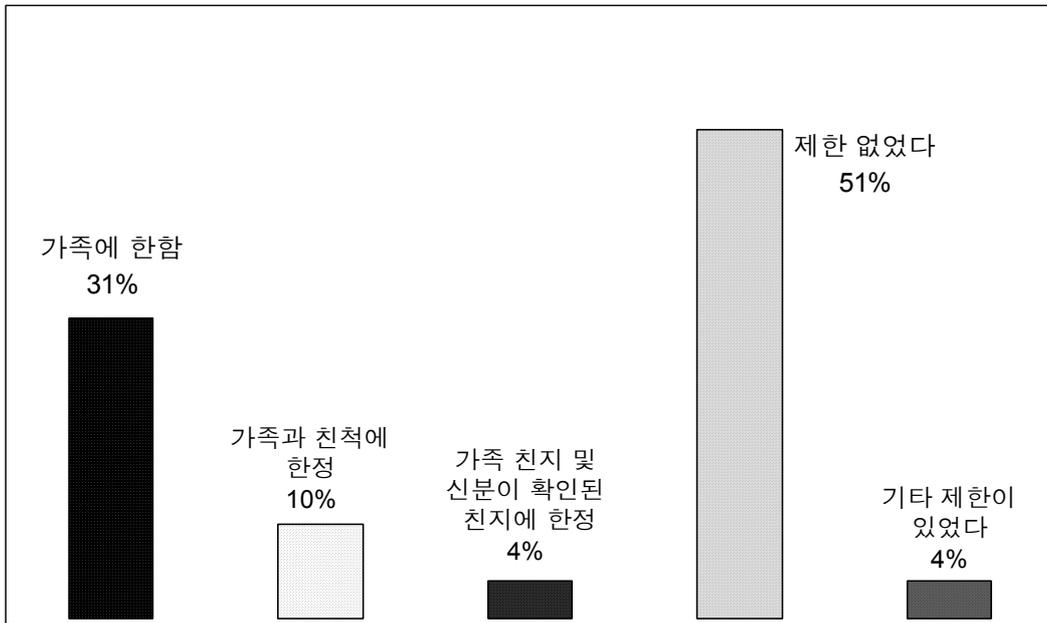
군행형법시행령 4장 제48조 1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축일·일요일 기타 공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들이 일과시간이 끝난 후 30분 정도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다고 말한 반면에, 상당수의 수용자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답하여,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IV-15> 서신 작성 시기



편지를 발송할 수 있는 대상의 경우에 51%는 제한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에 나머지 49%는 모두 편지 발송 대상에 제한이 있어 가족에게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IV-16> 서신 발송 대상 제한 (전체응답자:51명)



편지 내용검열에 있어서는 교도소 내부의 이야기를 하거나 폭행 당한 이야기를 할 경우 제지당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0. 종교

육군교도소 내부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 종파별 종교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 각 수용동 내부에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자율 기도대를 설치하여 손쉽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1인 1종교 갖기를 권장하여 자기반성 및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종교활동에 대한 규정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들의 경우 3대종교가 아니어서 종교 집회의 기회를 누릴 수가 없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회의 기회를 주어야 할 종교활동이 오히려 수용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공안사범의 경우 교도대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가대 활동이 금지된 경우도 있었다. 자유로운 종교활동은 헌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정

되어야 할 부분이다.

1)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되고 있지 않으나, 여호와의 증인이 매년 수 백명씩 수감되던 2001년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종교가 아닌 이유로 종교집회가 허가되지 않았으며 여호와 증인 관련 서적 ‘파수대’, ‘깨어라’ 등의 반입, 열독을 금지하고 있었다. 민간교도소에서도 여호와 증인의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하고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의 교도소 내 종교집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상태이다. 육군교도소 내에서도 3대종교가 아닌 종교신자들에게 종교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는 종교 집회를 할 수 없는 등의 차별 이외에 일반적인 수감 생활에서도 다른 수용자들과는 다른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잔업을 도맡아 해야 했고, 가석방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다.

11. 징벌

수용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징벌을 받게 된다. 규율 위반의 유형은 (1) 형법,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수용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조사 담당교도관 이외에 1인 이상의 교도관이 입회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징벌위원회에 징벌요구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의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징벌위원회에서는 규율위반 사유를 검토한 후에 징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징벌의 종류는 (1) 경고, (2)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3) 2월 이내의 도서

열람 제한, (4)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5) 작업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6) 2월 이내의 금치 등의 여섯 가지 이다. 1999년~2002년 9월 기간의 전체 47명의 징계자 중 금치 처분을 받은 자는 30명, 접견서신금지 12명, 도서열람 제한 3명, 경고 2명으로 징계내용으로 금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위의 금치 징벌을 받은 30명 중 2개월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9명, 45일 2명, 1개월 12명, 15일 5명, 10일 1명, 7일 1명이었다. 금치를 선고받은 후에는 징벌방에 갇혀 지내게 된다.

1) 징벌 처벌 시 신체검사

징벌방에 단절되어 생활하면서 햇볕을 못 보게 되는 상황에 닥치면 심적으로 불안해서 보통 일주일만 지나도 불안해지고 심신위약증세를 유발하게되는 것을 참고 해 볼 때 군형법에서 ‘2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치 기간은 과하다. 또한 육군교도소에서는 징벌처분자에 대해 신체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신검사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 금치의 상태를 견디어 낼 수 있는지 정신 감증을 통해 판결해야 한다. 육군교도소 측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표IV-15> 육군교도소의 징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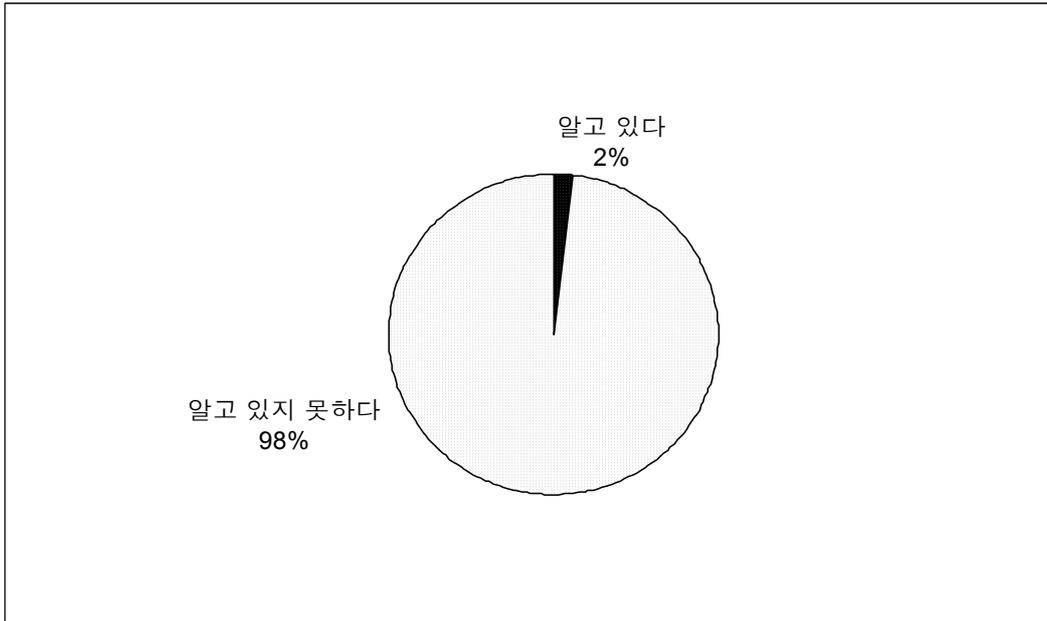
구 분	성 명	죄 명	형 기	징 벌 내 용		
				종류	기간	비 행 내 용
2002 년 (9.10 현재)	김OO	군탈등	징 0.10	금치	2월	· 기물파손 · 소란/난동 · 자해
	한OO	군무이탈	징 0.10	금치	"	· 기물파손 · 소란/난동 · 자해
	오OO	특가위	징 3.0	금치	1월	· 지시불이행 · 근무헌병에게욕설
	박OO	군무이탈	징 1.0	도서열람제한	1월	· 카드제작 놀이(포커)
	이OO	강도상해등	징 4.0	"	"	"
	김OO	군무이탈	징 1.0	"	"	"
	김OO	군무이탈	징 2.6	경고		"
	주OO	군무이탈	징 1.5	경고		"
	정OO	군무이탈	징 1.6	금치	15일	· 상호폭행 · 소란/난동행위
	이OO	군무이탈	징 1.0	"	15일	· 상호폭행 · 소란/난동행위
	임OO	강간치상	징 3.0	"	15일	· 상호폭행 · 소란/난동행위
	고OO	군무이탈등	징 1.6	"	15일	· 상호폭행 · 소란/난동행위
	최OO	강간치상	징 1.0	"	10일	· 지시불이행 · 근무자에대한욕설
	김OO	군무이탈	징 1.3	"	7일	· 상호 폭행

구분	성명	죄명	형기	징벌내용		
				종류	기간	비행내용
2001년	신OO	항명	징 3.0	금치	1월	· 금지물품 은닉
	조OO	군탈	징 1.6	금치	45일	· 금지물품 반입
	김OO	폭처위	징 1.6	금치	1월	· 금지물품 제작/은닉
2000년	도OO	군탈	징 1.0	금치	2월	· 흡연
	전OO	군탈	징 1.0	"	1월	· 흡연
	유OO	군탈	징 1.0	"	2월	· 흡연
	김OO	군탈	징 1.6	"	2월	· 흡연
	김OO	성폭위등	징 2.6	"	1월	· 흡연
	장OO	군탈등	징 2.0	"	1월	· 흡연
	김OO	항명	징 2.0	"	2월	· 교도관 폭행
	구OO	추행등	징 0.10	"	2월	· 상호 폭행
	정OO	항명	징 3.0	"	15일	· 상호 폭행
1999년	차OO	군탈등	징 1.6	"	1월	· 지시불이행 및 근무헌병 협박
	김OO	군탈	징 1.6	"	1월	· 폭행치사
	김OO	군탈	징 1.8	"	1월	· 상호폭행
	차OO	군탈등	징 1.6	"	1월15일	· 폭행치상
	김OO	군탈	징 1.6	"	2월	· 폭행치상
	강OO	야간절도등	징 0.10	접견서신금지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송OO	군탈등	징 1.0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신OO	군탈	징 1.6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김OO	군탈	징 1.6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남OO	근기목상	징 1.8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강OO	군용물절도	징 1.0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하OO	군탈등	징 1.0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여OO	근기목상	징 1.6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김OO	군탈	징 1.6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이OO	군탈	징 1.0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김OO	군탈	징 1.6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이OO	군탈	징 1.6	"	2월	· 흡연 및 금지된 물품소지
	차OO	군탈등	징 1.6	금치	2월	· 상호폭행
	조OO	군탈등	징 1.6	"	1월	· 상호폭행
	한OO	군탈	징 1.10	"	1월	· 상호폭행
유OO	군탈등	징 1.6	"	1월	· 상호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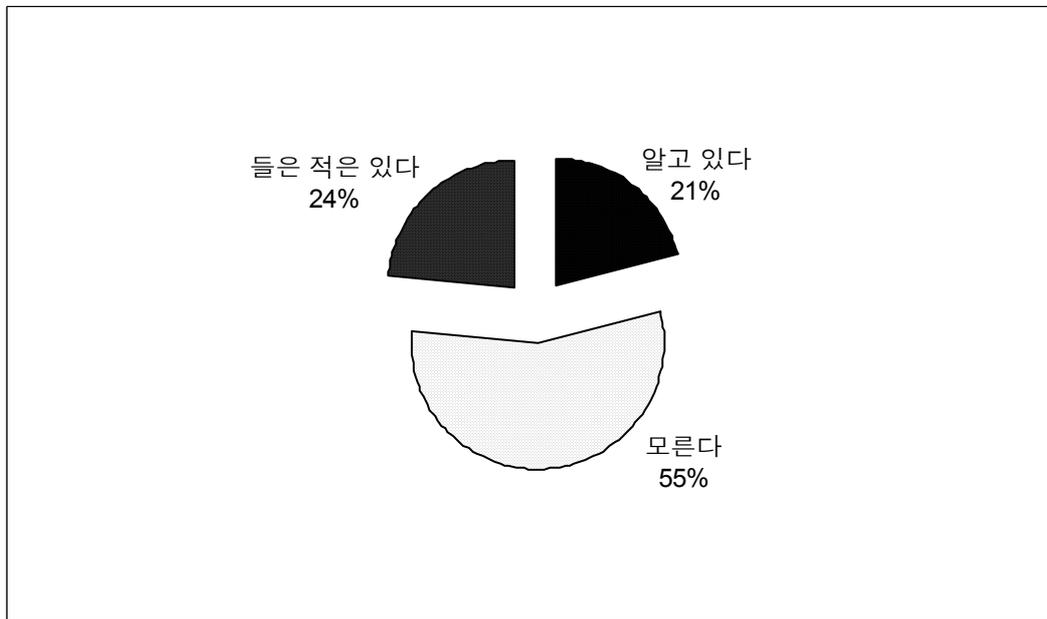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88쪽

또한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징벌 처리와 관련한 자신의 법적 권리 또는 징벌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

<그림 IV-17> 징벌종류의 숙지 여부 (전체응답자: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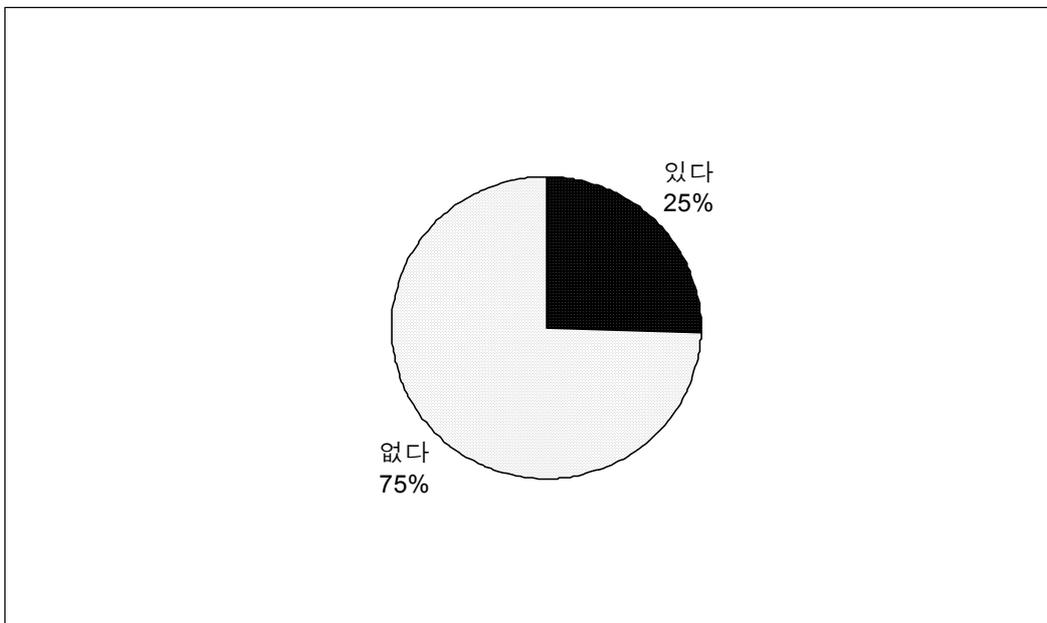
<그림 IV-18> 징벌위원회 인지 여부 (전체응답자: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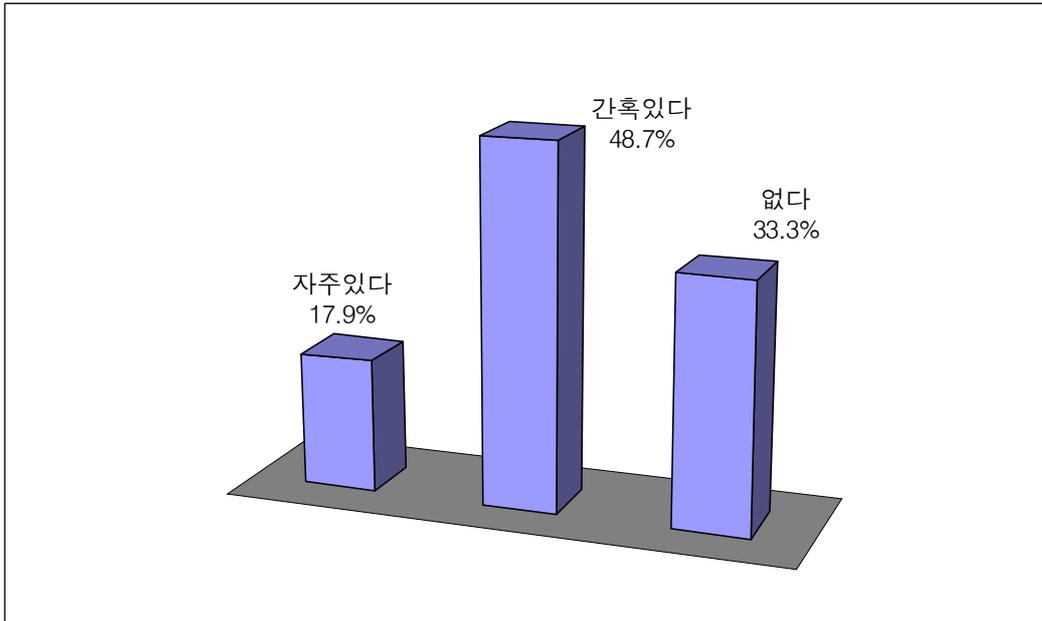
12. 구타 및 가혹행위

육군교도소의 경우 ‘근무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51명의 응답자 중 ‘있다’가 13명(25.5%), ‘없다’가 38명(74.5%)으로 나와 영창에 비해서는 가혹행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용자간의 군기잡기에 대해 육군교도소 경험자 39명은 ‘자주 있다’ 7명(17.9%), ‘간혹 있다’ 19명(48.7%), ‘없다’ 13명(33.3%)으로 답해 사방 내에서의 수용자간의 군기잡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IV-19> 근무 현병으로부터 가혹행위 여부 (전체응답자:51명)



<그림 IV-20> 수용자간의 가혹행위 여부 (전체응답자:39명)



13. 소결

수감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현재 육군교도소의 수용자 수가 현저히 줄었다. 대부분의 부당한 처우들이 과밀수용에서 초래되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인원이 급감 하면서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 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교도소의 생활은 각 군단의 영창 생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헌병들의 태도도 영창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창에서는 헌병들의 권한이 막강하여 강압적으로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나, 육군교도소의 경우는 대부분의 근무병이 수감자에게 존대어를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수감자를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군단의 헌병대와는 달리 정좌를 강요하지 않았고, 가혹행위와 체벌도 드물었다. 그러나 다수의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부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서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든지 징계처분과 관련한 조항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등이다.

V. 교정 인력 및 교화 프로그램

1. 육군교도소

1) 교정 인력

일일 수용자가 300~500명을 넘는 2001년 이전에는 수감자에 비해 근무자 수가 부족하여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소자가 또 다른 재소자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일일 평균 100여명의 수감자에 전체 245명의 기간병이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표 V-2>) 과밀수용으로 겪었던 문제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 인력 당 수용자 부담이 경감되어 수용자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1> 육군교도소의 기간병 계급별 인원 현황

계	장 교					부 사 관					병	군무원
	소계	대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20	2	4	12	2	29	6	7	12	4	182	14

자료 :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2쪽

<표 V-2> 육군교도소의 기간병 병과별 인원 현황

병 과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계	245	20	29	182	14
헌 병	151	14	25	112	
경 리	2	1		1	
정 훈	2	2			
의 무	7	2	1	4	
군 종	2	1		1	
보 급	5		1	4	
수 송	22		2	20	
보 병	12			12	
목 공	3			3	
보 일 러	2			2	
발 진 병	1			1	
통 신	1			1	
조 리	9			9	
경차량수리	4			4	
용 접	4			3	1
기계공작	4			3	1
행 정	3			1	2
진 기	2			1	1
진 산	1				1
토 목	1				1
냉 난 방	1				1
일반차량	1				1
교 관	2				2
목 재	1				1
행정보조	1				1
이 피 용	1				1

자료 : 「2002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2쪽

이러한 교정 인력들을 법무연수원의 교도관 직무과정에 파견교육을 시키거나, 연 1회 민간 교도소 견학 및 2박 3일간의 민간 교도소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 교도당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교정·교화 업무의 연계 및 교정전문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었다.

2) 교정/교화 프로그램

기결 구금시설의 목적은 단순히 수형자에 대한 격리·구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역 후 다시 군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군행형법 제1조에도 군사법원에 의하여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 보호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견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교도소에서는 기결수용자에 대해 기술·기능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소 7일 전부터는 신문열독 및 뉴스시청, 사회 정보소개 등과 같은 만기 출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V-3> 교정, 교화 내용

구 분	근 거	대 상	비 고
신입소 교육	· 군행형법 시행령 제15조	신입소자	1주일
재복무 교육	· 군행형법 제29조 · 동 시행령 제77조 · 동 시행규칙 제10조 · 육군규정 제118조 2항	미결수	
기술 교육	· 군행형법 제29조 · 동 시행령 제76조 · 동 시행규칙 제10조	기결수(잔형기 이상자)	6개월 ※ 교육기간고려
		기결수	
출감전 교육	· 군행형법 시행령 제102조	기결수 (출감 3일전 해당자)	석방후의생활 및 진로등 교육

가. 신입소 교육

신입소 교육은 신입소자를 대상으로 약 1주 동안 수용생활에 필요한 규칙,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동시에 면담을 실시하여 각각의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과 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신입소 교육 시에는 체력단련, 제식훈련, 행형규정 교육, 생활교육, 인성교육, 정신교육을 진행한다.

신입소 교육이 진행되는 약 1주간은 교육받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시간에 하루종일 정좌를 시킨 일도 있어 더 많은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나. 재복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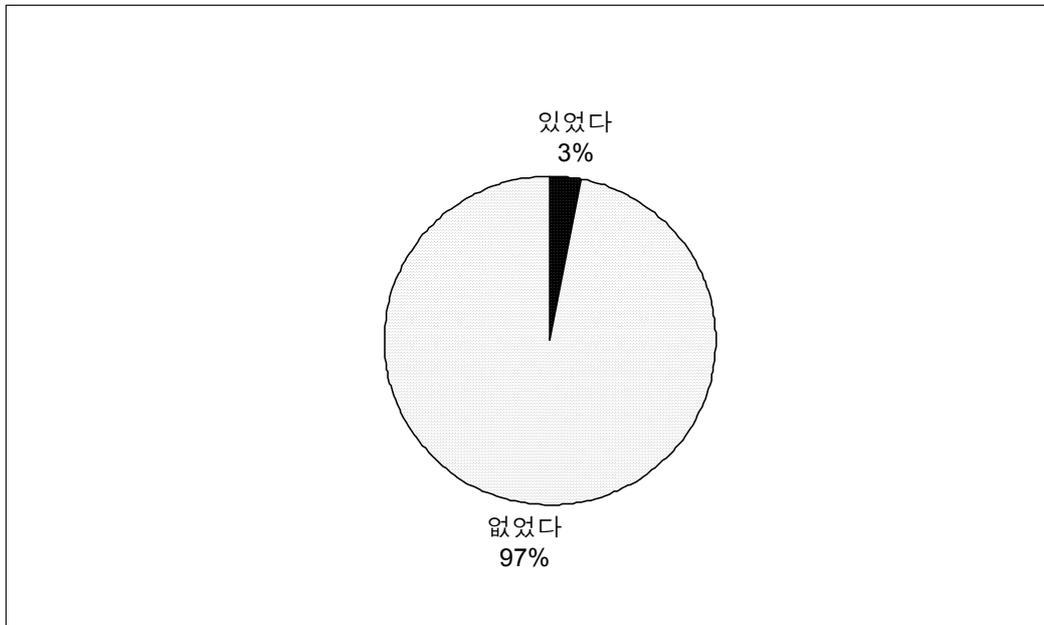
재복무교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체력단련,

제식훈련, 한자교육,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대로 복귀 시, 해당 부대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다. 기술/기능교육

기결수를 대상으로는 기술교육과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교육의 경우는 대부분은 군에서 필요한 물품인 책상, 의자, 캐비닛, 서류함, 헬멧을 제작하는 작업과정이다. 기능교육은 수용자들이 각종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출소 시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한·양식 조리 등에 관한 교육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연 2회 기능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용자들의 대부분은 작업이외에 이러한 기능교육(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 육군교도소 재소자 중 기능검정 시험에 응시한 196명 중 177명이 합격하여 90.3%의 합격률을 보인 것을 보면, 현재 기능교육은 양호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Ⅳ-15> 참조).

<그림Ⅴ-1> 작업외 직업훈련 실시 여부 (전체응답자:32명)



<표 V-4>기능 검정 합격 인원 (단위 : 명)

년 도	과 정	응 시	합 격	합 격 륜(%)	비 고
계		196	177	90.3	
01	소계	154	140	90.9	
	전기 용접	25	21	84	
	자동차정비	26	24	92.3	
	정보 처리	56	52	92.8	
	한식 조리	47	43	91.5	
02	소계	42	37	88	
	정보 처리	22	20	91	
	한·양식 조리	20	17	85	

자료 :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0쪽

라. 만기 출소자 교육

만기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신문, 텔레비전 보기와 사회 정보공개 및 컴퓨터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 V-5> 만기 출소자 교육내용

구분	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관	비고
내 용	7일	수형생활 소감문 작성 생활 계획 작성 신문열독 및 뉴스시청 사회 정보공개	만기출소자 전원	대위 박홍주 외 3명	만기수 거실 개선 -정보게시판 설치 -학습용 컴퓨터 설치 -쇼파, 원탁, 도색 등 환경개선

자료 :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0쪽

마. 기타

이 밖에도 외부 초청 강연회, 위문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교화 활동을 시행 중이다.

<표 V-6> 기타 교정/교화 프로그램

1. 대 외 행 사 (초빙강연회/위문공연)

일 자	계	'01. 5. 9	'01. 6. 14	'01. 8. 8	'01. 9. 5	'01. 12. 8	'02. 6. 4	'02. 6. 15	'02. 7. 12
인 원	1138명	162명	88명	165명	174명	218명	120명	114명	97명
강 사		소야 생활관 원장 박기남	보광중앙 교회목사 박병록	홍익인간 교육위원 장 김한권	대전효도 회 황인화의 44명	한국에이 즈 퇴치연맹 김학영	국군용 성 을 위한 군의역 할 오완진	북한의 실상 전혜숙 (귀순자)	정신여고 합창단 34명

2. 일일 희망 학교(후원 : 지구촌 교회) : 교도교화

(1) 2001년 (단위 : 명)

계	1/5	2/2	3/6	4/6	5/3	6/7	7/5	8/2	9/6	10/11	11/15	12/6
511	21	16	17	12	15	23	19	79	69	55	78	107

(2) 2002년 (단위 : 명)

계	1/3	2/7	3/7	4/11	5/2	6/20	7/4	8/7	9/5
715	105	72	78	82	88	71	78	55	86

3. 위문행사 : 교도교화 활동

(1) 2001년 (단위 : 명)

7월18일	9월14일	11월19일	12월12일	12월13일	12월18일	12월25일
101	69	93	180	166	89	94
예능교회	새능교회	2군사령부 교 회	장 호 원 부녀봉사회	소망교회	군국기독 부 인 회	무학교회

(2) 2002년 (단위 : 명)

계	3월15일	4월13일	4월19일	4월21일	5월10일	5월10일	6월7일	6월14일
1739	291	98	19	307	50	71	23	88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서울시노 회 군선교부	대 한 적십자사 부녀봉사 회	기독 미술 연구회 / 기쁨의 집	대 한 적십자사 부녀회	대구동부 교 회	대한 적십자사 부녀봉사 회	보 광 중앙교회

자료 : 「200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방부, 2002, 1691쪽

2. 미결수용시설 (영창)

1) 교정인력

반면 육군교도소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은 사단 헌병대 등 97개소의 미결수용시설의 경우, 구금의 기능만 있을 뿐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결수용시설의 교정·교화 업무는 헌병대 형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부사관인 형무계장 1명과 사병인 형무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교정관련 교육은 부사관과 사병 모두 입대 초기의 기초 병과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전문성을 띄는 교육과정인 형무담당관 소집교육의 경우에도 불과 2일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미결수용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교정인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2) 교정/교화 프로그램

연구팀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헌병대에서 교정·교화 차원으로 피의자들에게 매일 수양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지휘관이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감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수양록은 일반 사병들도 군 인성교육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헌병대에 수감된 미결수용자들은 수양록 작성시 지난날 과오에 대한 자기 반성, 일일 수감생활 반성, 사고 교훈 등과 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강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문 교정교육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반성 일변도의 교정·교화 교육은 피의자의 권리나 양심의 자유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결수용시설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교정·교화교육보다는 오히려 개인집필 보장, 독서여건 확충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정·교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헌병 병과교육 상의 교정교육 확대,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 신설, 민간 교정당국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도 요구된다.

VI. 병(兵)의 징계 입찰 문제

1. 사병의 징계 입찰문제

본 조사팀이 처음 군대 내 구금시설의 실태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사병들의 징계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기결수와 미결수에 대한 문제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징계입찰자가 1년에 8-9천명에 달하는 등 엄청난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군의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절대다수(약 80%)가 징계입찰자였다.

징계를 받아 입찰되는 사병들은 명백히 신체의 자유가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한다. 징계 입찰 문제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떠나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입찰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1) 징계

징계라 함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적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특별권력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특히 군에서의 징계는 통수계통의 확립과 과벌의 신속성을 기한다는 명목 하에 철저히 직권주의를 취하여 징계의 전체 절차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지휘관에게 일임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77조에 따르면 징계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어떠한 소추나 징계요구를 원칙적으로 요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개시하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감경, 정지 또는 불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징계의 사유 역시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

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군인사법 56조)라고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지휘관의 자의에 의한 징계가 가능하다.

2) 사병의 징계 종류

종류	내용
강등	○ 당해계급에서 1계급 내림
영창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 ∴ 영창 처분 기간은 군복무기간 미산입 등
휴가제한	○ 휴가(연가) 일수를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1회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며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가 횟수(매 휴가시 최소 5일은 보장)의 박탈은 불가함.
근신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 ∴ 징계권자는 근신기간 중 수행할 과외 업무를 지정 가능 등

징계의 종류 중 군인사법에 소개된 순서가 징계의 무거운 순서를 뜻하는 것이라면 영창은 강등보다는 가벼운 징계이다.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사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4가지 징계의 유형 중에서 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징계는 영창이다.

<표VI-1> 병 징계

(단위 : 명)

구분	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00	11078	1	8945 (80.7%)	1901 (17.2%)	231 (2.1%)
'01	11860	6 (0.1%)	9210 (77.7%)	2347 (19.8%)	297 (2.5%)
'02. 5.말	6790	1	5209 (76.7%)	1413 (20.8%)	167 (2.5%)
계	29728	8	23364 (78.6%)	5661 (19.0%)	695 (2.3%)

자료: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 자료」, 국방부, 2002, 1465쪽.

위의 표에 의하면 2000년 - 2002년 5월까지 징계를 받은 사병은 모두 29,728명인데 그 중 강등은 8명인 반면, 영창은 23,364명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휴가제한이 5,661명으로 19%, 근신은 695명으로 2.3%이다. 전체 징계자에서 영창 처분을 받은 사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80.7%, 2001년 77.7%, 2002년 76.7%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징계 자체가 는 까닭에 영창 처분을 받은 사병의 수는 2000년 8945명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103, 2002년은 140 (2002년은 5월말까지 6,790명 징계에 5,209명이 영창에 수감되었는데,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6296명 징계에 12,502명이 영창에 수감되게 된다)으로 급증하였다. 징계를 받은 전체 사병 중에서 영창에 수감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영창은 사병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징계별이며, 2002년의 경우는 상반기의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무려 1개 사단 병력에 가까운 12,502명이 영창에 가게 되는 것이다. 2000년과 2001년에도 징계를 받아 영창을 거쳐 간 인원이 각각 무려 9천명 안팎이다.

2000년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모두 3,106명, 2001년에는 2,320명, 그리고 2002년에는 7월말까지 970명으로 모두 6,396명이다. 여기에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00년에서 2002년 5월말까지 징계입창 처분을 받은 사병은 모두 23,364명이다. 이 숫자를 합치면 29,760 명인데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유사할 것이다. 군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 중에서 징계입창자가 차지하는 비율(23,364/29,760)은 78.5%이다. 징계입창자의 통계가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군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대략 80%가 징계입창자라는 것이다. 징계입창자들은 미결, 기결 수용자에 비해 15일 이내의 단기간 수용되지만, 군 구금시설 수용인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는 이들이 단기 수용되어 유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정시점의 수용인원에서 징계입창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대략 60% 이상일 것이다.

사병에 대한 징계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가 있는데 왜 유독 징계권자인 지휘관들은 영창을 선택하는 것일까? 현재 사병들이 받는 월급은 계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2만원 안팎이니 장교나 부사관들처럼 감봉을 적용할 수 없다. 사병들은 이미 영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영내 대기나 외출금지를 의미하는 근신은 사병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 강등의 경우, 장교들과는 달리 사병들에게는 약간의 창피함 이외에 그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명예

형이기 때문에 군인사법 상 가장 무거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예상하기 힘들다. 또 계급보다는 입대일자가 우선되는 분위기 아래에서, 사병들은 계급에 연연하지 않으며, 의무복무기간만 마치면 그만이니 강등이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휴가제한의 경우, “1회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며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가 횟수(매 휴가 시 최소 5일은 보장)의 박탈은 불가”하다는 등 제한이 붙어 있으며,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사병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압도적으로 영창에 구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2. 징계 입장의 문제점

징계입장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본 연구팀이 접촉한 군법무관을 지낸 법조인 모두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징계 입장이 갖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법관의 결정이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구금은 명백히 유엔이 금지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은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인데, 최대 15일까지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과 같은 기간만큼의 복무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영창 처분이 1년에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휘권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사병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민간 사회의 구류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민간에서의 구류는 법관에 의한 즉결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지휘관의 자의(恣意)적인 처분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달라지는 등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다. 군인사법은 징계의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휘관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 부대의 지휘관에 따라서, 같은 지휘관도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게 된다. 가령 똑같이 음주를 금하는 명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군기교육대 입소로 끝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영창 15일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징계처분의 자의성은 군기강 확립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징계는 일종의 행정벌이지만, 죄형법정주의에 준하여 동일한 행동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징계수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휘관의 자의성을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되어야 할 범죄행위가 지휘관에 의해 형벌이 아닌 징계에 해당하는 영창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징계처분은 그 동안 지휘관의 자의에 의해 처리되고 명령계통을 통해서만 보고될 뿐 군검찰에는 통보되지 않았는데, 육군은 1994년부터 규정을 바꿔 영창 등 병에 대한 징계처분도 군검찰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7사단 헌병대에서 확인한 바로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병이 군검찰에 출두하여 확인절차를 거쳐 서류에 ‘검토피’ 도장을 받은 후 헌병대로 신병이 이관되어 입창된다고 하였으나, 다른 부대에서의 확인절차가 본인의 출두인지 서류 상의 통보인지는 다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넷째, 징계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군인사법 59조와 군인사법시행령 69조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 이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3인 이상 15인 이내로 징계권자가 임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동 시행령 70조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71조는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참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써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7사단 헌병대의 경우,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였는지 서류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병들이 영창에 갈 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는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징계항고권은 거의 행사되지 않고 있으며, 사병들은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징계를 받은 사병은 모두 22,938명인데, 그 중 징계항고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병의 징계항고권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 지침의 제정을 검토 중이고, 영창 수용 전에 법무참모부를 경유하고 항고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팀이 만나본 징계 입창자 또는 입창 경험자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절차를 밟거나 징계항고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다. 또 설혹 사병들이 징계항고권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권을 지닌 지휘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항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병들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영창처분을 받은 병들의 경우, 영창일수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법에 의해 뒷받침 (병역법 18조 3항)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사실상 2중의 처벌이 되고 있다. 한 헌병대장에 따르면 과거 영창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발하여 영창에서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을 당시에는 영창일수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었으나, 영창 내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완화되면서 영창 생활이 편하니 유격훈련 등 힘든 훈련이 있으면 훈련받는 것보다 차라리 영창에 가는 것이 편하다는 등의 말이 돌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997년 1월 13일의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영창일수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대장 급 지휘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데 이어 같은 기간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는 조치는 처분을 받는 사병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이다. 이런 가혹한 조치는 해당 사병의 복무부적응을 유발하여 오히려 군에 지휘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일곱째, 징계입장자들은 법적으로 자유인 신분으로, 미결수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을 누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영창 내에서 미결수에게 부여된 독서와 면회, 편지 쓰기 등 많은 권리는 부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징계입장자들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 7사단의 경우 독서와 편지 쓰기, TV 은 허용되나 면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해병 2사단의 경우 독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영창 처분에 대한 대안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어떤 경우라도 법관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영창 처분도 단순히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판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1999년 12월의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군에도 민간과 유사하게 즉결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군사법원법 제501조의 14항은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보통군

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에서의 구류와 유사한 영창처분은 군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지휘관의 권한으로 남겨 둔 것이다.

명백한 자의적 구금인 영창처분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어떠한 결정도 법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즉결심판에 관한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개정하여 영창처분을 군판사의 권한으로 옮겨 최소한 즉결심판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재의 군의 즉결심판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과료만을 형벌로 정하고 있을 뿐 신체형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개정하여 영창처분을 판사의 결정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영창처분이 현재 지휘관이 사병들을 통제하고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군사법원법 상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헌병대장에게 국한하지 말고 해당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휘관의 누수도 방지하면서 군이 1년에 1만건에 가까운 자의적 구금을 남발하는 현실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징계를 받아 입창되는 사람들은 행형법 상의 미결수보다 우월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군은 징계입창자의 처우와 권리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입창자들의 권리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근본원인은 영창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얼차려 등이 많이 줄어들자, 지휘관들이 영창이 너무 편해졌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해 군 지휘관들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징계입창자의 경우, 면회, 독서, 서신, 운동 등에 대해서 최소한 미결수용자 수준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Ⅶ. 군행형법과 일반행형법의 비교

1. 비교대상과 방법

본 장에서는 군행형법과 일반 행형법을 비교함으로써 군 수용자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처우, 군과 일반의 구금시설을 포함한 행형제도의 차이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비교대상을 국내 행형법으로 정한 이유는 동법이 수형자의 인권향상에 대한 기준과 모범이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군 통제하의 구금시설과 군인이라는 수형자의 신분으로 인한 행형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군행형법에 비해 행형법은 여러 차례 개정, 보완되었으며 민간 행형법의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99년 군행형법 개정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행형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전문개정 1회, 일부개정 6회(1990년대만 3차례 개정)를 거치며 차차 보완된 반면, 군행형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9년 전문 개정되기까지 1980년, 1987년 단 2회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민간 행형 법규로는 행형법 외에 행형법시행령, 수형자등교육규칙,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관한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군 행형 관련 법규로는 군행형법 이외에 군행형법시행령과 군행형법시행규칙, 군수형자가 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2장에서는 행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두 법령의 차이를 서술하였고, 하나의 법에만 정해져있고 다른 법에는 정해지지 않은 조항일 경우 두 법간의 비교 없이 하나의 법 조항만을 기술하였다.

2. 내용

1장 총칙

총칙에서는 최고권한자, 구분수용과 교도소등의 설치운영, 청원에 대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최고 권한자는 교도소의 설치, 순회점검, 청원, 직무규정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일반교도소는 최고권한자가 법무부장관인데 반해, 군 교도소는 국방부장관이다. 군 교도소의 경우, 국방부 장관소속 하에 전체적인 행형 사무가 이루어지나 지휘나 감독은 참모총장이 한다(행형법, 제2조). 여자수용자의 경우나 필요한 경우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행형법의 구분수용은 20세 이하 범죄인이나 미결수형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군행형법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구분수용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미결수용자의 구분수용에 대해서는 제 2조 교도소등의 설치에 언급하고 있다. 행형법은 구분수용의 예외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여야할 수형자를 교도소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행형법은 3개월로 기한을 두고 있다.

한편, 교도소등의 순회점검에 대해 군행형법은 순회점검공무원의 직무를 청원관련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처우, 급여, 위생, 수용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찰할 수 있고, 교도소등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4조). 순회점검의 시기는 행형법이 2년에 1회 이상, 군행형법이 매년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2조/ 군행형법시행령, 제2조).

2장 수용

수용에서는 신입자나 수용자에 대한 식별조치나 검사, 공동수용(행형법은 혼거수용),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먼저, 신입자에 대한 식별조치나 검사에 있어서 행형법은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로 정하고 있으나 군행형법은 사진촬영, 지문채취 외에 신입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행형법, 제10조/ 군행형법, 제7조).

수용은 행형법과 군행형법이 독거수용(군행형법은 독방수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공동수용의 경우 행형법은 수용자에게 유익하거나(행형법시행령, 제31조 2, 4항), 독거수용의 경우 수용자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행형법시행령, 제31조 1, 3항), 교도소 내 시설미비(행형법시행령, 제31조 5항)와

같이 다양하고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군행형법은 시설고려, 노역선고자, 신체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공동수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수용자의 계급과 지위에 따라 구별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독방수용의 경우 군행형법이 독방수용자 대상자, 수용기간, 야간 독방수용 등을 부가적으로 정하고 있다. 독방수용 대상자에 대해 7개의 항목(1.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2.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4. 다른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5.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6. 여죄사건이 계류중인 자/ 7.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히 안정이 필요한 자)을 순위에 따라 정하고,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독방수용을 금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23조). 독방수용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필요가 인정될 경우 소장에 의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25조 1항). 소장은 독방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독방수용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간에 독방수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 자가 작업에 취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간에도 독방수용하여야 한다(군행형법시행령, 제27조). 이외에 신입자의 분리수용에 대해 행형법은 신입한 날로부터 3일 동안으로 정하고, 군행형법은 7일 동안으로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21조/ 군행형법시행령, 제15조).

3장 계호(경계감호)

계호에는 계구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에 대한 차이가 있다. 행형법은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행형법, 제14조 3항). 또한, 무기의 사용보다 덜한 상황에서 규정된 강제력의 행사를 별도로 정하고, 신체적 유형력뿐만 아니라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 등의 보안장비를 최소한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행형법, 제14조의 2).

4장 면회(접견)와 서신

면회(접견)와 서신에는 허가, 전화통화와 서신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다. 행형법은 군행법령의 형법에 비해 면회와 서신에 대한 기회가 좀더 보장되어 있다. 행

행법은 수용자의 면회기회를 매월 4회, 미결수용자의 접견기회를 매일 1회로 정한 반면, 군행형법은 징역수형자에 대해 매월 2회, 금고 노역장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해 매월 3회, 미결수용자는 매주 2회로 정하였다(행형법시행령, 제56조/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이러한 횟수는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신발송에도 준용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면회와 서신에서 무제한이다.

면회와 서신의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행형법과 달리 군행형법은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해 검찰관이 이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군행형법, 제15조 1항), 행형법은 서신과 면회이외에 전화통화를 청취조건으로 허가하고 있다(행형법, 제18조의 3항). 군행형법은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면회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행형법은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접견제지나 종료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46조 2항/ 행형법시행령 제58조 2항, 3항). 이외에 군행형법은 수용자의 면회에 대한 참여와 서신수발에 대한 검열규정 중 변호인에 대해서는 면회 참여와 녹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신에 대해서는 검열 예외의 규정이 없다.

5장 급여

급여는 거의 다른 부분이 없지만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의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허용하도록 정하고(행형법, 제22조), 군행형법은 20세 미만의 자, 병자, 이송자,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의류를 착용시킬 수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55조 3항). 이외에, 군행형법은 수용자에게 주류와 담배 등을 급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19조).

6장 위생과 의료

위생과 의료에서는 행형법과 군행형법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행형법은 소장이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행형법시행령, 제94조), 군행형법은 전염병자의 격리수용 시 다른 수용자가 동의할 경우 격리수용자

를 간호할 수 있게 하고(군행형법시행령, 제64조 3항), 병원이송시에는 2인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29조의 2).

7장 교육과 교회

교육(훈련)과 교회는 교회신청 등의 불허가, 유족사망자의 교회, 신문도서의 열람, 집필, 통근교육에 대한 차이가 있다. 군행형법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교회를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교회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수형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72조). 또한, 행형법이 유족사망으로 작업면제를 받은 이에게 수시로 교회 하도록 한데 반해, 군행형법은 독방에 수용하고 교회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09조/군행형법시행령, 제73조 3항).

행형법은 수용자에 대해 도서 열람, 라디오, 텔레비전시청 외에도 신문열람을 허가하고 있으나(행형법, 제33조), 군행형법은 신문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서열람을 제외한 라디오·텔레비전시청을 수형자에 국한시키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75조). 또한, 행형법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 학술, 기타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행형법, 제33조의 3항).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군행형법의 교육은 군에 복귀함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군행형법, 제29조), 수용자의 훈련에 집중 기타 무기에 의한 훈련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형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77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형법의 교육은 일반학과 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교육 및 방송통신대학교과정 교육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행형법은 학과과정, 기술교육과정, 군사훈련과정으로 정하고 있다(수형자등교육규칙, 제2조/군행형법시행규칙, 제10조).

한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행형법은 평가시험결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수형자를 제외하도록 한 반면, 군행형법은 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수형자등교육규칙, 제14조 2항/군행형법시행규칙, 제15조 2항). 이외에 행형법은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가 외부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32조 3항).

8장 작업

작업은 행형법과 군행형법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행형법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등 보다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작업을 과한다(행형법, 제35조). 군행형법은 소장이 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과한 때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규칙, 제22조).

이외에 행형법이 20세 미만의 수형자, 노쇠자, 병역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행형법은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고령자 또는 병약자에게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119조/ 군행형법시행규칙 제21조).

9장 영치

영치는 행형법과 군행형법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있어 행형법은 사망자의 유류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 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의해 매각하여 대금을 송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군행형법은 유류금품의 내용 및 상속인이 유류금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37조 1항/군행형법시행령, 제87조 1항).

10장 분류와 처우, 상벌

분류와 처우, 상벌에는 분류, 귀휴기간, 규율, 징벌해당 행위, 징벌의 종류, 징벌부과에 대한 규정, 징벌집행, 징벌위원회, 징벌기간의 유예조항이 차이가 있다.행형법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행형법, 제44조 2항). 군행형법의 경우, 우수침의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에 따라 행실을 심사하고 행실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상으로서의 처우를 하고 있다(군행형법, 제42조). 상표를 받은 자에 대해 모범수 수용실에서의 수용, 가석방심사 회부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 상표 1개마다 면회, 서신발송, 목욕횟수 1회씩 증가, 월 3회 이하 특식급여,

작업상여금 월액의 1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작업종류의 선택에 있어서의 우선권부여 등의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규칙, 제42조).

귀휴의 경우 군행형법은 귀휴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규칙, 제43조, 제48조). 또한,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는 허가된 귀휴지외에 귀휴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병을 동행하게 할수 있다(군행형법시행규칙, 제50조). 귀휴허가의 횟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형기 중 5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군행형법시행규칙, 제52조).

행형법은 1년 이상 복역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우수 수형자에게 1년 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하고 있고, 군행형법은 1년이상 복역하고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우수 수형자에게 형기간 중 3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하고 있다(행형법 제44조 3항/군행형법 제42조 3항). 외에 행형법은 위의 해당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의 혼례 때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하고 있으나, 군행형법은 귀휴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행형법, 제44조 4항/군행형법시행규칙, 제48조).

규율에 대해 행형법은 부령이외에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행형법, 제45조 2,3항). 징벌해당 행위에 대해 행형법은 부령이외에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자해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및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다(행형법, 제46조). 징벌의 종류는 행형법이 경고, 1월이 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개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이 내의 금치이며, 군행형법은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를 제외하고 행형법과 동일하다(행형법, 제46조 2항/군행형법, 제44조).

징벌해당 행위, 징벌의 종류 외에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형법, 제46조 3항). 또한, 징벌 양정시 참작사항으로 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지능·환경 및 건강상태, 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규율위반후의 정황, 행형 성적 및 수용생활태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4조의 2항).

조사절차에 대해 행형법은 조사업무가 조사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군행형법은 규율위반행위조사시 조사 담당 교도관 이외에 1인 이상의 교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3항/ 군행형법시행규칙, 제60조 2항).

징벌절차에 대해 행형법은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금지 집행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위원과의 교화상 면담, 종교서적의 열람,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8조의 3, 제10조의 2).

또한, 징벌의 집행 중 금지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행형법은 징벌실에 수용하고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접견, 수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반면, 군행형법은 독방에 수용하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수용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92조 3항/ 군행형법시행령, 제145조 2항) 이외에 행형법은 수용자가 금지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수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45조 4항).

징벌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동일하나 행형법은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 임명,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해, 군행형법은 장교 임명으로 정하고 있다(행형법, 제47조 2항/ 군행형법, 제45조 3항). 이외에 행형법은 징벌의결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2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집행을 유예하고, 규율위반행위 없이 경과한 때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행형법, 제48조의 2항).

11장 가석방

가석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행형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군행형법은 위원장 포함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위원장은 소장, 위원은

군법무관과 헌병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행형법, 제47조/ 군행형법, 제50조)

12장 석방

석방에 관해서는 행형법과 군행형법의 차이가 없다.

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시체처리

사형집행 및 사망, 시체처리에 대해서는 행형법과 군행형법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형의 집행장소를 행형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의 사형장에 한정하고 있으나, 군행형법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행형법, 제57조 1항/군행형법, 제54조 1항). 이외에 군행형법은 사형집행시 검찰관이 수형자의 유언을 기록하여 날인한 후 이를 그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108조 2항).

14장 미결수용

미결수용에서는 변호인과의 서신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다. 군행형법은 변호인과의 면회조항만 있으나(군행형법, 제62조), 행형법은 변호인과의 서신조항을 두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검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행형법, 제66조). 한편, 군행형법은 교도소등의 수용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이 내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용자를 미결수용실 또는 헌병대 영창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군행형법시행령, 제117조).

3. 평가 및 개선

전반적으로 볼 때 군행형법과 행형법간의 큰 차이는 없다. 이는 군행형법이 1967년에 제정된 후 32년이 지난 1999년에야 비로소 내용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수 차례 개정, 보완된 행형법을 참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구금시설의 지휘와

감독이 군에 있으며, 수용자가 범죄자이기 이전에 군인이라는 점, 군조직 내의 특정한 범죄가 많으며 석방이후 다시 군대로 복귀한다는 점등으로 인해 행형제도 뿐만 아니라 그 실행에 있어서도 행형법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법령간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지적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1)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의 시청을 수용자에게 한정시켜놓았다는 점, 2) 수용자의 신문구매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3)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4) 서신검열의 경우 변호사와의 서신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5) 면회 및 서신횟수가 행형법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점, 6) 징벌목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7) 동일한 징벌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사항 중 1)은 미결수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와 3), 5)은 외부와의 교통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용자의 사회화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고 횟수 또한 늘어나야 할 것이다. 3)과 4)는 교도소 외부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6)과 7)은 명문에 규정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수용자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면회와 서신,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법령에서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도소장등 수형시설 측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가와 제한 시 법령을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VIII. 총평 및 개선 권고 사항

본 연구는 군대 내 유일한 기결 구금시설인 육군교도소와 각 부대에 산재한 미결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최초의 인권실태조사이다. 현재 군대 내의 미결 구금 시설은 국방부 1, 육군 66, 해군 12, 공군 18 등 총 97개소로, 군은 육군교도소를 합쳐 모두 98개소의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방문조사와 아울러 과거 군대 내 구금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모두 413문항을 담은 70여 쪽의 방대한 설문지(별첨)에 대해 87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이들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산훈련소 등 신병교육대가 있는 각 군단, 사단의 영창을 거쳐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설문 이외에도 본 연구팀은 영창과 육군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들과의 심층면접조사,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에 대한 인터뷰, 헌병 근무 사병 및 장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본 연구팀이 처음 실태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군대 내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의 인권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일 것으로 생각했었다.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을 통해 군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민간에서도 구금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인지라, 본 연구팀은 군과 구금시설이라는 사각지대가 중첩된 군대 내 구금시설을 2중의 인권사각지대가 아닐까 의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군대 내의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나 시설은 민간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비해 시설과 관리실태가 비교적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방문조사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2002년 현재의 시설과 수용자들의 처우는 1995-2000년의 상황을 담은 설문조사 내용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군대 내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헌병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군당국은 과거 ‘남한산성’이라 불리는 육군교도소와 그 밖의 미결수용시설의 음

습한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육군 교도소와 본 연구팀이 방문한 부대의 헌병대들은 모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연구팀의 조사에 협조했으며, 본 연구팀이 보고자 하는 시설을 보여주었고, 지목하는 수용자들을 헌병이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편, 신세대 사병들의 의식변화도 군 당국으로 하여금 군대 전반과 구금시설의 인권과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과거 일단 군에 입대하여 집총거부를 한 뒤 항명죄로 처벌받았는데, 2001년 중반부터 방침을 바꾸어 군에 입대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하여 민간법정에서 처벌받게 된 것도 군대 내 구금시설, 특히 육군교도소의 과밀상태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방침이 바뀌기 직전인 2000년의 경우 663명이 항명죄로 각종 군 구금시설에서 수용되었었다. 헌병 당국이나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헌병 개인들도 수백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됨에 따라 업무부담을 덜게 되고, 수용자들을 대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평 부분에서는 미결과 기결 구금시설의 실태를 요약하는 대신,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군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실태를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참고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한다. 개선 사항은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헌병 당국의 범위를 넘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 문제들도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군 본부, 또는 국방부 차원에서 인력 및 예산 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1.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

1) 운동과 일광욕

군행형법 시행령 제65조 수용자의 운동 조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

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외운동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방문조사에서도 7사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운동이나 일광욕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물론 수용자들을 매일 1시간 씩 실외운동을 시키려면 헌병들의 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각 영창마다 대부분 높은 담장이 쳐진 조그만 운동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팀이 방문한 지상 2개소, 지하 1개소의 영창은 모두 자연 채광이 전혀 안되고, 창문도 아주 작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용자들을 장기간 실내에 가두어 두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극히 해롭다. 군행형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매일 1시간의 실외운동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개인 생활용품 지급

군행형법 시행령 제54조 3항에 따르면 “소장(미결수용실 설치부대의 장 포함)은 수용자에게 화장지·칫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징계입장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헌병대로 이첩되는 미결수용자들의 경우 개인 소모품은 대부분 자대에서 지급받은 물품을 동료들이 챙겨주는 것을 영창에 들어 온 뒤 전달받게 된다. 만약 자대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월 1회 지급되는 소모품이 거의 떨어질 무렵에 영창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사병은 소모품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용자들이 화장지 부족으로 인해 겨우 4칸의 화장지로 대변을 처리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큰 불편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고 답변했다. 영창에 수감된 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소모품을 자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이 부족해 하는 물품, 특히 화장지를 헌병대에서 보충적으로 공급해 주는 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군당국도 물품 배정에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개인 관물대 설치

이론적으로 미결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될 수 있는 사람은 1) 잔여 형기 2개월 미만의 기결수, 2) 미결수, 3) 징계입창자, 4) 수사 중인 피의자 등 4종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 개인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여타의 경우는 영창 사방 내에서의 개인 물품 소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창에는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관물대가 없고, 물품의 소지도 일과표 상의 독서 시간에 독서 중인 책을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물품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팀의 방문조사 결과 일부 영창은 개인 칫솔을 밖에서 안보이도록 철창 이음새 부분에 끼워 놓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창에서는 칫솔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을 개인이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영창은 사방밖에 개인소지품을 보관하는 보관함을 두고 세면도구, 속옷을 비롯한 개인물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물품을 보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하여 설문조사응답자들은 세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자기 칫솔을 찾을 수 없어 다른 사람 것으로 양치를 해야 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많은 수용자가 하나의 수건으로 세면을 하여 늘 젖은 수건을 사용하여 불쾌했다거나, 여러 명이 1개의 면도기를 돌려가며 사용하여 비위생적이었다는 대답이 많았다. 안전 면도기의 경우도 칼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지의 허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칫솔과 수건, 속옷을 개인이 소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육군교도소의 경우 개인 관물대가 설치되어 있어 미결수들도 기결수와 마찬가지로 개인물품을 사방 내에서 소지하고 있다.

징계입창자의 경우는 법률 상 그 신분이 미결수용자보다 못할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개인생활용품의 소지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영창 내에 개인관물대가 설치될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영창 시설의 협소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년 9월 현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육군의 44개 영창(총 66개소)을 보면 최대 수용인원은 2,594명, 적정 수용인원은 1,575명인데 반하여 현재 수용인원은 319명으로 시설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이상 군 영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바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방 내에 개인용품 비치할 위한 관물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는 없

을 것이다.

4) 감시 카메라의 설치

수감 시설에서 감시 카메라의 설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다.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반대 논거는 감시 카메라가 수감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2002년도 구금시설실태 조사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며,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뒤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현재 교도소 당국이 임의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감시카메라는 군 교도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도 인천구치소 등 신설 구금시설에는 감방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라며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면이 창살로 되어 있어 모든 행동이 감시헌병에게 노출되어 있는 군대 내 구금시설의 특성 상 감시카메라의 설치로 인해 수용자들의 사생활이 더 침해받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감시 카메라의 설치는 근무 헌병에 대한 감시를 동반하게 되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 군대 내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는 거의 대부분 근무헌병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근무헌병들의 가혹행위로부터 수용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해병 2사단을 방문했을 때 영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부대의 감시 카메라는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2002년 해병 1사단에서 발생한 근무헌병에 의한 수용자 상해사건 이후 감시카메라가 확대설치되어 당직실 뿐 아니라 부대장실, 작전과장실에서든 언제든 원하는 부분을 비출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당해 부대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확대설치한 것은 1사단에서의 불상사 이후라면서, 수용자에 대한 감시효과보다는 영창근무자들의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치 목적을 설명했다. 영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근무헌병들의 수용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예방

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법전 및 군법 교육자료 비치의 의무화

본 연구팀이 방문한 육군교도소와 헌병대 영창의 경우 어느 곳도 군법에 관한 자료나 법전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갖게 마련인데, 이런 절차에 대한 설명은 군수사관들에 의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 절차, 미결수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례화함과 아울러,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전, 재판절차에 대한 해설서, 군법 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6) 침구의 일광소독과 세탁물 건조기 설치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침구의 일광소독이 보다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결구금시설의 채광과 통풍이 열악하기 때문에 헌병 당국은 이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세탁을 할 경우 건조시키는 것이 습한 여름은 여름대로, 추운 겨울은 겨울대로 큰 문제이다. 세탁의 경우 충분한 시간만 보장해 준다면 수용자들이 화장실이나 세면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세탁물의 건조는 그럴 수 없다. 영창 별로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TV 및 라디오 시청 / 신문 구독

군행형법 시행령 제75조 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 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군대 내 구금시설, 특히 미결수용시설에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 군행형법이나 군행형법 시행령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행형법 33조는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텔레비전의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신문의 구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대답했다. 군 당국은 수용자들이 수용될 때 원칙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행형법 시행령 75조 2항은 “소장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또는 신문 구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8) 개인용 또는 거실별 책상의 지급

32사단 영창의 경우 개인들에게 작은 앉은뱅이 책상을 지급하고 있었고, 육군교도소의 경우 일부 사방에 거실별 책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책상이 지급될 경우 수용자들의 독서와 수양록, 편지 작성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경우 정좌 상태에서 책을 한 손에 들고 읽어야 하는 것이 고문 못지 않게 고통스러웠다고 답한 것을 볼 때 거실 별로 공동책상이 지급될 수 있다면 수용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9) 추위

각 영창의 난방 시설은 시설 자체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나타나 바로는 추위를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영창을 관리하는 헌병 당국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난방을 틀어주고 있고, 난방을 틀 경우 실내온도는 각 영창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18도에서 최고 25도로 수용자들이 크게 추위를 느낄만한 온도는 아니다. 그러나 전방의 경우 9월하순이면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지고, 봄에도 4월까지 추운 날이 많은 데다가, 수용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준한기에 기상 여건을 보아 난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육군교도소의 경우 준한기와 혹한기를 나누어 준한기에는 6시간, 혹한기에는 8시간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 8시간만 난방을 가동할 경우 야간에 심한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

10) 화장실 개선

군대 내 구금시설의 화장실은 모두 수세식으로 시설면에서는 아직도 일부 재래식 화장실이 남아 있는 민간 교도소에 비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의 결정(2000헌마546)에 따라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군대 내 구금시설의 화장실들은 모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창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해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같이 수용된 다른 수용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자들의 동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장실을 수용실 내에 두어 수용자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수용실 밖으로 드나들 필요가 없도록 하고, 어느 정도 수용실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폐시설이 간신히 하반신을 가릴 정도로 낮다 보니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고, 용변 중의 소리와 냄새가 그대로 수용실 내로 전달되게 되어 용변을 보는 사람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됨은 물론, 다른 수용자들도 역겨운 냄새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장실 이용에 과도한 통제가 따르는 데다가, 모욕감과 불쾌감으로 인해 배변이 자유롭지 못해 변비로 고생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낮은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밖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화장실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군대 내 구금시설의 화장실 역시 이 정신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즉 화장실의 차폐시설의 상단부에 냄새와 소리를 차단하고 용변을 보는 사람이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덜 들도록 반투명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수용실내의 화장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고, 여기에 창문 또는 환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쪼그려 앉는 형태의 수세식 변기는 냄새가 심하게 나므로 좌변기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헌병 당국의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의 개선 권고 사항

현재 군대 내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병 당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군 당국,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 차원에서 군대 내 구금시설의 특수성과 인권의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근무헌병에 의한 가혹행위 문제와 그 대책

민간교도소의 경우 재소자 상호 간의 가혹행위나 금품갈취 등이 아직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군대 내 구금시설의 경우 이 문제는 민간교도소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어 있다. 군대 내 구금시설에 조직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이 수용되는 경우도 적고, 헌병들이 수용자들을 밀착감시하고 있고, 수용자들이 대체로 헌병들의 통제에 순응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군인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 상호 간의 가혹행위나 금품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상당히 적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금 그 자체 이외에 영창 내에서의 생활을 힘들게 만든 요인은 대부분 근무헌병들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과거 헌병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각을 잡는’ 정좌를 오래 시키거나, 정좌 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폭언과 폭행을 하고 단체 기합을 주기도 했으며, 운동(특히 PT체조)을 과도하게 시키거나, 세면이나 용변시간을 짧게 주는 등으로 수용자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또 화장실 이용 시 보고를 할 때 정해진 보고방식에서 한 글자만 틀리게 이야기해도 화장실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화장실 내에서 숫자를 세게 하거나, 팔을 들고 있게 하는 등 엄격한 보고와 과도한 감시를 강요하기도 했다. 많은 응답자들은 헌병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거나 불편할 때 이를 말할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응답했다. 실 내에서 몸을 풀 때에도 운동인지 기합인지 모를 정도로 수용자를 괴롭히는 헌병도 있었다고 한다. 또 배식 때에도 식사시간의 강압적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헌병의 기분에 따라 일부러 많은 양을 주어 밥을 남기지 못하게 하거나 적은 양을 주기도

했는데, 적다고 불평하면 양을 늘리고 절대로 못 남기게 하기도 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당국의 소원수리 후에는 근무 헌병의 태도에 대해 어떤 불만이 나온 경우 보복이 뒤따랐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무 헌병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분은 수용자들의 생활을 좌우하게 마련이다. 본 연구팀의 방문조사나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들어 근무 헌병들의 수용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나 폭언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해병 2사단의 경우 2001년 해병 1사단 헌병대 영창에서 발생한 근무헌병의 수용자에 대한 폭행상해로 2명이 구속된 이후 감시카메라가 확대설치되었고, 헌병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헌병 당국의 꾸준한 관심과 감독도 근무헌병들의 수용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과밀 수용 문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근무헌병의 업무부담과 긴장감도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헌병들이 수용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또한 근무 헌병과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병들을 포함한 신세대 장병 일반의 개인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의식 신장 역시 근무헌병들의 가혹행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근무헌병들은 혹시라도 수용자들이 규율을 어기거나 통제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대신에 간부들에게 보고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고는 하나 일과 시간 이후에도 근무헌병들은 수용자들과 밀착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무리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없다. 앞에 서술한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근무헌병의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나, 영창 내에 여전히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간부들이 24시간 감시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앞으로도 수용자들 생활의 많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근무헌병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근무헌병들이 군복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짜증과 스트레스를 수용자들에게 푸는 일이 없도록 근무헌병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인원 증원, 영창 근무자들에 대해 휴가, 외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현병들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영창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 조사 결과 육군의 경우는 근무 편성 시에 영창근무를 군기 순찰이나 보조 근무 등 다른 근무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반면, 해병대는 영창 근무 사병을 별도로 선정하여 6개월 간 고정적으로 영창 근무에 투입하고 있다. 해병대의 경우가 영창 근무현병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뜩이나 현병 사병들이 별도의 교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창 근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군대 내 구금시설이지만,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다수가 육군교도소와 현병대 영창을 천국과 지옥으로 대비한 것은 육군교도소의 시설이 영창에 비해 좋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다른 업무부담 없이 교도업무에만 종사하는 육군교도소의 현병들이 보다 여유를 갖고 수용자들을 대할 수 있고, 또한 간부들도 교도업무에 집중하면서 근무현병들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현병대 영창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영창 근무현병들이 육군교도소처럼 근무현병들이 수용자들에 대해 존대어를 쓰도록 하는 것도 영창 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즉결심판 제도의 확대와 징계입창의 폐지

군대 내에서 법관의 결정 없이 1년에 1만명 안팎의 사병들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모든 구금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사병들의 경우 징계항고권이 있지만, 징계를 받은 2만3천여 명의 사병 중 징계항고 절차를 밟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 그 부대에 근무해야 하는 사병이 징계항고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병이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기대할 수 없다. 징계항고 절차를 밟은 사병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전출된 사병은 ‘사고뭉치’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중대장급 지휘관의 결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법관의 결정을 거치

지 않고 제약하는 행위는 백보를 양보하여 군대 내에 특수권력관계가 적용된다고 해도 - 특수권력관계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나치 시대의 낡은 이론으로 그 타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 명백히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사병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보니 근신, 강등 등 다른 징계별이 효력을 가질 수 없고, 2만원도 안되는 월급에서 감봉은 생각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사병의 징계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영창처분은 80% 내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영창처분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그 대신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즉결심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구금행위를 법관의 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단 지휘권 보장의 차원에서 관할 헌병대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즉결심판 요청 권한을 지휘관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징계입장자들은 행형법 상의 미결수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법률적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면회, TV 시청, 신문 구독 등의 권리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 문제는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영창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병역법 18조 3항도 영창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본 조사팀의 설문조사가 갖는 중요한 한계는 사병들의 징계입장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대 내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본 조사팀은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들의 상황 파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산훈련소, 보충대 또는 신병교육대에서 영창으로 직행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준비하다보니 징계입장자들이 어떤 이유와 절차를 거쳐 영창 처분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매년 1개 사단 병력과 유사한 규모의 사병들이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는 현실만큼 사병들의 열악한 처지를 응변해 주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징계입장되는 사병들이 영창에 들어온 뒤에 겪게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매년 1만명 안팎의 사병들이 단순한 징계로 영창을 거쳐가게 된다는 현실이다. 군대 내 구금시설의 실태 조사 결과 이 문제만큼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들의 징계입장의 사유, 절차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징계입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사병 전반의 인권신장과 처우 개선

현재 군대 내 구급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과 처우는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우려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팀이 면담한 헌병간부들 대부분이 수용자들의 처우가 너무 편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병들이나 근무 헌병들이 힘든 교육훈련을 받고 추운 겨울밤에 영외 근무를 서는 데, 수용자들이 실내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밥도 타다주어야 하니, 수용자들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기 부하들 보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근무헌병들도 불만을 표한다는 것이다.

시설의 면을 보더라도 헌병대 영창은 대부분 90년대에 개축된 비교적 새 건물이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방부대의 사병 막사는 70년대의 낡은 건물에 화장실도 채래식인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 본 조사팀은 헌병대 방문시 헌병들의 내무반도 둘러보았는데, 본 조사팀의 방문 2주전에 새 건물을 완공한 해병 2사단은 내무반 시설이 좋았지만, 다른 두 곳의 경우 채광이 잘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창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영창은 현재 과밀수용의 문제가 없으나, 사병들의 내무반은 아주 비좁아 보였다. 육군의 1인당 내무실 면적은 2.32㎡로 주한미군 10.07㎡/인, 일본 자위대 10㎡/인에 비해 1/4수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시설 기준인 4.9㎡과 비교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사병들의 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구급시설을 관리하는 헌병당국은 구급시설의 현수준을 피구급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적인, 또는 행정법 상의 기준보다는 현재의 사병들의 열악한 처지와 비교하게 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사병들의 열악한 복지와 처우가 개선되어야 군대 내 구급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4) 군 사법제도의 개혁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군대 내 구급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팀의 기본과제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구급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사법제도

와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 군사법원의 설치 단위

현재 사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과 구금시설을 1994년도와 같이 군단급 부대로 환원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군대 내 미결구금시설은 모두 97개소에 달한다. 이들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 9월 현재 육군은 총 66개소의 영창 중 자료를 제출한 44개소의 영창에 319명, 해군은 12개 영창에 56명이 각각 수용되어 있고, 공군은 2002년 8월 30일까지 18개 영창에 누계 196명이 수감된 바 있다. 육군의 경우 22개소의 영창의 수감인원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공군의 경우 집계방식이 달라 2002년 9월 시점의 전체 수감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료가 누락된 육군 직할부대와 국방부 직할 부대의 경우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징계입창자를 포함해도 500명 이내일 것이다. 500명 내외의 수용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97개소의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 구금시설의 경우, 과밀수용이 큰 문제이지만, 군대 내 구금시설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시설이 각급 부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설치 단위를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올린다면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업무 부담 경감 및 효율화, 구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구금시설 근무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교도프로그램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관련 법령의 정비

민간의 행형 관련 법령과 군의 행형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행형법시행규칙 등은 대개의 경우 유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하여 민간 행형법은 기결수와 미결수용자를 모두 포함한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행형법 33조의 2, 행형법 시행령 114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행형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군행형법 시행령에는 소장이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수형자”, 즉 기결수용자로 못박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가 기결수에 비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에 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형법 33조는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에서는 신문의 자비구독이 기결수와 미결수용자를 가리지 않고 허용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근거가 되는 법규도 없을 뿐 아니라 - 군행형법 30조는 도서의 열람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 실제로도 군에서 발행되는 국방일보 이외의 신문구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과 군을 통틀어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한에서 소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이 부과되어 있다. 일례로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민간의 행형법 시행령 제114조는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행형법 시행령 제75조는 “①소장은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소장에게는 수용자(군의 경우는 기결수용자)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제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시청이 수용자들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소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명목 하에 얼마든지 수용자들의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서의 열람과 관련하여 군행형법 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 상 수용자의 권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도 이와 유사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다. 수사 중의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법무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확립 및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란다원칙 및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거나, 가혹행위 등에 의해 이루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원칙이 당연히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헌병의 수사권이 독립되어 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지 않다. 헌병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간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의 하나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보장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있는 헌병 당국으로서도 이 문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헌병에서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외부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경우 헌병의 수사권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병들이 영내 거주를 하고 있는 군의 특성 상, 사병들이 헌병대에 체포될 경우 가족들은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기 힘들다. 현재 군 당국은 서면으로 가족들에게 통보해주고 있는데, 피의자의 방어권이 신속히 행사되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체포의 초기단계에 변호사의 신속한 접견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화 등 보다 신속한 수단을 통해 가족들에게 피의자의 체포사실이 통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 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면, 피의자의 신병도 법무부로 넘어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군의 경우는 헌병에서 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어도 피의자의 신병은 여전히 헌병이 관리하는 헌병대 영창에 머무르게 된다. 민간의 경우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강압수

사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여도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불러갈 우려는 없다. 그러나 군의 경우 사건이 군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피의자가 계속 헌병대 영창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행한 강제자백을 군검찰에서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현재 헌병대가 담당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사실관계가 명확한 단순폭행, 군무이탈,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기 때문에 헌병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압적인 자백 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7사단 총기도난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강압수사나 가혹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피의자의 신병이 사건이 군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계속 헌병대 영창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군대 내의 미결 수용시설이 97개소에 이르고, 군사법원이 사단급 부대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군검찰이 민간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구금시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하고,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헌병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사법원법 상의 구속기간의 연장 문제도 법률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 형사소송법 제 205조 1항은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군사법원법 제242조 1항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주체를 검찰관 뿐 아니라 군사법경찰관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폭력, 군무이탈, 교통사고 관련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들인데도 모든 사건에 대해 헌병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외부교통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제19조 1항에서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꼽힌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사건의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에게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 역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수양록/반성문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현재 군대 내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서 저녁시간에 수양록이라는 명목 하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과이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 분산성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화프로그램을 갖출 수 없는 미결 수용시설의 경우, 수양록 작성은 유일한 교화의 수단일 것이다. 헌병들도 수양록 작성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기 자신이 일순간 범한 과오를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양록 작성이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강제적으로 수양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헌병들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검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미결수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본인이 잘못이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들의 경우 수양록 작성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수양록에 근무헌병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기술한 경우 헌병으로부터 보복적인 가혹행위를 당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2년 해병 1사단에서 일어난 상해 사건을 보면 근무헌병 2명이 수용자가 ‘반성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반성문에 근무헌병에 불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해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혀 처벌을 받았다. 수양록 작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군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권리 및 처우에 대한 기준 마련

군 구금시설 수용자들, 특히 아무런 규정이 없는 징계입장자들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서면으로 구금시설에 수용될 때 수용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자 자신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며, 면회, 서신, 독서, TV 시청, 신문 및 잡지 구독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본인이 휴대하고, 또 영창 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97개 미결수용시설을 포함한 전체 구금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본 조사팀이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본 조사팀도 군대 내의 미결구금시설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군이 얼마만큼 군대 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조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였다. 때문에 본 조사팀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군대 내 구금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준비할 수 없었고, 그 대안으로 신병교육대가 설치된 각급 부대의 영창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본 조사팀의 설문조사에 응해 준 여호와의 증인들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영창에 수용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분석도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본 조사팀의 방문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은 최근들어 헌병 당국의 노력,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헌병들과 수용자들을 포함한 사병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 여호와의 증인들의 방침 변화로 인한 군대 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 등에 힘입어 상당히 개선을 보았다. 이 때문에 현재의 개선된 처우상황 속에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서는 육군교도소와 97개 미결 구금시설 전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군 당국으로서도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일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한산성’이나 군대 영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히 방문조사과정에서 헌병당국이 보여 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이런 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자현, 「군대내 기합과 이에 대한 사병의 반응통계」, 『한국심리학회지 2, 4』, 1979.
- 권희명·정주성,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국방논집11』, 1990.
- 권희면, 「현역병의 적정복무기간 도출 연구」, 『국방논집26』, 1994.
- 김기준, 「병에 대한 징계 및 그 유사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법연구 13』, 1996.
- 김노운,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정책과정우수논문집 제7집 I』, 국방대학교, 2001.
- 김정규, 「육군교도소 기능교육 실시현황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김병조, 「한국 병역제도의 특성 : 비교사회학적 분석」, 『교수논총 제24집』, 국방대학교, 2002.
- 김용준, 「기·미결수용자의 처우상 구별」, 『교정 278』, 1999.
- 김정진, 「무사고 부대 육성, 관리에 대한 제언 : 육군 교도 소 실태조사 연구를 기준으로」, 『육군 244호』, 2000.
- 박계향, 「탈바꿈하는 군의 병영문화 : 병사들에게 병영생활은 무엇인가」, 『군사세계 53』, 1999.
- 박재윤·김혜정, 「과잉미결구금의 해소방향」 『국민대법학논총 13』, 2001.
- 법무부, 『법무연감』, 2002.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1」, 2001.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1993.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편,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 서울지방법변호사회, 2002.
- 심희기,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의 실태와 문제점」, 『경원대법학논총 2』, 1995.
- 안영락·정창인, 「형평과 효율의 향상을 위한 병력충원 정책대안의 탐색」, 『육사논문집44』, 1993.

오준수,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군형법의 문제점 소고」, 『군사법논문집14』, 1995.

오창근, 「교도행정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제15권 제1호』, 전북행정학회, 2001.

이상석, 『군법과 군사재판』, 청림출판, 1994.

이주현, 「군내 구타사고 근절을 위한 소고」, 『군사법논문집 제8회』, 공군본부법무감실, 1989.

인권운동사랑방 외, 『한국감옥의 현실』, 도서출판 사람생각, 1998.

장영달,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실태와 인식(2002 정기국회 여론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2002.

조구호, 「교도지원 향상방안」, 『군사발전 50』, 19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 2001.

한인섭,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 『법과사회3』, 1990.

한인섭,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 법학 110호』, 1999.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I,II(군사법원 소관)」, 국방부, 2002.

※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파악

설 문 지

미결/기결 수용시설 출소자 대상

2002. 8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파악

응답자 인적사항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사업인 <<군 구금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 파악>> 사업의 기초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하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입하신 이름/E-mail/전화번호/주소는 보충 인터뷰를 위한 것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빈 공간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입대일자			종교		
나이		혼인관계		입소전 직위	
입소 (미결수용시설)	부대 : () 년 월 일		출소 (미결수용시설)	부대 : () 년 월 일	
입소 교도소	년 월 일			년 월 일	
수용기간	미결수용시설(영창)-		개월		
	군 교도소 -		개월		
석방형태	미결상태에서 /집행유예/ 가석방/ 특사 불명예 제대후 민간교도소로 이감 형기 마친 후 자대 복귀 형기 마친후 자대 복귀(타부대 전출)				
죄명			형량		

*유의 사항

1. 설문에 대한 응답은 가능한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설문은 미결수용시설(군 영창)과 군 교도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2곳 이상을 경험하신 분은 각각 가장 오래 구금되었던 미결수용시설(영창)과 군 교도소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3. 답은 별도의 답안용지(50p)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그밖에 미결수용시설(영창)의 시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B. 감시

1. 당신이 수감되었던 미결수용시설(영창)을 관리하는 부대 규모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중대
- ② 소대
- ③ 분대
- ④ 헌병대 파견
- ⑤ 기타 ()

2. 감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장 교 : ()명, 직책명()
부사관 : ()명, 직책명()
사 병 : ()명, 직책명()

3. 감시 인원의 근무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1일 ()교대

4. 감방 내외부에 감방 안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5. 감시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① 복도 내 상주 감시
- ② CC카메라로만 감시
- ③ 1, 2의 병행
- ④ 기타()

C. 신체 위생

1. 목욕 혹은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주 2회 이상
- ② 주 1회
- ③ 2주 1회
- ④ 자주 하지 못했다

G. 도서, 신문 열독/운동 · 스포츠 및 오락

1. 당신이 있던 미결수용시설(영창)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가능했다면 어떻게 책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 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하거나 빌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② 영치된 책을 읽는 것은 가능했다
 - ③ 수용실 내 독서가 허용되지 않았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2. 도서 열독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3. 입창 후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구독했다면 어떤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 ① 구독했다 (신문이름 -)
 - ② 구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 ③ 구독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유 -)

4.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미결수용시설(영창)은 수감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 ① 비치하고 있었다
 - ②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5. 라디오 방송을 어느 때 틀어주었습니까?
 - ① 아침
 - ② 점심
 - ③ 저녁
 - ④ 취침 전
 - ⑤ 기타()

6. 라디오 방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가요방송
 - ② 스포츠 중계
 - ③ 라디오 뉴스(지난 것)
 - ④ 명상의 시간
 - ⑤ 기타

7. TV나 라디오의 채널 선택권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16. 그 밖에 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H. 의료

1. 미결수용시설(영창) 내에 의료시설과 군의관, 위생병이 있었습니까?(체크해 주십시오)

- ① 의료시설 ()
- ② 군의관 ()
- ③ 위생병 ()

2. 미결수용시설(영창) 입창 직후에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 ① 예 ②
- ② 아니오

3. 수감 중 의사(의무관)의 정기검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①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다 ②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있다
- ③ _____개월에 1회 정도 있었(던 것 같)다

4. 당신은 미결수용시설(영창)에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병명 - _____)
- ② 없다

5. 당신이 아팠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 ① 의무과에 가서 의무관(혹은 위생병)의 진료(약 조제 포함)을 받았다
- ② 위생병의 진료(약 조제 포함)를 받았다
- ③ 헌병의 진료(약 조제 포함)를 받았다
- ④ 사단 의무대 외진
- ⑤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 ⑥ 기타 (_____)

6. 사단 의무대 외진이나 군의관 진찰을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병명 - _____)
- ② 없다

7. 사단 의무대 외진이나 군의관 진찰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 ① 예
- ③ 아니오

8.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겨울에 보온통(유단뽕)을 지급받은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이유 -)

9. 미결수용시설(영창)의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I. 면회

1. 실제 면회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통 _____분 정도였으며, 많을 때는 _____분, 적을 때는 _____분이었다.

2. 면회 시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조금 아쉽지만 그런대로 부족하지는 않다
- ③ 부족한 편이며, ()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결수용시설(영창)에서 면회객을 제한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면회시켜 주었습니까?

- ① 가족에 한정되었다
- ② 가족과 함께 오는 친척에 한정되었다
- ③ 가족, 친척 및 가족과 함께 오는 친지에 한정되었다
- ④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아도 가족이 전화로 신분만 확인해주면 친지도 면회할 수 있었다
- ⑤ 공범이 아니거나 출소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사람이면 누구나 면회 할 수 있었다
- ⑥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면회할 수 있었다

4. 미결수용시설(영창) 내 면회실이 따로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5. 없었다면, 주로 어느 장소에서 면회를 했습니까?

6. 면회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면회를 했을 경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까?

- ① 매우 자유로웠다
- ② 입회한 헌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웠다
- ③ 입회한 헌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자유스러웠다
- ④ 매우 부자유스러웠다

7. 당신은 면회객과 대화할 때 입회한 헌병으로부터 제지당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 ② 한두 번 있었다
- ③ 대화 내용을 조심했기 때문에 한번도 없었다
- ④ 거리낌 없이 대화했지만 한번도 제지 당하지 않았다

8. 제지 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당했습니까?

- ① 면회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 ② 헌병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주의를 준 뒤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 ③ 대화 도중에 가벼운 주의를 받았다
- ④ 기타 ()

9. 제지 당했다면 어떤 대화 내용 때문이었습니까?

- ① 당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
- ② 미결수용시설(영창) 내부 사정에 관한 이야기
- ③ 면회객과 다투었을 때
- ④ 정치나 이념에 관한 이야기
- ⑤ 경찰관, 검사, 교도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
- ⑥ 기타 ()

10. 수감중 면회가 금지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와 금지 당한 기간은?

- ① 있다 (금지기간 - 금지사유 -)
- ② 없다

11. 면회에 대하여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은?

J. 편지

1. 편지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써야 했습니까?

- ① 그렇다 (장소 -)
(시간 -)
- ② 정해진 곳에서 써야 했지만 (장소 -)
일과 시간이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다
- ③ 장소도 시간도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상 묵인되어, 일과시간 외에 감방에서도 썼다

11.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미결수용시설(영창)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줍니까?

- ① 정식으로 알려준다
- ② 비공식으로 알려준다
- ③ 알려주지 않는다
- ④ 비공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12.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폐기처분
- ② 영치 (출소할 때 가지고 나간다)
- ③ 기타 ()

13.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미결수용시설(영창)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준 일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 ② 가끔 있었다
- ③ 한두 번 있었다
- ④ 한번도 없었다
- ⑤ 모른다

14.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

15.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당신이 쓴 편지가 외부 사람에게 도착할 때까지, 약_____일
외부 사람의 편지가 당신에게 배달될 때까지, 약_____일

16. 편지문제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K. 처벌/징벌/가혹행위

1. 미결수용시설(영창) 내에서 구타나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 ② 간혹 있었다
- ③ 거의 없었다
- ④ 전혀 없었다

2.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와 방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11. 개인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있다면 그 처벌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① 감방 내
 ② 수용시설 전체
13. 수용자간에 군기잡기를 포함한 가혹행위가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간혹 있다.
 ③ 없다.
14.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복신청제도외의 방법으로 저항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는, 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15. 있었다면, 어떤 부당한 처우였습니까?
16. 있었다면, 저항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17. 있었다면, 저항이 집단적이었습니까? 개별적이었습니까?
 ① 집단적이었다.
 ② 개별적이었다.
18. 저항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어떠했습니까?
19. 수사 중 가혹행위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20. 있었다면, 어떤 가혹행위였습니까?
21. 수사 중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자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L. 교육/교화/작업

1. 미결수용시설(영창) 내에서 영내외 사역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 ② 간혹 있었다
- ③ 없었다

2. 구금 중 군사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 ② 간혹 실시되었다.
- ③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 ④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3. 실시되었다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 ① 집총(모형총기 포함) 훈련
- ② 제식훈련
- ③ 학과교육
- ④ 정훈교육
- ⑤ 기타 ()

4. 군사교육의 경우 자대와 비교해서 그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 ① 더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
- ② 비슷했다
- ③ 낮은 편이었다

M. 수형자 권리/불복신청/청원/소원수리

1. 수용과 동시에 헌병으로부터 청원제도(처우개선요구)나 불복신청권, 소원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 수용과 동시에 헌병으로부터 수용시설 내 적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일과, 규율, 처우, 시설물 이용법 등)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적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3.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이나 불복신청, 소원수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그런 제도에 대해 들은바 없다
4. 불복신청, 소원수리에 따른 보복적 처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있다면 어떤 처우를 받았습니까?
6. 청원이나 불복신청, 소원수리시 헌병들로부터 사전 지침을 받거나, 또는 못하도록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구속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기회는 충분히 주어졌습니까?
 ① 충분했다
 ②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했다
 ③ 부족했다
 ④ 없었다
9.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시간은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시간/분)
10.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 전에 헌병으로부터 미리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N. 종교

1. 당신은 교회신청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교회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 ① 부대내 종교시설
- ② 감방내
- ③ 인근부대
- ④ 민간 종교시설
- ⑤ 기타

3. 교회신청서 제한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 교회신청이 제한받았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까?

- ① 알려주었다.
- ② 알려주지 않았다.

5. 알려주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0.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처음 연행되어 조사 받은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 ① 기무부대
- ② 헌병대
- ③ 기타 ()

2. (위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기간 중 구금되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 ① 기무부대 내 영창
- ② 헌병대 영창
- ③ 기타 ()

3. 조사과정에서 상급부대나 다른 부대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4. (위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어느 부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는지 경과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기결수용시설(군교도소)

A.수용시설

1. 당신이 수용되었던 감방의 (화장실을 포함한) 면적은 몇 평이었습니까?
또한 그 감방에 수용된 인원은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_____교도(구치)소 _____동 _____방은
약 _____(평, ㎡) 이었으며, _____명 정도가 수용되었다.
2. 전기불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감방의 밝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책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② 책 보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책 보는데 지장이 많다
3. 감방의 환기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환기가 잘되어 실내 공기가 맑았다 ② 보통이다
③ 환기가 되지 않아 실내 공기가 탁했다
4. 감방 화장실은 위생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위생적 ② 보통
③ 비위생적 ④ 매우 비위생적
5. 그밖에 화장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6. 여름 감방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
② 더웠다
③ 그러저럭 견딜만 했다
④ 시원했다
7. 감방 내 냉방장치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있었다면? _____)
② 없었다
8. 겨울 감방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① 몹시 추웠다 ② 추웠다
③ 추웠지만 견딜 만했다 ④ 따뜻했다

6. 머리는 자유롭게 조발했습니까? 아니면 짧게 깎아야 했습니까?

- ① 자유롭게 조발
- ② 짧게 깎았으며 앞머리는 _____ 이하

7. 면도는 며칠마다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언제든지
- ② 1주에 1회
- ③ 2주에 1회
- ④ 기타 ()

8. 그밖에 신체 위생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C. 의류 및 침구

1. 관에서 지급되는 옷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 ① 너무 얇아서 몹시 춥다
- ② 약간 춥다
- ③ 적당하다
- ④ 거추장스럽고 덥다

2. 겨울에 어떤 침구가 지급됩니까?

- ① 모포 (1인당 장)
- ② 솜이불 (인당 1장)
- ③ 매트리스 (1인당 장)
- ④ 기타 ()

3. 겨울용 침구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 ① 부족하며 춥다
- ② 적당하다
- ③ 충분하며 전혀 춥지 않다

4. 겨울옷과 침구는 언제 지급되며, 그 시기는 적당합니까?

- _____월_____일 쯤에 지급되며,
- ① 너무 이르다
 - ② 적당하다
 - ③ 너무 늦다

5. 지급되는 겨울용 침구의 위생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비위생적이며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
- ② 냄새가 많이 나지만 견딜 만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위생적이며 쾌적하다

6. 관급 혹은 자변 침구와 의류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식수 섭취를 제한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 식사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F. 운동 · 스포츠 및 오락

1.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 ① 15분 이내
- ② 30분 이내
- ③ 1시간 이내

2. 당신이 있던 군 교도소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 ① 있다. 운동시설 - ()
운동기구 - ()
- ② 없다

3. 당신이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군 교도소에서 바둑과 장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5. 영화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① 일년에 _____번 정도 구경할 수 있었다.
- ② 가끔 구경한 일이 있다
- ③ 한두 번 구경한 일이 있다
- ④ 한번도 구경하지 못했다

6. 라디오 방송을 어느 때 틀어주었습니까?

- ① 아침
- ② 점심
- ③ 저녁
- ④ 취침 전
- ⑤ 기타

7. TV나 라디오의 채널 선택권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8. 군 교도소에서 TV 시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① 매주 _____요일에 _____시간씩 정기적으로 했다
 ② 부정기적으로 자주 했다
 ③ 부정기적으로 가끔 한 일이 있다
 ④ 시청한 일이 없다
9. 이 외에 군 교도소에 어떤 오락거리가 있었습니까? 열거해 주십시오.
10. 그 밖에 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G. 의료

1. 군 교도소 입소 직후에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위 설문에서, 입소 직후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까?
 ① 키 재기
 ② 몸무게 측정
 ③ 시력 검사
 ④ 치아 검사
 ⑤ 소변 검사
 ⑥ 피 검사
 ⑦ 엑스-레이 촬영
 ⑧ 혈압 검사
 ⑨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
 ⑩ 기타 ()
3. 수감 중 의사(의무관)의 정기검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다
 ②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있다
 _____개월에 1회 정도 있었(던 것 같다)
4. 당신이 있던 군 교도소에는 치과 의사나 치과 전문 공중보건 의사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③ 모르겠다
5. 당신이 있던 군 교도소에는 약사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③ 모르겠다
6. 당신이 아파서 의무과에 가면 누가 진찰을 했습니까?
 ① 의무관
 ② 공중보건 의
 ③ 교도관
 ④ 재소자
 ⑤ 모르겠다

2. 면회 시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조금 아쉽지만 그런대로 부족하지는 않다
 - ③ 부족한 편이며, ()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3. 군 교도소에서 면회객을 제한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면회시켜 주었습니까?
- ① 가족에 한정되었다
 - ② 가족과 함께 오는 친척에 한정되었다
 - ③ 가족, 친척 및 가족과 함께 오는 친지에 한정되었다
 - ④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아도 가족이 전화로 신분만 확인해주면 친지도 면회할 수 있었다
 - ⑤ 공범이 아니거나 출소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사람이면 누구나 면회 할 수 있었다
 - ⑥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면회할 수 있었다
4. 어린이 혹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면회는 허가되었습니까?
- ① 허가되었다
 - ② 금지되었다
 - ③ 부분적으로 제한되었다(제한 내용 -)
 - ④ 시도해보지도 않았다
5. 면회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까?
- ① 매우 자유로웠다
 - ② 입회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웠다
 - ③ 입회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자유스러웠다
 - ④ 매우 부자유스러웠다
6. 당신은 면회객과 대화할 때 입회교도관으로부터 제지당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 ② 한두 번 있었다
 - ③ 대화 내용을 조심했기 때문에 한번도 없었다
 - ④ 거리낌 없이 대화했지만 한번도 제지당하지 않았다
7. 제지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당했습니까?
- ① 면회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 ② 교도관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주의를 준 뒤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 ③ 대화 도중에 가벼운 주의를 받았다
 - ④ 기타 ()

4.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당신이 쓴 편지가 불허되면 군 교도소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줍니까?
 ① 정식으로 알려준다
 ② 비공식으로 알려준다
 ③ 알려주지 않는다
 ④ 비공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6. 당신이 쓴 편지를 군 교도소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내보낸 일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② 몇 번 있었다
 ③ 한두 번 있었다 ④ 한번도 없었다
 ⑤ 모른다
7.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
8.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군 교도소 당국이 불허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
 ③ 한두 번 있었다 ④ 한번도 없었다
 ⑤ 모른다
9.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군 교도소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줍니까?
 ① 정식으로 알려준다
 ② 비공식으로 알려준다
 ③ 알려주지 않는다
 ④ 비공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11.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① 폐기처분 ② 영치 (출소할 때 가지고 나간다)
 ③ 기타 ()
12.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군 교도소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준 일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
 ③ 한두 번 있었다 ④ 한번도 없었다
 ⑤ 모른다
13.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
14. 편지문제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J. 도서 · 신문 열독 등

1. 당신이 있던 군 교도소에는 오락, 교양 및 전문 도서가 구비된 도서실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④ 모른다

2. 도서실이 있다면 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직접 도서실에 가서 책을 열람하거나 빌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② 사동과 공장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보고 정기적으로 책을 신청하면 갖다 주게 되어 있다
 - ③ 교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사동과 공장마다 책을 갖다 주면 그 중에서 골라 보게 되어 있다
 - ④ 담당 교도관에게 부탁하면 교도관이 교무과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다
 - ⑤ 정확한 이용방법은 모른다
 - ⑥ 기타 ()

3. 도서실의 이용은 쉽고 자유로웠습니까?
 - ① 비교적 쉽고 자유로웠다
 - ② 보통이다
 - ③ 비교적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
 - ④ 매우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
 - ⑤ 잘 모르겠다

4.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군 교도소는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재소자용으로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 ① 비치되어 있었으며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
 - ② 비치되어 있었지만 열람하기가 어려웠다
 - ③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 ④ 행형법이 뭔지 모른다

5. 외부에서 차입된 책이 불허된 일이 있습니까?
 - ① 불허된 일이 있다
 - ② 불허된 일이 없다

6. 불허된 일이 있었다면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7. 당신의 책이 불허된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음란·외설
 - ② 폭력
 - ③ 범죄수법의 노골적인 묘사 (추리소설 등)
 - ④ 교도소 내막에 관한 내용
 - ⑤ 교도소 행정이나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
 - ⑥ 이적성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 ⑦ 시사성
 - ⑧ 교화상 이유
 - ⑨ 기타 ()
8. 소 내에서 수감자들이 서로 책을 빌려 볼 수 있습니까?
- ① 원래 규칙위반이지만 매우 자유롭게 빌려 볼 수 있다
 - ② 원래 규칙위반이지만 요령껏 빌려 볼 수 있다
 - ③ 빌려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 ④ 빌려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9. 도서 열독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10. 출소 직전에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구독했다면 어떤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 ① 구독했다 (신문이름 -)
 - ② 구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 ③ 구독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유 -)
11.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군 교도소는 구독할 돈이 없는 수감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 ① 비치하고 있었다
 - ②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12. 신문을 구독했다면 그 신문의 일부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된 일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 ② 가끔 있었다
 - ③ 거의 없었다
 - ④ 한번도 없었다
13. 어떤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되었습니까?
- ① 교도소 내의 비리사건
 - ② 시국 관련 기사
 - ③ 수감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기사
 - ④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
 - ⑤ 기타 ()
 - ⑥ 어떤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
14. 그 밖에 신문 구독과 라디오 뉴스 청취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8. 종교활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① 부대내 종교시설
 ② 감방내
 ③ 인근부대
 ④ 민간 종교시설
 ⑤ 종교방
 ⑥ 기타 ()
9. 종교 활동시 제한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10. 종교 활동이 제한받았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까?
 ① 알려주었다.
 ② 알려주지 않았다.
11. 알려주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그밖에 종교생활에 대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L. 집필

1. 필기도구와 공책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구입하는 분량에 제한이 있다
 ③ 아예 구입을 할 수가 없다
2. 집필 시간은 제한은 있는가?
 ① 있다 (1회 분 이내)
 ② 제한이 없다
3. 집필한 노트는 어떻게 보관됩니까?
 ① 자신이 보관한다
 ② 영치시킨다
4. 자신이 썼던 노트를 출소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그밖에 집필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22. 작업 외에 교화 차원의 직업훈련이 실시되었습니까?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23번부터 28번까지는 위의 문항에서 ① 번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직업훈련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재소자에게 직업훈련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재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었다

25. 위의 문항에서 ② 번을 선택했을 경우, 군 교도소의 재소자 분류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26. 군 교도소 내에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27.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군 교도소 당국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적극 권장 받았으며, 시험준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 ② 권장은 하였으나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③ 시험 권장과 배려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기타()

28. 위의 문항에서 ① 번을 선택했을 경우, 어떠한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9. 그밖에 작업 및 직업훈련에 관하여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N. 분류누진처우

1. 급수분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정하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공정하지 못하다
- ④ 모르겠다

2. 누진처우 승습을 위하여 교도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춘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6. 청원이나 불복신청 시 헌병들로부터 사전 지침을 받거나, 또는 못하도록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7.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복신청제도외의 방법으로 저항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는, 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본인 참가 불참 : √ 표시)
- ② 없었다.

(아래 8번부터 11번까지는 위의 문항에서 ① 번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저항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9. 저항이 집단적이었습니까? 개별적이었습니까?

- ① 집단적이었다.
- ② 개별적이었다.

10. 저항의 규모와 저항 방식(예. 폭동의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저항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어떠했습니까?

R. 규율 및 징벌

1.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 위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어떤 폭행을 당했습니까?

- ① 몽둥이로 구타
- ② 손으로 구타
- ③ 물고문
- ④ 발로 차기
- ⑤ 수갑, 포승 따위의 과잉 사용
- ⑥ 기함
- ⑦ 회초리
- ⑧ 심한 욕설
- ⑨ 기타 ()

3. 당신은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징벌의 일급 가지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있다
- ② 알고 있지 못하다

S. 기타

1. 국가보안법 관련 재소자를 본적이 있거나 같이 생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위 문항에서 ① 번을 선택했을 경우, 국가보안법 관련 재소자가 일반 재소자와는 다른 관리(구금 방식, 처우 등)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
② 없다
3. 교도소를 영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 헌병들의 태도, 종교활동, 처우, 규율, 기타 다른 느낌 등)
4. 기타 교도소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T. 체포 및 수사과정

1. 귀하는 무슨 죄명으로 어디서 누구에게 검거되었습니까?
죄명 ()
어디에서 ()
누구에게 ()
2. 검거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검거된 후 가족에게는 어떻게 통보되었습니까?
① 헌병대에서 곧바로 전화 통보
② 전보로 통보
③ 편지로 통보
④ 통보하지 않음
⑤ 기타 ()
4.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① 민간 변호사 ② 국선 변호인

- ③ 신청하지 않음
5. 변호사 접견은 용이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이 민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국선 변호인을 처음으로 대했을 때가 언제 입니까?
 ① 체포 직후
 ② 영창 수감 기간 (헌병대 조사기간)
 ③ 군 검찰 송치 후(기소 후)
 ④ 재판 시
 ⑤ 기타 ()
8. 국선변호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① 민간인
 ② 군법무관 (계급:)
 ③ 기타
9. 국선변호인과는 개별 접견이 가능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집단접견이었을 경우 몇 명이나 한꺼번에 담당했습니까?
 ()명
11. 국선변호인과의 접견회수와 평균 접견 시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평균 ()시간
12.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심문 조사는 어디서 진행되었습니까?
 ① 체포 된 관할 경찰서
 ② 복무 중이던 사단 헌병대
 ③ 기타()
14. 영창과 조사실은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15. 영창에서 조사실로 이동 방식은 어떠합니까?

5. 위의 작업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된 것이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6. 군용품제작과 같이 교도소내의 작업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구체적인 작업을 명시해 주십시오.)

- ① 있다. ()
- ② 없다.

7.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① 작업변경을 요청하였다.
- ② 작업을 거부하였다.
- ③ 기타()

8. 만약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경고
- ②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 ③ 2월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 ④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 ⑤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멸
- ⑥ 2월이내의 작업정지
- ⑦ 2월이내의 금치
- ⑧ 가혹행위()
- ⑨ 기타()

9. (모형총기를 포함한) 집중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 있다면 집중훈련을 거부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1. 집중훈련거부에 대해 교도소장은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경고
- ②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 ③ 2월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 ④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 ⑤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멸
- ⑥ 2월이내의 작업정지
- ⑦ 2월이내의 금치
- ⑧ 가혹행위()
- ⑨ 기타()

12. 교도소내의 집중훈련에 관해 청원이나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3. 있다면 이후 훈련과정이나 소 내 생활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